

국내입법의견조사 95-2

行政審判法の 改正方向

1995. 6.

연구자 : 金井順 (先任研究員)
宋永仙 (研究員)

한국법제연구원

목 차

第1編 行政審判法の 改正方向

I. 問題의 所在	7
II. 各界의 立法意見	8
1. 行政審判機關	8
2. 請求人適格	16
3. 處分廳經由主義	22
4. 審判請求提起期間	25
5. 審理의 基本原則 - 書面審理·口述審理	26
6. 事情裁決	30
7. 執行不停止	33
8. 返戻制度	34
9. 行政審判과 行政訴訟의 重複提起問題	35
10. 기타	36
III. 立法方向	44
1. 各界意見의 檢討	44
2. 立法方向	50

〈참고자료〉

- ※ 現行 行政審判法과 行政審判法中改正法律立法豫告案의 比較 59
 行政審判法(法律 第3755號, 1984.12.15. 公布)
 改正法律立法豫告案(法制處, 1995.6.7. 立法豫告)
- ※ 中央行政機關 行政審判委員會 構成 및 運營現況 69
- ※ 市·道 行政審判委員會 構成 및 運營現況 70
- ※ 行政審判制度 運營現況 71

第2編 最近立法意見 動向 및 最新法令 紹介

- I. 最近立法意見 動向 75
 - 1. 最近立法意見 目錄 76
 - 2. 最近立法意見 要旨 80
- II. 主要立法豫告法律案 129
 - 1. 主要立法豫告法律案 目錄 129
 - 2. 主要立法豫告法律案 內容 130
- III. 最新法令 目錄 139

第 1 編

行政審判法の 改正方向

I. 問題의 所在

권력분립주의하에서 행정작용에 대한 제1차적 통제를 행정권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작용의 특수성·전문성에 비추어 전문적·기술적 문제의 처리에 적합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스스로 재고·시정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 사법절차에 앞서 신속·간편한 행정구제제도를 들으로써 행정법관계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여 경비·시간을 절감하고 국민의 권익구제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일반행정심판제도는 행정심판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특별행정심판제도(조세심판, 특허심판 등)는 각 개별법의 특례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행정심판제도의 일반법인 현행 행정심판법은 이전의 소원법을 폐지하고 1984년에 제정(1985년 10월 1일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행정심판이 행정청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중심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권리구제로서의 법률적 위상과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하겠다.

그러나 행정심판법 시행이후 행정수요가 양적·질적으로 팽창되고 국민의 권리의식 증대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제도가 ①행정심판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이 미흡하고, ②심판청구 절차의 복잡 등으로 인하여 청구사건의 심리가 지연되고, ③행정심판위원회 심리방식이 민주성 및 국민편의 제고면에서 미흡하고, ④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신속성·효율성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행정심판제도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진정한 국민의 권익구제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그러던 중 1994년 7월의 행정소송법과 법원조직법 개정¹⁾으로 행정심판전치

1) * 행정소송법 개정(1994.7.27, 법률 제4770호): ①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②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함.

* 법원조직법 개정(1994.7.27, 법률 제4765호): ①법원의 종류에 행정법원을 신설함. ②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함. ③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함. ④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함.

주의가 폐지되어 임의적전치주의(선택적전치주의)화됐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이 3심제가 되었고(1998년 3월부터 시행),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1994.1.7, 법률 제4735)의 제정·시행으로 고충민원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일반행정심판제도는 그 제도적 의의를 근본적인 관점에서 재정립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당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즉 행정심판제도가 권리구제제도로서 실효성있게 운영되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행정심판을 활용하지 아니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제도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해 그 존재이유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행정심판제도의 개선의 당면성이 요청됨에 따라 행정쇄신위원회가 행정쇄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제도의 개선”을 과제로 선정하여 기존 행정심판제도의 기능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행정심판법의 개정을 권유하기에 이르렀고(1995년3월), 이를 토대로 법제처에서는 행정심판법중개정법률안(이하 ‘입법예고안’이라 한다)을 1995년 5월 7일자로 입법예고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다음의 쟁점을 중심으로 행정심판법 제정이래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관한 각계 의견을 종합·검토하여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1)행정심판제도의 개선형식(법개정의 필요성) (2)행정심판기관 (3)청구인적격 (4)처분청경유주의 (5)심판청구제 기기간 (6)심리의 기본원칙 (7)사정재결 (8)집행부정지 (9)반려제도 (10)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중복제기 문제 (11)기타 등의 쟁점에 관하여 학계, 행정쇄신위원회, 법무부 및 법제처 등의 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各界의 立法意見

1. 行政審判機關

(1) 합일된 독립적 심판기관을 설치하자는 견해

○ 김이열(전 중앙대 법학과 교수)

①재결청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중앙에는 그 수가 대단히 많게 되는 것도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국무총리하에 심리

와 재결권을 전담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두고 여기에서 행정각부는 물론 서울특별시를 관할함으로써 심판의 통일성을 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만하다.

②행정심판위원회를 구성하는데도 심판의 객관성, 다시 말해서 자기 사건에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재결청과는 개별독립성을 가지고 심판할 수 있는 지위로서 구성되어야 할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회의 구성방법·구성원비, 위원의 법적 지위 등이 구체적으로 강화·조정되었어야 했을 것이며, 특히 위원회에는 전문적으로 신분보장을 받는 책임성있는 심판주재관을 두어 일반직원의 유동에서 벗어지기 쉬운 비리와 불성실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채택되었어야 했다(김이열, “행정심판법의 문제점” 『고시계』(1985.4), 81~82쪽).

○ 김향기(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행정심판위원회가 실제 운용에 있어서 제3자적 지위에서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피청구인(처분청)의 대변기관으로 전락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①따라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일정한 자격의 외부심판위원의 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늘리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상설화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러나 외부의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라 하더라도 비상근에서 오는 문제, 현직공무원인 심판위원의 시간적 제한요인 등은 그대로 문제점으로 남게 되며, 행정심판위원회의 상설화도 인원·예산·시설확보 등의 현실적 문제가 있게 된다. 연간 행정심판제기건수가 1~5건에 머무는 중앙부처들도 있고, 또 지방자치의 확대실시로 중앙부처의 행정심판제기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 같지도 않다. 따라서 이런 부처에 많은 예산을 들여 행정심판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②이상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고려할 때 i) 중앙부처의 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 통합하는 방법, 또는 ii) 국세심판소를 포함해 중앙부처의 행정심판기관을 통폐합하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하의 독립된 상설기구로서 중앙행정심판소를 설치하는 것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중앙행정심판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행정부, 국세심판부, 교통심판부 등 몇 개의 부로 나누고, 각부의 심판관의 구성과 수는 획일적으로 고정화시키기 보다는 각부의 특성 및 사안의 전문성·중요도·처분청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심판관구성은 상임

· 비상임을 혼합하고, 소장과 일부 심판관은 법률전문가로 하여 대통령이 일정 임기로 임명하되 법원 또는 국회의 관여를 인정하고 각사안에 따른 전문지식을 갖춘 일부 구성원은 각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추천에 의해 소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심판기관도 이러한 중앙행정심판소에 준하여 구성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겠다(김향기, “행정심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문민정부와 법제개혁방향』(한국공법학회 제 35회학술발표회, 1993.3.20), 12~4쪽; 김향기,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조』(1993.6), 51~5쪽).

○ 권영호

제3자적 독립성이 강한 심판기관으로부터의 규제를 받으면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정책임을 지기 어렵고 행정책임자의 권위에도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오히려 현대행정의 본질은 사법국가 또는 법의 지배하에 있어서 실질적인 ‘법에 의한행정’이기 때문에 엄격히 제3자적 심판기관의 감시와 비판에 맡겨 그에 따르는 행정의 자세야말로 바람직한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또는 처분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해 처분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정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보다는 당해 행정청의 처분과 관계없는 행정청에서 당해 처분의 시비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해 처분과 관계없는 행정청의 판단은 당해 처분에 관계있는 행정청의 판단보다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를 납득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행정심판절차에서는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결청이 처분청의 감독청이고 처분청과 동일계통의 행정청에 의하여 사건이 처리되는데, 이는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재판의 전심절차’에 부응한다고 보기 어렵고 행정에 대한 자기심판제도에 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i) 재결기관 자체를 처분행정청과 완전히 독립된 제3의 기관으로 한다든지 또는 ii) 행정심판위원회를 지금보다 강화된 강력하고 통합된 합의제의결기관으로 하여 행정심판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권영호, “행정심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1993, 111쪽).

○ 김남진(고려대 법학과 교수)

행정심판위원회는 비상설기관이므로 재결청으로부터 심판청구사건이 회부된 경우에 그 심리·의결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회의를 갖는다. 인원·예산·시설 확보 등과 같은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행정심판위원회를 비상설로 하였으나, 이는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당사자주의적 구조의 형식화 및 권리구제기능의 상실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변호사·교수·전직공무원과 같은 재결청외부의 위원들은 비상근이어서 심판청구사건을 충분히 심리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청의 입장을 사실상 정당화할 위험도 없지 않다. 따라서 행정심판절차를 사법절차화함으로써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내지 장점이 저해될 우려도 없지 않지만, 행정심판위원회를 소청심사위원회나 국제심판소와 같이 독립된 상설기관으로 하는 것이 요망된다(김남진, 『행정법1』, 법문사, 1993년, 595쪽).

○ 박윤훈(경희대 법학과 교수)

행정심판법이 심판기관을 영미의 행정심판소와 같이 완전한 제3기관으로 하지 못한 것은 재정적 이유와 함께 행정심판을 권리구제수단으로 보기보다는 행정감독적 수단으로 보는 종래의 생각을 완전히 떨쳐 버리지 못한 데서 온 것이라 할 것이며, 행정의 과잉보호의 측면도 없다고는 할 수 없겠다.

행정심판이 사법절차의 결함을 보충하여 간이·신속한 국민의 권리구제제도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영미의 행정심판소와 같이 심판기관이 언젠가는 상근전문직으로 구성되는 제3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심판기관이 독립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 또한 심판업무에만 전념할 수 없는 비상근으로 되어 있으면 대심적 구조는 형식화되고, 아무리 심판청구인에게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는 기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박윤훈, 『최신 행정법강의(상)』, 국민서관, 개정21판, 1995년, 807쪽).

○ 김원주(경북대 공법학과 교수)

행정심판 심리절차의 공정성확보를 위해서는 행정심판기관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행 제도와 같이 재결청소속의 공무원이 과반수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해서는 그 독립성이 문제된다. 따라서 직업공무원의 위원수를 3분의 1 이하로 줄이고 행정심판주재관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참고가 되는 것이 미국의 행정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제도이다. 상설 「행정심판법정」 또한 미국의 Administrative tribunal이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행정판사의 인적 자원은 우선 사법시험합격자 중 군법무관으로 임명되지 않은 병역미필자로서 일정한 기간 복무케 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김원주, “행정심판법상의 심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시연구』(1991.3), 30~31쪽).

○ 이상규(변호사)

재결청과 행정심판위원회를 합일한 객관화, 제3자화가 필요하다(행정쇄신위원회의 ‘행정심판제도의 개선안’에 대한 의견회신, 1994.11).

(2) 통합된 합의제의결기관을 설치하자는 견해

○ 박송규(법제처차장)

①현행의 행정심판절차에서는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결청이 처분청의 감독청이고 처분청과 동일계통의 행정청에 의하여 사건이 처리된다. 따라서 이는 “재판의 전심절차”에 부응한다고 보기 어렵고 행정청에 의한 자기심판제도에 그치는 느낌이다. 그러므로 당해 행정청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된 현행 행정심판위원회보다도 강력한 통합된 합의제의결기관을 설치하여 사건을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각종 특별법에 의하여 산재하고 있는 심판위원회의 성격을 지닌 각종 위원회 즉 소청심사위원회, 해난심판위원회, 광업조정위원회, 국세심판소, 감사원의 심사청구 등의 업무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 통합·운영하되 그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1부·2부 등으로 나누어 전담하게 함으로써 재결청으로부터 어떤 간섭도 배제하고 일관된 재결 또는 의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②각부장관의 모든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③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행정부 직원이 과반수가 되어서는 의결의 공정성을 기할 수 없으므로 그 구성비율을 조정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위촉위원도 거물

급의 저명인사보다는 덜 저명하지만 행정실무에 밝고 어떤 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인사를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 대 외부전문가의 비율이 일반위원회의 경우는 4대 3,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는 6대5로 되어 있다. 그런데 행정을 두둔해 보겠다는 생각대신에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이와 같은 구성비율에 집착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와 같은 구성비율은 앞으로 이를 뒤바꾸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신선하고 투명한 유리창행정의 인상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④행정심판사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심판위원회에 점차적으로 전임직원을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만이라도 상설화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전에 사안을 검토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에 더욱 이바지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박송규, “한국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숭실대학교, 1989년), 140~1, 147~8쪽).

○ 김도창(변호사)

①중앙행정기관의 행정심판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에 찬성하며, ②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 기타 일반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과 민간위원의 구성비율을 각각 5:6과 3:4로 바꾸는 것이 좋겠고, ③일반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중에서 위촉토록 하고 기관장의 위원장겸임은 불가하다고 생각된다(행정쇄신위원회의 ‘행정심판제도의 개선안’에 대한 의견회신, 1994.11).

○ 김철용(건국대 법학과 교수)

- 행정심판의 준사법화라는 헌법적 요청에 충실하는 길은 심판기관을 객관화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심판기관을 독립된 상설기관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행정심판제도의 양목적, 즉 행정통제와 국민의 권리구제의 조화 및 행정심판의 준사법화라는 이상과 인원·예산·시설 확보 등의 현실적 문제와의 조정에 그 한계가 있을 것이다(김철용, “행정심판법의 문제점과 개선점”, 『월간고시』(92.5), 97쪽).

- 지금까지의 행정심판의 운영실태가 말해 주듯이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는 행정쇄신위원회의 제1안(중앙행정기관의 행정심판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 이관함)을 고려해 볼만하다. 다만, 제1안을 택할 경우 ①행정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재결청에 再議요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②시·도 및 시·도교육청의 처분이 국가사무에 한정할 것이냐의 여부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은 7인의 위원중 4인이상을 외부인으로 위촉하고, 외부인인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할 것을 권한다(행정쇄신위원회의 '행정심판제도의 개선안'에 대한 의견회신, 1994.11).

○ 행정쇄신위원회

가.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청소속하에 둔다”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 시·도 및 시·도 교육청에 둔다”로 하고, 그 관할은 다음과 같이 함(중앙행정기관 행정심판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를 모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함).

행정심판위원회	관 할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처분 시·도 및 시·도 교육청의 처분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소속 국가행정기관 및 자치행정기관의 처분

나.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제외한 기타 위원회의 경우 위원 7인중 4인 이상을 외부인으로 위촉토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제3자성을 보장함.

②심판청구안건이 많은 위원회의 경우 안전검토, 조사 등을 담당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다. 위원장의 겸임

①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제외한 기타 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을 그 기관의

기관장이 맡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와 재결청의 의사가 일치토록 함.

②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직무대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행정쇄신위원회, “행정심판제도의 개선”, 1995.3)

(3) 현행 행정심판기관체제를 유지하자는 견해

○ 법무부

가.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행정쇄신위원회의 제2안과 같이 현행체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현행법에 규정된대로 사안별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사건처리의 통일성, 전문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특히 소청심사, 광업권, 외환관리, 출입국관리, 무역거래 등 특수업무에 관하여는 그 전문적 성격을 감안하여 주무부서에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함이 타당하다.

- 다양한 행정처분사항을 모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소관으로 할 경우 전문성이 결여되고, 업무부담의 과중이 우려된다.

나. 위원회의 구성

- 현행규정(외부위원 3인이상)에 의하더라도 외부위원의 비율을 높여 위촉할 수 있음

-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심판청구인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 있으나, 처분행정청으로서는 이에 무조건적으로 기속되고 그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행정청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외부위원의 구성비율을 일률적으로 높일 경우 해당 사안의 심사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정책적, 전문적, 기술적인 판단이 결여된 채 형식논리적인 결정이 양산될 우려가 있다.

- 따라서 굳이 법령을 개정하기 보다는 국무총리 훈령을 통하여 각 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부위원의 구성비율을 상향하도록 시달하고 사후에 이를 점검함이 상당하다.

다. 재결청 기관장의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의 겸임案

위원회와 재결청의 독립성에 배치되며, 재결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재결할 뿐 재의결 요구권이 없어(행정심판법 제31조제2항) 재결청과 위원회의 의사 일치는 무의미하다. 또한 행정기관 장의 업무가 과중한 실정이어서 위원장이 되도록 한다면 위원회의 수시 개최에 실무상 어려움이 있게 된다.

(행정쇄신위원회의 '행정심판제도의 개선안'에 대한 의견회신, 1994.11)

(동지:서원우, 행정쇄신위원회의 '행정심판제도의 개선안'에 대한 의견회신, 1994.11)

※ 법제처 입법예고안

(1) 행정심판을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였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행한 처분 등에 대하여 앞으로는 국무총리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이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라 한다)에서 심리·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 이관함(입법예고안 제6조제2항).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안건 폭증으로 인한 안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4인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함(입법예고안 제6조제3항단서).

(2) 일반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중 민간인위원을 과반수이상(7인중 4인이상)으로 함으로써 행정심판의 객관성을 제고함(입법예고안 제6조제3항).

(3)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전문적인 조사·심리를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입법예고안 제6조의2제1항).

2. 請求人適格(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1) 입법상 파오라는 견해

○ 김향기(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 청구인적격의 확대도 필요하다. 현행 행정심판법의 청구인적격은 행정소송

법상의 원고적격과 마찬가지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하고 있는 바(행정심판법 제9조), 행정심판의 목적은 국민의 권리·이익의 침해구제 뿐만 아니라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에도 있기 때문에(행정심판법 제1조) 행정소송법상의 원고적격보다도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의 범위가 넓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적격을 원고적격과 똑같이 규정할 것이 아니라, 예컨대 청구인적격을 단순히 '처분에 불복하는 자' 등으로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김향기,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조』(1993.6), 57쪽).

- 행정심판이 행정소송과 심리의 주체 뿐만 아니라 제도의 목적·기능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이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이나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을 함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의 과오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김향기,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과 법률상 이익", 『현대행정과 공법이론』(서원우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1년), 530쪽).

-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은 청구를 할 만한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 그 처분이 적법이나 위법이나 또는 정당하나 부당하나 하는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며, 그 결과 처분 등의 적법, 위법 또는 당·부당은 심판기관이 본안심리에서 판정할 문제이며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으로서의 청구인적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김향기,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과 법률상 이익", 『현대행정과 공법이론』(서원우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1년), 529쪽).

○ 유지태(고려대 법학과 교수)

- 권리의 침해가 존재하는 경우는 위법차원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며, 위법이 아닌 부당한 처분에 의해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로 인해 부당한 처분이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제기가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유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1995년, 399쪽).

- 행정심판법 제9조 제1항 제1문은 제1조나 제4조에서 행정심판의 대상을 부당한 처분에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과 조화되지 못하는 규정으로서 해석론상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입법 그 자체에 문제를 갖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부당한 처분인 때에는 그 청구인적격을 위법한 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쳐져야 하

리라고 생각한다(유지태,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의 부당한 처분”, 『사법행정』 (1992.2), 56쪽).

○ 홍준형(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법률상 이익을 …… 보호대상으로 한다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이란 적어도 그것이 다른 법적 근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지 않으면 안된다. 법적 정당화 근거없이 권리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당연히 위법이란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거꾸로 어떤 처분에 의하여 자기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만이 그 처분을 다룰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한 처분일 것이므로 행정심판은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만 제기될 수 있다는 결과가 된다. 요컨대 행정심판법이 청구인적격을 “법률상 이익”에 의해 한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행정심판은 반사적 이익(사실상 이익)을 침해받았거나 반사적 이익을 향수하기 위해서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홍준형, 『행정구제법』, 1993년, 176~7쪽).

○ 강구철(국민대 법학과 교수)

결국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반사적 이익 또는 사실상의 이익을 침해받은 자까지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행정심판법은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 또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게 하고 있는 점은 모순이며, 입법상의 과오라 할 것이다(강구철, “공권의 관념에 관한 소고”, 『고시연구』(1991.2), 66면).

○ 김남진(고려대 법학과 교수)

- 행정심판법이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을 행정소송(항고소송)의 원고적격과 동일하게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만 인정하는 것은 중대한 입법상의 과오로 생각되며, 조속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행정심판은 ‘위법한 처분’만이 아니라 ‘부당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므로 (동법 제1·4조 등 참조), 반사적 이익을 향수하기 위해서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반사적 이익을 배제하는 의미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만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김남진, 『행정법1』, 법문사, 1993년, 585쪽).

- 우리의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는 법률상 이익이라는 용어가 여러 군데에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법률상 이익」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필자는 그것을 「권리」와 같은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 권리란 간단히 말해서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 또는 「법률상 이익」을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권리 또는 같은 의미로서의 「법률상 이익」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므로, 「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이익」으로서의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 이익과 구별되지 않으면 안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을 부인하거나 그 양자의 구별을 전제로 하는 용어(보호이익 등)의 사용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한다.

「법률상 이익」은 실체법을 통해서 보장되는 것이므로, 실체법이 보호하지 않는 것을 쟁송법을 통해서 보호할 수 있다는 관념을 배격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듯한 「보호할 가치있는 이익」과 「법률상 이익」과는 구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물론, 입법론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청구인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송에 있어서 보다 되도록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인에게 약식으로(비용과 시간을 절약하여) 행정구제의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다. 행정심판법 제1조는 「이 법은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라고 하여 ‘권리’이외에 ‘이익’을 특별히 내세운 바를 통해 상기한 행정심판제도의 목적 내지 취지를 새겨야 하리라고 본다(김남진,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상의 「법률상 이익」의 문제점”, 『법제연구』(창간호), 한국법제연구원, 1991년 12월, 220쪽).

(2) 법해석·입법정책상의 문제로 보는 견해 - 비과오설

○ 김동희(서울대 법학과 교수)

- 행정심판에서의 청구인적격의 문제는 당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기 위한 심판제기요건의 하나로 되고 있다. 이러한 심판제기요건으로서의 청구인적

격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행정의 적법·타당성의 보장 요청과 남소의 방지요청 사이의 비교형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본다. 행정심판은 행정의 자율적 통제를 그 기본적 속성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청구인의 범위는 반드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일정한 한도에서의 사실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에도 그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행정심판에 있어서도 그 청구인의 범위를 제한하여 그 민중소송화를 방지할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행정심판법은 그 청구인적격을 취소소송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한정하는 것으로 본다. 이처럼 청구인적격의 문제는 행정의 적법·타당성의 실효적 보장과 그 남용방지의 요청 사이의 비교형량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인 것으로서, 그것은 본안심리에 있어서의 승소사유와는 원칙적으로 무관한 것이다. 즉 취소심판에서는 취소소송과는 달리 위법 뿐만 아니라 부당도 승소사유로 되어 있다고 하여, 그 제기요건으로서의 청구인적격의 범위가 당연히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김동희,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청구인적격”, 『고시계』(1993.6), 134~6).

- 부당한 처분에 의하여는 권리가 침해될 수 없다고 한다면, 법적 보호이익으로 파악되고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원고적격을 한정하는 것은, 부당행위의 경우에는 당해 청구는 각하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볼 때 행정심판법의 관계규정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권리는 위법한 행위 뿐만 아니라 부당한 행위에 의하여도 침해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을 취소소송의 경우와 같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법의 규정방식에는 입법상의 과오는 없다고 본다. 다만 행정심판으로서의 취소심판은 기본적으로 행정의 자율적 통제기능을 그 속성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에 있어서는 보다 그 통제의 계기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취소소송과는 달리 청구인적격의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니, 이것은 다른 각도의 문제인 것이다(김동희, “행정심판상의 청구인적격의 문제”, 『현대행정과 공법이론』(서원우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1년), 522쪽).

○ 서원우(서울대 법학과 교수)

현행 행정심판법이 심판청구인적격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과 동일하게 「법

를상 이익이 있는 자」로 한정하였음은 중대한 입법상의 과오인 것으로 보는 국내의 일부학자들의 견해는 근본적으로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를 그들이 거듭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극히 한정적인 범위에 속하는 자로 보는 위법성과 부당성, 법률문제와 재량문제를 이원적으로 준별하는 입장에서의 주장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실로 종래의 통설과 판례의 지배적인 입장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별로 신기한 주장은 아니고 오히려 지나치게 단락적인 발상에 의한 것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재량문제를 법률문제의 일환으로 일원적으로 파악하며, 「법률상 이익」개념을 현대행정국가적 상황변화에 상응하게 보다 신축성있게 기능적으로 해석하려는 본고에서와 같은 입장에서는 그것은 「입법상의 과오」라기 보다는 「법률상의 이익」개념 내지 범위에 관한 「법해석상의 문제」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이다(서원우, “행정재량에 있어서의 위법성·부당성준별론의 재검토”, 『고시계』(1991.4), 115쪽).

○ 홍정선(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과오설은 침해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새겨서 부당한 행위로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수 없다고)새기고 있고, 비과오설은 침해의 의미를 넓게 새기는 것으로 보이므로, 논쟁의 핵심은 침해의 의미에 있다고 판단된다.

「법률상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된다는 것」과 「그 침해의 효과가 사실상의 것이라는 점」은 구분되어야 한다. 전자는 침해의 태양과 침해의 대상의 문제이며, 후자는 침해의 효과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률상 이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의 효과가 사실상의 것이므로 법률상 이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결국 반사적 이익(사실상 이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뜻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법률상 이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취소심판의 대상이지만, 반사적 이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취소심판의 대상이 아님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법률상 이익이 사실상 침해되는 것과 반사적 이익이 사실상 침해되는 것은 개념상 구분되어야 한다.

(1)우리말의 사용법상 ‘침해’라는 용어는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그것은 위법한 행위 뿐만 아니라 부당한 행위의 경우에도 사용된다. 말하자면 우리의 용어로서 침해는 무릇 불편·불이익 등 관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체의 행위유형을 총칭하는 의미를 갖고서 사용된다. 따라서 법률상 이익이 부당한 행위에 의

해서도 침해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2)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과 취소소송의 원고적격(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은 같다고 할지라도, 양자의 인용요건(위법·부당 또는 위법)은 다른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9조는 결코 중대한 과오가 아니다.

(3) 반사적 이익(사실상 이익)이 침해된 자에게도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상 결단의 문제이지 과오의 문제는 아니다.

(홍정선, “행정심판법 제9조(청구인적격)의 입법상 과오여부”, 한국공법학회 제52회 학술발표회(1995.5.20), 29,31~2,34쪽)

○ 이상규(변호사)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청구를 할 ‘법률상 이익’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청구인적격의 엄격성은 개인의 행정의존도가 급격히 제고된 현대국가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행정구제의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매우 큰 것임에 비추어, 그의 엄격한 해석·운용에 따르는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이상규, 『신행정법론(상)』(신판), 법문사, 1995년, 688쪽).

3. 處分廳經由主義

(1) 폐지 내지 재검토하자는 견해

○ 박송규(법제처차장)

처분청경유주의는 행정심판이 행정편의에 치중되어 있음으로 해서 나타난 것이므로 간이신속하고도 국민의 권리·이익의 구제에 있어서 공정한 심판이 되기 위해서는 경유절차를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하였다(박송규, “한국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숭실대학교, 1989년), 175쪽).

○ 김철용(건국대 법학과 교수)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함에 있어서 처분청을 경유하게 되어 있는 처분청 경유주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구소원법시행당시에도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어 왔었고, 공법연구특별분과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나는 지금도 행정심판법이 처분청경유주의를 채택한 것은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심리구조로 대심구조를 채택한 것과 엄밀한 의미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참고삼아 행정심판법시안작성소위원회에서 작성하였던 시안에는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함에 있어서 재결청에 직접 심판청구서에 副本을 첨부하여 제기하고, 심판청구를 받은 재결청이 부본을 처분청에 송부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으로 기억된다(김철용, “행정심판법의 문제점과 개선점”, 『월간고시』(92.5), 97~8쪽).

○ 권영호

처분청경유제도는 행정심판이 행정편의에 치중되어 나타난 것이므로, 간이·신속하고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구제에 있어서 공정한 심판이 되기 위해서는 경유절차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가 참고가 된다. 일본은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독일의 異議제도(Widerspruch)는 이의신청과 소원의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는 소위 ‘임의적이심제’를 채택하여 처분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든 상급감독청에 제기하든 심판청구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고 있다. 이 때 처분청은 제기된 행정심판사건을 거부하는 등 심판청구인에게 불리하게 결정할 수 없으며 인용결정만이 허용되고 거부할 때에는 즉시 상급행정청에 사건을 이송하도록 하고 있다(권영호, “우리나라 행정심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사학위논문(건국대학교, 1993), 115쪽).

(2) 선택적 경유주의로 하자는 견해

○ 김향기(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행정심판법은 재결청이 처분청 자체가 아닌 경우에는 심판청구는 처분청 또는 부작위청을 거쳐 제기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심판청구인의 심판청구서는 처분청인 경유청이 재결청에 자기의 답변서와 함께 송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처분청경유주의는 그 나름의 장점이 있으나, 행정심판의 심리자료인 경유청의 답변서는 경유절차에서 처분청이 심판청구인의 심판청구서를 검토한 뒤에 작성되기 때문에 사실상 심판청구인의 지위를 불리하게 하고, 경유청은 부당하게 심판청

구서를 수리하지 않거나 답변서의 작성을 구실로 심판청구서의 발송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강제적이고 획일적인 처분청경유주의보다는 국민측에게 편리한 대로 경유청을 거치든 직접 재결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든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적 경유주의(선택적 경유주의)도 고려해 볼만하다(김향기, “행정심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문민정부와 법제개혁방향』(한국공법학회 제35회학술발표회, 1993.3.20), 15쪽; 김향기,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조』(1993.6), 55~6쪽).

○ 이상규(변호사)

처분청경유와 재결청에의 직접제출과를 청구인의 선택에 맡기도록 한다(행정쇄신위원회의 ‘행정심판제도의 개선안’에 대한 의견회신, 94.11).

○ 행정쇄신위원회

① 행정심판을 재결청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처분청에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처분청에 제출한 경우 즉시 재결청에 송부하도록 한다.

②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관할사건은 바로 법제처에 제출하도록 함.

③ 처분청 및 소관중앙행정기관(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의 청구를 받은 기관에서 청구접수 사실 및 그 내용을 통보한다.

(행정쇄신위원회, “행정심판제도의 개선”, 1995년3월, 20쪽)

(3) 유지하자는 견해

○ 법무부

현행 처분청경유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① 처분청 경유제도는 처분청에게 반성 및 시정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채택된 것이다.

② 청구서를 재결청에 제출한다 하더라도 재결청에서 처분청에 대하여 답변서, 증거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므로 오히려 절차가 지연된다.

③ 현행 실무상으로도 재결청에 직접 제출한 심판청구서는 적법하게 접수된 것으로 취급하여 처분청의 답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대법원 판례도 재

결청에 직접 제출된 심판청구는 유효하다고 판시. 대법원 82.7.27 선고 81누 398 판결).

④ 당사자는 어떤 행정청이 재결청이 되는지 알기 어렵고, 지방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재결청인 중앙행정기관에, 또는 군·면의 처분에 대하여 재결청인 도지사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면 지방에서 서울이나 도청소재지까지 나와야 하므로 시간과 경비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제출의 편의를 위해서도 현행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⑤ 민사·행정 및 형사소송 절차에 있어서도 상소장, 항고장은 상급법원이 아닌 원심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행정쇄신위원회의 '행정심판제도의 개선안'에 대한 의견회신, 94.11)

※ 법제처 입법예고안

(1) 행정심판청구는 종전에는 처분청을 경유하여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선택적 경유제를 취하여 앞으로는 재결청에도 직접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편의를 제고하고 신속하게 행정심판심리를 할 수 있게 함(안 제17조제1항).

(2) 재결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송부하여야 함(안 제17조제2항).

4. 審判請求提起期間

○ 김철용(건국대 법학과 교수)

행정심판청구 제기기간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로 일원화하는 것에 반대하며, 현행 행정소송법상의 제소기간(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행정쇄신위원회의 '행정심판제도의 개선안'에 대한 의견회신, 1994.11).

○ 법무부

① 행정법관계의 신속한 안정 도모와 ② 행정소송법상의 제소기간 규정과의 균형상 현행 심판청구 제기기간의 조정이 필요치 않다(현행제도 유지). 즉, ① 청구인과는 달리 당해 행정처분의 신속한 확정을 원하는 반대 이해관계인을 배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②행정소송법상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쵸신안에 따르면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이 지나더라도 처분일로부터 180까지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동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므로(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소송법상의 제소기간 제한의 의미가 상실되게 된다(행정쵸신위원회의 ‘행정심판제도의 개선안’에 대한 의견쵸신, 1994.11).

(동지: 서원우, 이상규, 행정쵸신위원회의 ‘행정심판제도의 개선안’에 대한 의견쵸신, 1994.11.).

○ 행정쵸신위원회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조건을 삭제하여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일원화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한다(행정쵸신위원회, “행정심판제도의 개선”, 1995년3월, 22쪽).

(동지: 김도창, 행정쵸신위원회의 ‘행정심판제도의 개선안’에 대한 의견쵸신, 1994.11)

※ 법제처 입법예고안

심판청구기간을 종전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여 국민의 행정심판청구기회를 확대함(입법예고안 제18조제1항).

5. 審理의 基本原則 - 書面審理 · 口述審理

(1)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자는 견해

○ 이상규(변호사)

- 구술심리는 현실적으로 운영상의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특히 당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하도록 하되, 청구인의 처분청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행정쵸신위원회의 ‘행정심판제도의 개선안’에 대한 의견, 1994.11.16).

- 문제는 구술심리를 위한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 행정심판위원회는 반드시 구술심리를 하여야 하는가인데, 행정심판절차의 사법화를 규정한 헌법이념 및 당사자의 구술심리신청권을 인정한 행정심판법의 취지에 비추어, 당사자의 구술심리신청이 심리를 부당하게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한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상규, 『신행정쟁송법』, 법문사, 1994, 186~7쪽).

○ 법무부

- 현행제도에 의해서도 구술심리가 가능하다(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 구술심리 원칙 채택시 사건처리의 심각한 지연, 행정심판업무의 막대한 부담, 당사자의 불필요한 주장 남발 등이 우려된다.
- 현행방식에 의하더라도 심리절차에 있어 당사자주의 구조를 채택한 결과, 청구인에게 구술심리 신청권(제26조제2항), 피청구인의 답변서제출 요구권(제17조), 보충서면 제출권(제25조), 물적 증거 제출권(제27조제1항), 증거조사 신청권(제27조제1항) 등이 인정되어 청구인이 의견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다.
-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도 법률심인 상고심의 절차는 서면심리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결정·명령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재판의 심리방식은 구술심리 방식이 아닌 서면심리의 방식에 의하여 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124조제1항).

(2) 서면심리원칙을 완화하자는 견해

○ 김원주(경북대 공법학과 교수)

① 행정심판법은 서면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에게 구술심리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심리의 간이·신속을 위하여는 좋을 것이나 현장감각의 결여라고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심판청구인의 구술에 의한 생생한 설명은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진행하는 데에 필수불가결의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 서면작성에는 상당한 수준의 지식이 필요한 바, 우리 국민의 평균인이 과연 다른 전문인의 도움없이 작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전문인에게 의뢰했을 때의 경제적 부담의 문제도 뒤따른다.

②서면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서 심판청구인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되는 바, 이를 경감시켜 주는 방안으로 녹음기를 이용한 녹취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구두에 의한 청구를 인정하더라도 구술 녹취서가 작성되면 서면심리주의의 원칙과 저촉되지 않을 것이다. 녹취한 내용에 따라 전문담당직원이 구술녹취서를 작성하면 보다 능률적인 심리가 가능해질 것이다(김원주, “행정심판법상의 심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시연구』(1991.3), 28, 31쪽).

○ 김남진(고려대 법학과 교수)

행정심판법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 행정심판위원회가 「구술심리를 할 수 있다」(제26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언에 의하면, 구술심리여부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량(결정재량)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특히 심판청구인이 자기의 주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리지연의 목적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술심리의 기회를 줌으로써, 구술심리권이 보장된 것에 가깝도록 운영함이 바람직하다(동지:박윤훈(상), 793면)(김남진, 『행정법1』, 법문사, 1993년, 613쪽).

○ 박송규(법제처차장)

행정심판의 심리를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심리의 신속·편리함과 절차의 확실성을 위한 것이기는 하나, 행정심판제도의 국민권익구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는 위원회에서 구술심리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당사자로부터 구술심리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구술심리를 하는 소극적인 운영보다도 신청이 없더라도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구술심리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공정한 재결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구술심리는 청구인의 권익보호에 상당한 역할을 하므로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가능한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심리의 지연 등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구술심리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박송규, “한국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숭실대학교, 1989년), 183, 187쪽).

○ 박윤훈(경희대 법학과 교수)

행정심판제도가 권리구제기능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위원회가 서면심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직권으로 구술심리를 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심판청구인이 서면진술만으로는 자기의 주장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구술로 진술하거나 피청구인과의 직접 대결을 위하여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위원회는 그에 따르도록 하여, 위원회가 심판청구인의 편에 서서 석명권을 행사하여 의문점을 명확히 하고, 심판청구인이 자기의 주장을 충분히 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 점에서 볼 때, 현행법은 미흡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구술심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해석으로 보완하여 행정심판의 특성의 하나인 심리의 신속성을 심히 침해하지 않는 한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본다(박윤훈, 『최신행정법강의(상)』(개정 21판), 국민서관, 1995년, 830쪽).

(3) 청구인이 선택하도록 하자는 견해

○ 정문화(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을 「행정심판의 심리는 서면심리와 구술심리로 행하도록」개정하되 청구인이 임의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행정쇄신위원회의 '행정심판제도의 개선안'에 대한 의견회신, 1994.11).

(4)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자는 견해

○ 행정쇄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민주화 및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①심판의 심리원칙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결정하되 가급적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도록 함.

②필요한 경우 관련전문가 및 참고인의 의견진술 청취를 제도화함.

③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및 심판청구가 많은 위원회를 가급적 정례적으로 개최함.

(행정쇄신위원회, “행정심판제도의 개선”, 1995년3월, 22쪽)

※ 법제처 입법예고안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가급적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안 제26조제2항)라고 규정하여, 행정심판의 심리방식을 종전의 서면심리원칙에서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가급적 구술심리를 하도록 하여 심리의 민주성을 제고함.

6. 事情裁決

(1) 존 치

○ 김철용(건국대 법학과 교수)

사정재결제도 폐지론에 대하여, ①사정재결제도가 반드시 심판청구인에게 불리한 제도인가를 좀더 穿鑿(천착)을 요하는 문제이고 ②행정처분의 전환 및 하자의 치유 등 다른 방법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33조(사정재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 않다. 참고삼아 공법연구특별분과위원회에서 사정재결을 채택하였던 것은 공익과 사익의 조화, 반드시 청구인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 외에 오로지 원고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사정판결제도가 존재이유가 있다면 행정통제와 권리구제의 양목적은 하고 있는 행정심판에도 균형상 사정재결제도가 존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어 채택되었던 것이 아닌가 기억된다(김철용, “행정심판법의 문제점과 개선점”, 『월간고시』(92.5), 98~9쪽).

(2) 폐지 내지 재검토

○ 김이열(전 중앙대 법학과 교수)

사정재결은 행정소송법상의 사정판결에 대응하는 규정으로써, 결론부터 말한다면 사정판결을 인정하고 있는 판국에 행정심판과정에서 사정재결을 규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 애당초 행정권은 행정목적과 공

의 목적을 위해서 행사되는 것이며, 그와 같은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당초부터 행정권에 의한 처분을 해서는 안되며, 설령 잘못되어 처분이 있었다해도 직권을 통해서 시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경우도 처분의 집행부정지효, 대심구조에 있어서의 재결청의 우월성(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심리절차상) 등으로 보아, 공익성을 이유로 하는 처분의 실효성은 백방으로 방비책을 구축하고 있다. 그런데도 부족해서 또 다시 사정재결규정을 두어 심판청구인의 救濟制에 대한 신뢰감을 감쇠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한 공익성판단의 공익성에 있어서도 처분청이나 감독정보다는 법원이 제3자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훨씬 우월하고 믿을 수 있다. 행정권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은 스스로의 처분에 대한 自省·再省·三省도 좋지만 행정소송법상의 사정판결 규정도 있고 하니, 행정기관은 이에 기대하는 편이 옳았지 않았겠는가?(김이열, “행정심판법의 문제점”, 『고시계』(1985.4), 84~5쪽).

○ 박송규(법제처차장)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손해를 받은 심판청구인에 대한 구제는 반드시 취소에 의한 방법 이외에는 없는 것이 아니고 손해배상 기타 장애의 제거수단을 강구하는 등에 의하여서도 실질적으로 충족시킬 수도 있다.

이의 해석운영에 대하여서는 개인의 권리구제제도인 심판청구제도의 극히 예외적인 것이어서 사정재결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개별법규에서 규정하면 될 것이지 일반법중에 규정을 둔 것은 국민에 대한 권리보호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여 극히 신중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전환 및 하자의 치유 등 다른 방법으로 구제할 수 있는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서까지 사정재결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독립성이 법원에 비하여 미약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와 같은 권한을 준다는 것은 자칫하면 행정부의 뜻대로 될 가능성이 있고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 규정은 조속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 김향기(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사정재결제도의 근거는 법률상 무시할 수 없는 기성사실의 존중, 분쟁의 화해적 해결, 재결후의 혼란방지 등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이나, 다음과 같은 의

문이 제기된다. 즉, ①사정재결제도는 공익을 이유로 사익을 희생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제도로 사권의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쟁송제도의 극히 예외적 조치로써 官憲的·반법치국가적 제도이다. ②사정재결제도는 현대 복리국가의 행정의 요청에 부응하여 그 현실적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공복리’라는 개념 자체가 多義的·불확정개념이고 보면 심판기관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남용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하겠다. ③사정재결에 대한 구체조치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며(행정심판법 제33조제2항), 구체방법을 취할 수 있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구체방법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실질적이고 충분한 구체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러한 의문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기관의 독립성·공정성의 보장이 필수적이라 하겠다(김향기, “행정심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문민정부와 법제개혁방향」(한국공법학회 제35회학술발표회, 1993.3.20), 16쪽; 김향기,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조』(1993.6), 56~7쪽).

○ 이상규(변호사)

사정재결은 공공복리의 확보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공익과 사익의 조정수단이라고는 하더라도 종래에 없던 제도를 새삼스럽게 신설하였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사정재결제도를 폐지함이 마땅하다(이상규, 『신행정법론(상)』(신판), 법문사, 1993년, 688쪽; 행정쇄신위원회의 ‘행정심판제도의 개선안’에 대한 의견회신, 94.11).

○ 유지태(고려대 법학과 교수)

사정재결의 주체가 객관성 면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이고 보면, 사정재결을 결정하기 위한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이 공정하게 행해질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로 제기되어진다. 또한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제도에서 여전히 행정의 이해관계를 강조하는 이러한 재결유형을 두는 것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강조하는 조치라는 비판도 가능할 것이다(유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1995년, 393쪽).

7. 執行不停止

○ 김이열(전 중앙대 법학과 교수)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당해 처분의 효력 및 집행을 여하히 규정하는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다. 국민의 권리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심판청구에 처분의 집행정지의 효과를 인정하는 입법례(오스트리아 일반행정절차법 제64조)도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는 집행부정지를 규정하고 있다(일본 행정불복심사법 제34조).

행정심판법 제21조 제1항 「심판청구에 대한 집행부정지」규정도, 집행정지원칙을 채택하면 더 바랄 것이 없었겠지만, 그렇치 못한 것은 할 수 없다하고,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집행정지(법 제21조 제2항 전단)에 대한 제한규정이 너무나 지나쳐 본말이 전도된 감이 없지 않다.

즉 재결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21조제2항 전단)고 한 규정을 우선 긍정하고 그 후단은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제한하고 또 나아가 제3항, 제4항에서는 역시 공공복리를 이유로, 또 다시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 처분의 집행정지체도를 예외적으로라도 인정하려 한 것인지, 아니면 마지못해 규정을 둔 것인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재결청이 당사자의 회복하기 어렵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결정된 집행정지를 인정하려 했다면, 앞뒤에 거듭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라도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기보다는 '결정한다'로 규정해 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집행부정지원칙을 고수하면서도 국민의 권익구제법이라는 법목적에 더욱 상응하지 않았나 생각되며 공익을 내세워 사익을 지나치게 규제한 감이 없지 않다. 더구나 공익이 불확정개념이라는 점에서 볼 때 거의 예외적 집행정지조차도 기대할 수 없게 되어버릴 우려가 있다(김이열, "행정심판법의 문제점", 『고시계』(1985.4), 78, 83쪽).

○ 박윤훈(경희대 법학과 교수)

집행정지결정의 요건을 구체화한 행정심판법 아래서도 집행정지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하였는 바, 위원회는 비상근만으로 구성된 기관이어서 집행정지결정신청이 있을 때마다 긴급하게 소집되기가 어렵고 또한 집행정지결정은 하나의 잠정적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법원과는 달라서 청구내용 자체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집행정지결정을 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하여서 앞으로도 행정심판에서의 집행정지결정의 전망은 밝지 못하다 하겠다. 그렇게 되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행정심판제기와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게 될 것이고 이왕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니 행정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얻으려는 성향이 높아질 것이며, 그것은 종전과 같이 행정심판을 불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청구내용 자체와는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이 정한 집행정지요건이 있을 때에는 과감하게 집행정지결정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박윤훈, 『최신 행정법강의(상)』(개정21판), 국민서관, 1995년, 822쪽).

○ 행정쇄신위원회

위원회운영의 신속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권한을 구분하여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한 결정은 위원장직권으로 시행한 후 위원회의 추인을 받도록 함(행정쇄신위원회, “행정심판제도의 개선”, 1995년3월, 23쪽).

※ 법제처 입법예고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되,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도록 함(안 제21조제6항).

8. 返戻制度

○ 정문화(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현재 행정심판은 민원성 심판청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의 대상이 매

우 광범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요건의 흠결이 있어도 일일이 재결을 거치는 것은 행정낭비이므로 행정쇄신위원회의 개선안(반려제도)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행정쇄신위원회의 '행정심판제도의 개선안'에 대한 의견회신, 1994.11).

○ 법무부

심판청구의 명백한 요건 미비시 또는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 행정청의 반려를 제도화하는 규정을 두려는 쇄신안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①현행제도에서도 동일효과가 가능하다 - 현재에도 부적법 각하될 것이 명백한 청구에 대하여는 재결청에서 취하권유를 시도하고 있어 사실상 반려제도가 이행되고 있음. 청구인이 취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하결정함으로써 족함. ②채택시 위헌소지가 있다 - 행정청이 직권으로 청구를 반려한다면 행정심판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107조제3항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 있음.

※소송절차에 있어서 소의 취하제도 이외에 법원에 의한 소장의 반려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함(요건 불비시 재판부에서 소장 각하).

(행정쇄신위원회의 '행정심판제도의 개선안'에 대한 의견회신, 1994.11)

○ 행정쇄신위원회

- ①명백한 요건의 흠결, 재심판청구 등의 경우 위원장이 반려할 수 있도록 한다.
 - ②다른 법률에 별도의 구제절차가 있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반려시 이의 구제절차를 반드시 알려주도록 한다.
 - ③심판청구 보정요구 기일내에 보정하지 않을 시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행정쇄신위원회, "행정심판제도의 개선", 1995년 3월, 23쪽)

9. 行政審判과 行政訴訟의 重複提起 問題

○ 서원우(서울대 법학과 교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의 심리기간을 준수하도록 해야 하며, 현재처럼 행정청이 불리하여 인용해야 할 때에는 일단 재결을 보류해서 재검토하는 등의 행정편의적 관행을 지양하든지, 심리기간을 단순히 혼시규정으로 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수 없게 하면, 법에서 의무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의 전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행정쇄신위원회의 '행정심판제도의 개선안'에 대한 의견회신, 1994.11).

○ 법무부

국민에게 신속한 권리구제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중복청구를 허용함이 상당하다. 중복청구를 금지할 경우 헌법에 규정된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는 조항(헌법 제107조제3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행정쇄신위원회의 '행정심판제도의 개선안'에 대한 의견회신, 1994.11).

○ 행정쇄신위원회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배제하기 위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1998년 3월이후).

(행정쇄신위원회, "행정심판제도의 개선", 1995년 3월, 22~3쪽)

10. 기타

(1) 行政審判提起形式

○ 박송규(법제처차장)

행정심판의 제기에 있어서 서면심리주의를 통하여 간이신속한 권리구제를 확보하고, 불복의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현대의 행정작용이 천차만별하여 행정심판도 똑같이 다종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구술에 의한 신청을 원칙으로 하면 오히려 절차가 지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과학문명이 발달한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서면신청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구술·전화·전보 등 그 제기의 형식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컨대 미국, 독일 및 오스트리아 등 제국가들은 이와 같이 그 제기형식의 범위를 넓혀 놓고 있다(박송규, "한국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숭실대학교, 1989년), 153, 174~5쪽).

○ 김철용(건국대 법학과 교수)

행정심판의 제기방식에 대하여 현행법과 같이 서면신청의 방식만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구술·전화·전보 등 제기의 형식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감이다(김철용, “행정심판법의 문제점과 개선점”, 『월간고시』(92. 5), 97쪽).

○ 김향기(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전화 및 팩스 등 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라 심판청구형식의 확대가 요구된다(김향기,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조』(1993.6), 57쪽).

○ 권영호

구술에 의한 심리청구에 있어 녹취를 허용하는 방안은, 구술에 의한 청구를 인정하더라도 구술녹취서가 작성되면 서면심리주의의 원칙과도 저촉되지 않을 뿐더러 서면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함으로 해서 심판청구인에게 주게 되는 상당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녹취한 내용에 따라 전문담당직원이 구술녹취서를 작성하면 보다 능률적인 심리가 가능해 질 것이다(권영호, “우리나라 행정심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사학위논문(건국대학교, 1993), 114쪽).

○ 이상규(변호사)

심판청구의 방식을 서면에 의하도록 할 것인지, 구술에 의한 심판청구도 허용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인 것에 속한다. 구술에 의한 심판청구를 인정한다면 심판청구의 간편을 도모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에게 결과적으로 불이익이 돌아갈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없지 않다(이상규, 『신행정쟁송법』, 법문사, 1994, 162쪽).

(2) 裁決廳의 再議 要求權

○ 박송규(법제처차장)

처분청이 재결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심판청구에 대한 재

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행정심판법 제39조). 행정심판법안의 원안(1984년 정부안)에서는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국제법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이는 의결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취지에 어긋나고 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에 충분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삭제하였다. 그러나 서독과 같이 원처분청이 재결행정청의 재결에 불복이 있다면 제1차에 한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재결행정청이 이때에도 먼저의 재결을 고집한다면 위법한 재결인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박송규, “한국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숭실대학교, 1989년), 141쪽).

○ 김철용(건국대 법학과 교수)

재결청에게 再議요구권을 주었던 정부원안의 삭제에 대하여 독일의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점에 관하여는 지금도 정부원안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원래 정부원안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異議가 있을 때에 재결청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은 국민의 권리구제에 문제가 있겠지만 재결청에 행정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었다. 현행법대로 심판위원회가 의결하여 재결청에 통고하면 재결청이 그 의결에 기속되어 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대로 재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므로 재결청에 행정책임을 추궁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하여도 행정책임을 지울 수 없으므로 아무도 행정책임을 질 자가 없게 되어 있다(김철용, “행정심판법의 문제점과 개선점”, 『월간고시』(92. 5), 99쪽).

(3) 행정심판에 행정청이 불복하는 경우의 제재문제

○ 박송규(법제처차장)

의무이행심판에 있어서는 재결청에서 형성력있는 재결을 하더라도 처분행정청에서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재결로써 이미 정당하게 성립된 처분의 효력을 주장하더라도 그에 따른 권익을 완전하게 행

사하기 어려울 경우가 있을 것인 바, 재결의 집행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는 다음의 2가지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취소재결 또는 이행재결을 하는 경우 가능한 한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거나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행하도록 하는 재결을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취소하거나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행하는 재결을 함으로써 아예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불복할 수 있는 경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감사를 통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무유기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가함으로써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박송규, “한국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숭실대학교, 1989년), 205쪽).

※ 법제처 입법예고안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내에 후속조치가 없는 경우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 42조의2:의무이행심판인용재결의 간접강제 등).

(4) 裁決期間

○ 김원주(경북대 공법학과 교수)

행정심판의 장점 중의 하나가 신속성이다. 행정심판법 제34조는 재결기간을 60일 내지 90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18조는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제도가 국민의 권익구체제도로서 갖고 있는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도 심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상설 「행정심판법정」의 설립·운용, 전문담당직원의 배치, 직권주의의 활용 등이 그 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다((김원주, “행정심판법상의 심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시연구』(1991.3), 32쪽).

(5) 심리절차에서의 심판청구인의 권리확대 문제

○ 김이열(전 중앙대 법학과 교수)

행정심판의 성격상 서면심리주의, 직권조사주의, 절차의 약식주의 등은 배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관계자료열람권은 보장되었어야 했으며 행정심판의 신뢰성을 위해서도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재판의 공개주의(헌법 제110조)가 여기에도 적용되어야 했다(김이열, “행정심판법의 문제점”, 『고시계』(1985.4), 82쪽).

○ 김철용(건국대 법학과 교수)

심판청구인에게 자료제공요구권이나 자료열람청구권을 인정하는 문제 및 구술심리에 의하는 경우 심판청구인의 관계서류열람권·검증에의 입회기회의 부여·보좌인제도 등의 채택문제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자료의 대부분을 처분청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對審구조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나 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한 구술심리를 위해서나 검토할 가치가 있는 문제라 할 것이다. 전문가에 의한 도움을 터 준다는 점에서 보좌인제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김철용, “행정심판법의 문제점과 개선점”, 『월간고시』(92.5), 98쪽).

○ 김향기(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관계자료의 대부분은 처분청이 소지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심판청구인이 불리하다. 따라서 심판청구인의 관계자료청구권·관계서류열람권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좌인제도 등 심리절차에서의 심판청구인의 권리확대가 요구된다(김향기,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조』(1993.6), 57쪽).

○ 박송규(법제처차장)

행정심판에 있어서 심리구조는 대심구조를 채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심판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피청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공격·방어를 할 수 있어야 대심구조는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입장에서 볼 때 심판청구에 관

계되는 자료는 대부분 피청구인인 처분청이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인에게 처분청이 보유하는 자료제공요구권이나 자료열람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구술심리주의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한 구술심리를 위하여 심판청구인의 관계서류의 열람권, 검증의 입회기회의 부여 및 보좌인제도 등이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박송규, “한국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숭실대학교, 1989년), 187쪽).

○ 이상규(변호사)

행정심판청구의 원인에 관계되는 자료는 처분행정청인 피청구인의 수중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 현상임에 비추어, 행정심판사건의 적정한 심리를 도모함으로써 청구인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관계행정청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심판법은 청구인의 자료요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커다란 결함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이상규, 『신행정법론(상)』(신판), 법문사, 1993년, 688쪽).

○ 행정쇄신위원회

심판청구인의 관계서류 열람권 및 검증시 입회기회를 부여하도록 함(행정쇄신위원회, “행정심판제도의 개선”, 1995년3월, 22쪽).

○ 법무부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서류의 부분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되어 있고(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를 검증 등 증거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동법 제28조제1항, 동시행령 제24조제4항제4호), 현장검증 등의 사례가 극히 적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다.

(행정쇄신위원회의 ‘행정심판제도의 개선안’에 대한 의견회신, 1994년11월)

(6) 위원회권한의 조정·배분 문제

○ 서원우(서울대 법학과 교수)

행정심판위원회가 합의제적 준사법기관인 이상 절차의 공정성·민주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절차적 경미사항을 위원장의 직권으로 시행하는 것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서는 행정편의가 될 우려가 있다(행정쇄신위원회의 '행정심판제도의 개선안'에 대한 의견회신, 1994.11).

○ 법무부

현재 일률적으로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도록 된 사항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위원장의 명령에 의할 수 있도록 조정함이 상당하다(행정쇄신위원회의 '행정심판제도의 개선안'에 대한 의견회신, 1994.11).

○ 행정쇄신위원회

위원회의 모든 결정을 위원회에서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시기적절한 위원회운영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위원회 운영의 신속성·효율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위원회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구분·운영한다.

①법에서 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치도록 명문화된 사항은 현행대로 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친다.

②절차적 경미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대신 위원장의 직권으로 시행한다.

(대표자선정, 청구인의 지위승계, 피청구인의 경정, 대리인의 허가, 이해관계자의 회의참가, 청구변경의 불허, 청구내용의 보정요구, 구술심리 결정, 심판청구의 병합·분리, 의결내용의 통고 등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처리하도록 함)

③위원장 직권으로 시행후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한다(증거조사 시행).

④위원장 직권으로 시행후 위원회 추인을 받는다.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한 결정, 명백한 착오 등으로 인한 재결의 경정)

둘째, 위원회에서 자료제출 요구시 제출기한을 명기하고, 자료제출 요구를 받

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기일내에 제출토록 함. 이 경우 “사무처리규정”을 원용함(행정쇄신위원회, “행정심판제도의 개선”, 1995년 3월, 22~3쪽).

※ 법제처입법예고안

행정심판위원회가 비상설기관임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경미한 절차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 44조).

(7)告知제도의 개선

○ 김철용(건국대 법학과 교수)

이번 행정소송법의 개정으로 행정심판이 임의적 전치주의가 되었다. 따라서 임의적 전치주의의 예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처분청이 어길 때에는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한다(행정쇄신위원회의 ‘행정심판제도의 개선안’에 대한 의견회신, 1994. 11).

(동지:김도창, 행정쇄신위원회의 ‘행정심판제도의 개선안’에 대한 의견회신, 1994.11)

(8) 특별심판제도의 개선

○ 김도창(변호사)

일반행정심판법의 개선과 제도적인 균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별행정제도, 특히 조세심판제도(국세, 지방세)의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의 조세심판제도는 다단계 심판제로 시간상으로도 장기간에 걸치게 되어 있어 국민의 권익구제제도로서는 부적절한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행정법원이 생겨서 행정사건도 3심제의 재판구조가 될 때에는 필요적 행정심판의 기간을 단축하지 않으면 행정사건이 민사사건보다 더 시간을 지연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행정쇄신위원회의 ‘행정심판제도의 개선안’에 대한 의견회신, 1994년 11월).

○ 김철용(건국대 법학과 교수)

특별행정심판제도중 다단계로 되어 있는 행정심판은 1단계로 개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행정심판법 제43조제1항의 취지에 맞추어 특별행정심판제도를 과감히 정비하여야 한다(행정쇄신위원회의 '행정심판제도의 개선안'에 대한 의견회신, 1994년11월).

(9) 임시조치제도의 신설

○ 김철용(건국대 법학과 교수)

오늘날과 같이 급부행정이 중요해지고 또 심판의 종류로 의무이행심판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보다 국민의 권익보호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이행청구의 경우에 한하여, 재결청에게 임시조치를 명할 권한을 주어야 한다(행정쇄신위원회의 '행정심판제도의 개선안'에 대한 의견회신, 1994년11월).

(동지:김도창, 행정쇄신위원회의 '행정심판제도의 개선안'에 대한 의견회신, 1994.11)

(10) 행정심판제도의 개선형식

○ 법무부

현행법에 규정된 심판제도를 개정하기 보다는 국무총리 훈령 등을 통하여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지침, 활성화방안, 정기점검 또는 사후감사 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심판제도 운영의 내실을 기함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할 것이다(행정쇄신위원회의 '행정심판제도의 개선안'에 대한 의견회신, 1994.11).

Ⅲ. 立法方向

1. 各界意見의 檢討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나 그 방법과 내

용은 차이가 있다. 행정심판제도의 개선에 대한 각계의견을 종합·검토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겠다.

1) 행정심판기관

현행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재결청과 심리 의결기관(행정심판위원회)을 분리시키고 있으나, 행정심판의 운영실태를 보면 재결의 객관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함량미달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심리·의결·재결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구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①행정심판기관을 재결청과 행정심판위원회를 합일하여 독립적인 제3의 객관적 기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견해, ②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청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며 따라서 각기 차이는 있으나 위원회의 구성방법·구성원비·위원의 법적 지위 등을 강화하여 행정심판위원회를 지금보다 강화된 강력하고 통합된 합의제의결기관으로 하자는 견해로 나뉘어 진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는 외부심판위원의 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전문위원이나 상임위원, 행정심판주재관을 두거나, 행정심판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법(인원,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만이라도 상설화하는 방법), 중앙부처의 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 통합하는 방법, 국세심판소를 포함해 중앙부처의 행정심판기관을 통폐합하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하의 독립된 상설기구로서 중앙행정심판소를 설치하는 것 등이 제안된다. 중앙행정심판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행정부, 국세심판부 등 몇개의 部로 나누고 각부의 심판관의 구성과 수는 각 부의 특성과 사안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산하의 행정심판위원회의 기능을 국무총리소속하의 행정심판위원회로 이관하는 방법을 선택할 경우에는 행정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재결청에 재의요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시·도 및 시·도교육청의 처분이 국가사무에 한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 외에 ③현행법에 규정된 대로 사안별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함이 타당하고 법개정의 방법보다는 국무총리 훈령을 통하여 각 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부위원의 구성비율을 상향조절하도록 함이 상당하다는 견해

가 있다.

그리고 재결청의 장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이외의 일반위원회의 장을 겸임하자는 의견이 있고 이에 대해 현행대로 하자는 의견과 민간인위원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자는 의견이 있다.

2) 請求人適格

행정심판법 제9조의 청구인적격성을 표현하는 “법률상 이익”과 관련하여 행정심판법 제1조의 취지에 비추어 중대한 입법상의 과오라는 입장(이하 과오설이라 한다)과, 어느 범위까지 청구인적격성을 인정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며 다소 “불만”스럽기는 하지만 중대한 입법상의 과오는 아니라는 입장으로 대체적으로 나뉘인다.

3) 處分廳經由主義

현재 행정심판청구의 제기는 처분청경유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①행정심판청구를 행정처분청을 경유하여 제기하는 현행 처분청경유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견해, ②처분청경유제를 폐지하여 직접 재결청에 제출하게 하자는 견해, ③심판청구인이 처분청이든 재결청이든 선택하여 제출하도록 하자는 견해로 갈라진다. 그리고 처분청경유제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에 제출한 경우 즉시 재결청에 송부하도록 하게 하자거나,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관할 사건은 바로 법제처에 제출하도록 하며 행정심판의 청구를 받은 기관에서 처분청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심판청구 접수사실 및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자는 의견 등이 있다.

4) 審判請求提起期間

심판청구는 소정의 기간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①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안정성과 행정소송법상의 제소기간 규정과의 균형상 현행제도를 유지하자는 견해, 기간을 조정하되 ②‘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요

건을 삭제하여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내로 일원화하자는 견해와, ③행정소송법상의 제소기간과 일치시키자는 견해로 갈라지고 있다.

5) 審理의 基本原則 - 書面審理 · 口述審理

현행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기본적인 방식으로는 서면심리주의가 채택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심판의 심리원칙을 ①현행대도 서면심리로 하자는 견해, ②구술심리로 하자는 견해, ③청구인이 선택하도록 하자는 견해, 나아가 ④서면심리원칙을 완화하자는 견해로 나뉜다. ①의 견해는 현행방식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구술심리신청권(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피청구인의 답변서제출요구권(동법 제17조), 보충서면제출권(동법 제25조), 물적증거제출권(동법 제27조제1항), 증거조사신청권(동법 제28조제1항) 등이 인정되어 청구인의 의견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다는 논거에 입각한다.

6) 事情裁決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사정재결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사정재결규정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이고, 사정재결제도가 반드시 청구인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 공익과 사익의 조화 등 채택 당시의 취지에 비추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폐지론의 입장은 사정재결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개별법규에서 규정하면 될 것이지 일반법중에 규정을 둔 것은 국민에 대한 권리보호의 관점에서 문제가 없지않다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고, 사정재결에 대한 구체조치가 의무적이지도 않으며, 행정심판위원회가 법원에 비해 독립성이 미약하므로 자칫 행정부의 뜻대로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논거와, 행정소송에서 사정판결을 인정하고 있는 판국에 행정심판과정에서 사정재결을 규정하는 것은 屋上屋규정으로 지나친 행정청편의배려라는 논거 등에 입각하고 있다.

7) 執行不停止

심판청구의 제기의 효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심판의 제기가 심판청구의 대상인 당해 처분의 효력 및 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이다. 집행정지효나 집행부정지효나 입법정책의 문제이며, 집행부정지원칙은 남소의 폐단과 행정운영의 부당한 정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에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서는 ①예외적인 집행정지에 대한 제한 규정이 너무 지나친 현행법을 감안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보다는 '결정한다'로 법을 해석 운영하거나 개정해야 하며, ②긴급한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처리하도록 하자는 입장을 대체적으로 취하고 있다 하겠다.

8) 返戻制度

심판청구의 명백한 절차상 흠결 등에 대한 행정청 등의 반려제도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①반려제도채택시 헌법 제107조제3항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현행제도로서 동일한 효과가 가능하므로(청구취하, 청구각하), 구태여 규정화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과 ②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반려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다.

9)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중복 제기 문제

행정소송법의 개정으로 1998년 3월이후에는 임의적 행정심판주의로 전환됨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동시 제기 인정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①불필요한 행정심판절차를 배제하기 위해 동시 제기할 수 없도록 하자는 입장과 ②국민에게 신속한 권리구제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중복 청구를 허용함이 상당하다는 입장으로 나뉘인다.

10) 기 타

(1) 심판제기형식의 확대문제

현행법은 행정심판의 제기방식을 서면신청방식에 한정하고 있으나, 구술·전화·전보 등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2) 재결청의 再議要求權 문제

현행행정심판법 제39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는 재청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재결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①원처분청이 재결청의 재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위법한 재결의 경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과 ②“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1984년 정부원안)이 있다. 후자의 경우는 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에 문제가 있겠지만 재결청에 행정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는 논거를 든다.

(3) 裁決期間

행정심판제도가 신속한 국민의 권익구제제도로서 갖고 있는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도 재결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4) 심판청구인의 권리확대문제

심리의 대심구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심판청구인이 피청구인과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공격·방어할 수 있기 위해서), ①심판청구인에게 처분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제공요구권이나 열람청구권을 인정하고 나아가 구술심리주의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한 구술심리를 위하여 관계서류열람권, 검증의 입회기회의 부여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좌인 제도 등을 채택하여 심판청구인의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고, ②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서류의 부분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되어 있고(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를 검증 등 증거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동법 제28조제1항, 동시행령 제24조제4항제4호), 현장검증 등의 사례가 극히 적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다.

(5) 위원회 권한의 조정·분배문제

행정심판위원회운영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원회 권한의 합리적 분배를 통해 경미한 절차적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직권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에 대체로 찬성하나, 절차의 공정성·민주성 측면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시행하는 것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서는 행정편의로 호를 우려가 있다는 신중론도 있다.

(6) 告知제도의 개선

행정소송법의 개정으로 행정심판이 임의적 전치주의가 됨에 따라서, 반대로 필요적 전치주의로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국민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7) 특별행정심판제도의 개선

일반행정심판법의 개선과 제도적인 균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별행정제도, 특히 조세심판제도(국세, 지방세)의 다단계심판제의 개선이 필요하며, 그 밖에 행정심판법 제43조제1항의 취지에 맞추어 특별행정심판제도를 과감히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8) 임시조치제도의 신설

국민의 권익보호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이행청구의 경우에 한하여, 재결청에게 임시조치를 명할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2. 立法方向

현행 행정심판제도는 1984년에 행정심판법이 제정된 이래 10여년간 운용되

어 왔으나, 개선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현재와 같은 제도 및 운영상태로는 국민에게 외면당할 가능성이 있고 행정심판제도 자체의 존재의의를 상실할 수도 있으므로 현행 행정심판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당면성은 지난 1995년 3월의 행정쇄신위원회의 제도개선 방안이나, 최근(1995.6.7)의 법제처 행정심판법중개정법안 입법예고에도 공식화되고 있다. 즉 「현행 행정심판제도가 행정기관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국민의 권리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행정심판제도가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심판기관의 기능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심판의 민주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제도개선 내지 법개정의 취지가 이를 대변한다.

각계의견에 나타난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종합하여 볼 때, 행정심판이 본래의 기능인 행정의 자율통제와 국민의 권익구제에 보다 충실한 제도·운영이 되도록 개선하여 국민들이 친근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간이·신속·공정한 행정구제제도로서 조속히 운용·정착되도록 하는 것을 행정심판법의 기본적인 입법방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방향에 따른 행정심판제도의 개선은 국무총리 훈령 등을 통한 실제 운영의 개선보다는 현행법을 개정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법제처가 마련한 행정심판법중개정법률안은 앞으로 행정심판의 효율적 운영과 국민의 권익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행정심판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당면성 및 기본적인 입법방향에 입각하고 전술한 각계의견의 검토를 토대로 각 쟁점별로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살펴 보겠다.

1) 行政審判機關

현행법은 행정심판기관을 재결청과 행정심판위원회로 분리하고 있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청소속하에 설치되어 그 구성이나 기능면에서 행정청의 대변기관화될 소지가 많으므로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물론 행정심판기관은 독립된 상설기관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

나, 이는 행정통제와 국민의 권익구제의 조화 및 행정심판의 준수법화라는 이상과 인원·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와의 관계상 어려움이 많은 실정에 있다.

행정심판기관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입법예고안은 우선 ①현행 중앙행정기관산하의 27개 행정심판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총리소속하의 행정심판위원회로 흡수·일원화하고 있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점, 위원회의 전문성확보문제, 업무부담의 과중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입법예고안에서는 그 보완책으로서 위원의 과반수가 민간인이 되도록 하고, 심리안건의 폭증으로 인한 안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상임위원제를 두는 한편, 심판청구사건의 전문적인 조사·심리를 위한 전문위원제도를 두어 업무과중과 전문성결여의 단점을 보완하고 심판의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성결여와 업무과중의 해소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겠으나, 권익구제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한 기관의 제3자화나 완전한 상설기구설치를 도입하고 있지 않고 있어 행정심판기관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입법예고안에서는 국무총리소속하의 행정심판위원회로 흡수·일원화되는 위원회이외의 일반위원회의 경우 '위원중 4인 이상'을 외부 민간인인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심판의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며, 다만 현재 재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되고 있는데 민간인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는 방안도 위원회의 객관성을 높이는 것이 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촉위원도 저명인사보다는 행정실무에 밝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안을 연구할 수 있는 인사를 위촉하는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도 앞으로 검토해볼 만하다고 생각된다.

2) 請求人適格

현행 행정심판법 제9조는 "① 취소심판청구는 ……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②무효등확인심판청구는 ……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③의무이행심판청구는 ……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입법상 과오라는 견해와 입법상 과오는 아니

며 입법정책상의 문제라는 견해로 나누어 지고 있으나, 행정의 자율적 통제기능의 확보와 국민의 권익구제라는 행정심판의 본래의 의의를 살린다는 취지에서 독일 및 일본의 입법례와 같이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 또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부당한 처분에 의해 권리·이익이 침해된 자는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가 없고 행정심판에 의한 구제절차가 사실상 중심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행정심판의 역할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3) 處分廳經由主義

현행 행정심판법은 처분청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경유제도를 폐지하고, 재결청에 바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자는 유력한 견해가 있다. 재결청에 직접 행정심판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행정심판의 능률성은 보장되지만 처분청에 반성 및 시정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행정심판제도의 본질인 자율적인 행정통제의 기능이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청구인은 어떤 행정청이 재결청이 되는지 알기 어렵고, 재결청에 직접 제출하기 위해 지방에서 서울이나 도청소재지까지 나와야 하므로 시간과 경비의 부담이 과중되어 결국 국민편의 제고면에서 문제가 있고, 재결청에 제출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에 대하여 답변서,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여야 하므로 오히려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제적이고 획일적인 처분청경유주의보다는 국민이 편리한 대로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재결청에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하고,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할 경우에 당해 행정청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빠른 시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생각된다.

4) 심판청구 제기기간

현재 행정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넘겨서

는 안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행정심판법상의 심판청구기간을 조정하자는 의견들이 있는 바, 행정심판이 앞으로 임의적 전치절차화될 것에 대비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행정심판제기기간중 주관적 제기기간을 삭제하여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로 일원화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5) 심리의 기본원칙 - 서면심리·구술심리 -

현행 행정심판법은 서면심리주의를 취하면서,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면심리의 원칙이 반드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국민편의를 저해하고 청구인에게 불리한 요소라고는 볼 수가 없는 반면, 구술심리의 원칙은 사건처리의 지연, 행정심판업무의 과중한 부담, 당사자의 불필요한 주장 남발 등으로 행정심판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지만, 구술심리에 의해 심판청구인이 본인의 정당성 여부를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어서 심리적으로 재결에 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질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현행 행정심판의 심리방식을 개선하여 서면심리원칙에서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가급적 구술심리를 하도록 심리의 민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의 편의와 권익보호를 위하여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6) 事情裁決

현행 행정심판법이 공익과 사익의 합리적인 조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사정재결제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나친 행정편의적 배려규정으로 국민의 권익보호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마련한 행정심판제도의 개선안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

현행법은 사정재결을 하는 경우에 권리구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 제33조제2항은 “재결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재결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정재결을 하면서 구제방법의 장구를 임의

규정으로 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권리구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구제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에게 실질적이고 충분한 구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7) 執行不停止

심판청구의 제기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의 효력 내지 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하히 규정할 것인가는 행정의 원활한 운영의 필요성과 당사자의 권리보호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이지만 행정쇄신위원회 개선안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

현행 행정심판법은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21조). 그러나 ①에 외적으로 집행정지를 인정하면서도 “…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집행정지의 법정요건과의 관계에 비추어보아 「……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하여 강행규정화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다 바람직한 입법방안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②집행정지의 결정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와 같이 긴급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심의할 수 있도록 이를 명문화하는 방안도 신속한 권익보호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집행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행정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부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행정법원법 제80조).

8) 返戻制度

불필요한 행정심판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의 명백한 요건미비 등의 경우에 심판청구서를 반려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여부에 대해서는 현행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각하제결과 제30조의 취하제도에 의하여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再審判청구, 다른 법률에 별도의 구제절차가 있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등과 같이 그 기준이 명확한 경우는 행정심판 운영의

신속성 및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이 심판청구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9) 裁決期間

현행 행정심판법 제34조 제1항은 재결기간을 재결청 등이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하고, 1차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는 이 재결기간의 규정은 재결에 관한 시간적 기준을 제시하는 훈시규정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재결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18조는 행정소송심판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행정심판제도의 장점중의 하나가 간이·신속한 국민의 권익구제 제도로서 기능하는 것인데 재결기간의 장기화는 행정심판제도의 유용성을 반감시키는 바, 심리기간을 단축시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즉 행정심판 심리기간을 준수하며, 현재처럼 행정청이 불리하여 인용해야 할 때는 일단 보류하여 재검토하는 등의 행정편의적 관행을 지양하고 심리기간을 단순히 훈시규정으로 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는 한편, 행정소송법 제1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결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재결이 없는 경우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어 심판청구인이 신속하게 다음 단계의 구제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리고 행정심판법은 재결기간연장의 결정권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동법 제34조제1항),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재결기간연장결정에 대한 결정권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0) 행정심판에 불복하는 행정청에 대한 제재

행정심판에 대한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처분청이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복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행정심판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심판의 경우, 기초

자치단체가 한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인용재결한 경우, 처분청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그 일례이다.

이에는 ①재결청 등이 상급행정관청이므로 일반적 감독권 특히 감사권·징계권 등을 행사하여 책임을 추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직무유기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안, 또는 ②대집행 등 별도의 법적 강제수단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②의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좀 더 고려를 요하는 문제라 할 수 있으므로 우선은 ①의 방안을 통하여 처분행정청의 후속조치를 유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의 불복을 실효성있게 제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②의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행정청의 의무불이행에 대비하는 법적 장치로서의 실효성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11) 기타

기타 심판청구인의 권리 확대문제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청구의 원인에 관계되는 자료는 처분행정청인 피청구인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에 비추어, 심판청구사건의 적정한 심리를 도모함으로써 청구인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관계행정청에 대한 자료요구권이나 자료열람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와 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한 구술심리를 위하여 심판청구인의 관계서류의 열람권, 검증의 입회기회 부여 및 보좌인제도 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행정심판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신중하게 검토해볼 만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재결청에 대한 재의요구권 인정문제, 서면방식이외에 구술 등에 의한 심판청구 형식의 확대, 위원회운영의 신속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절차상 경미한 사항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권한의 조정·배분, 이행심판청구의 경우의 임시조치제도신설, 필요적 전치주의인 경우의 고지의무화, 그리고 일반행정심판제도의 개선에 맞추어 다단계심판의 1심화 등 특별행정심판제도의 개선 및 정비 등에 대한 다양한 견해도 앞으로 행정심판제도의 운용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대해 살펴 보았다. 최근 법제처가 기존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심판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점은 이미 언급하였으나, 이 입법예고안이 행정심판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결국 행정심판제도가 국민을 위한 진정한 권익보호·구제제도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도면과 운영면에서 이를 보완·육성해 나가는 끊임없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과거의 제도운영면에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다 국민에게 봉사하고 도움을 주는 적극적 제도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심판법은 국민이 용이하고,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자체가 간편하고도 개방적이어야 할 것이다.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려 할 때 가급적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갖지 않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신뢰를 갖게할 필요가 있다. 그 지름길은 심판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하겠다.

〈참고자료〉

現行行政審判法*과 行政審判法中改正法律立法豫告案**의 比較

(* 法律 第3755號, 1984.12.15 公布 ; ** 法制處, 1995.6.7 立法豫告)

현행	개정입법예고안	개정이유
<p>第5條(裁決廳) ①(생략)</p> <p>②다음各號에 정한 行政廳의 처분 또는 不作爲에 대하여는 당해 行政廳이 裁決廳이 된다.</p> <p>1. (생략)</p> <p>2. 國會事務總長·法院行政處長·憲法裁判所 事務處長 및 中央選舉管理委員會</p> <p>3. (생략)</p> <p>③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教育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處分 또는 不作爲에 대하여는 각 소관監督行政機關이 裁決廳이 된다.</p> <p>④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に 소속된 各級國家行政機關 또는 自治行政機關의 處分 또는 不作爲에 대하여는 각각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が 裁決廳이 된다.</p> <p>⑤(생략)</p>	<p>第5條(裁決廳) ①(현행과 같음)</p> <p>②.....</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p> <p>.....</p> <p>.....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p> <p>3. (현행과 같음)</p> <p>③特別市長·廣域市長 (教育監을)</p> <p>.....</p> <p>.....</p> <p>④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に 소속된 各級 國家行政機關 또는 그 管轄區域안에 있는 自治行政機關의 처분 또는 不作爲에 대하여는 각각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が 裁決廳이 된다.</p> <p>⑤(현행과 같음)</p>	<p>○ 중앙행정기관 행정심판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를 국무총리</p>
<p>第6條(行政審判委員會) ①裁決廳에 제기된 行政審判의 請求(이하 “審判請求”라 한다)를 審理·議決하기 위하여 각 裁</p>	<p>第6條(行政審判委員會) ①行政審判의 請求(이하 “審判請求”라 한다)를 審理·議決하기 위하여 각 裁決廳(中央行政機關</p>	<p>○ 중앙행정기관 행정심판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를 국무총리</p>

현행	개정입법예고안	개정이유
<p>決廳소속하에 行政審判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다만, 行政各部長官의 處分 또는 不作為에 대한 審判請求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審判請求事件의 審理·議決은 國務總理 소속하의 委員會에서 행한다.</p> <p>〈신설〉</p> <p>②委員會는 裁決廳이 任命 또는 위촉하는 7인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者 3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國務總理소속하의 委員會의 委員數는 따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2. 教育法 第109條의 規定에 의한 大學에서 法律學을 가르치는 助教授이상의 職에 있거나 있었던 者 3. 行政機關의 4級이상의 公務員으로 있었던 者 또는 그 밖에 行政審判에 관한 知識과 經驗이 있는 者 <p>③委員會의 組織 및 運營과 委</p>	<p>의 長인 裁決廳을 제외한다)소속하에 行政審判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p> <p>②中央行政機關의 長이 裁決廳이 되는 審判請求의 審理·議決은 國務總理소속하의 行政審判委員會(이하 “國務總理 行政審判委員會”라 한다)에서 행한다.</p> <p>③委員會는 7인의 …………… …………… …………… …… 4인 …………… ……. 다만, 國務總理 行政審判委員會의 委員數는 따로 大統領令으로 정하되, 委員중 4인은 常任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2. …………… …………… …………… 3. …………… …………… …………… <p>④……………</p>	<p>행정판위원회에서 관장함.</p> <p>○위원의 과반수가 민간인 위원이 되도록 하고,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안건 폭증으로 인한 안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상임위원을 두도록 함.</p>

현행	개정입법예고안	개정이유
<p>員의 任期·身分保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第5條第2項第2號에 規定된 機關중 國會事務總長의 경우에는 國會規則으로, 法院行政處長의 경우에는 大法院規則으로, 憲法裁判所事務處長의 경우에는 <u>憲法裁判所規則</u>으로 정한다.</p>	<p>..... <u>憲法裁判所規則</u>으로, <u>中央選舉管理委員會의 事務總長의 경우에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u>으로 정한다.</p>	
<p><신설></p>	<p>第6條의2(專門委員) ①委員會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調査·研究 業務를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委員會에 專門委員을 들 수 있다. ②第1項의 專門委員은 委員長이 任命 또는 위촉한다.</p>	<p>○ 행정심판청구 사건의 전문적인 조사·심리를 위하여 전문위원을 들 수 있도록 함.</p>
<p>第11條(選定代表者) ① ~ ④ (생략) ⑤代表者를 選定한 請求人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選定代表者를 解任할 수 있다.</p>	<p>第11條(選定代表者)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p>	
<p><후단 신설></p>	<p>이 경우 請求人들은 代表者의 解任事實을 지체없이 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p>	
<p>第17條(經由節次) ①審判請求는 피청구인인 行政廳을 거쳐 제기하여야 한다.</p>	<p>第17條(審判請求書의 제출 등) ①審判請求書는 裁決廳 또는 被請求人인 行政廳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判</p>	<p>○ 재결청에도 심판청구를 직접 제기할 수 있도록 함.</p>
<p><신설></p>		

현행	개정입법예고안	개정이유
<p>②行政廳이 審判請求의 經由 節次를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알려져 請求人이 審判請求書를 다른 行政機關에 제출한 때에는 당해 行政機關은 그 審判請求書를 지체없이 정당한 권한있는 行政廳에 송부하여야 한다.</p> <p>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判請求書를 받은 行政廳은 그 審判請求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審判請求의 취지에 따르는 處分이나 확인을 하고 지체없이 이를 裁決廳과 請求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行政廳은 請求人이 審判請求를 취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審判請求書를 받은 날로부터 10日 이내에 그 審判請求書를 裁決廳에 송부하여야 한다.</p> <p>⑤行政廳이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判請求書를 송부함에 있어서는 審判請求書에 裁決廳이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정당한 권한있는 裁決廳에 송부하여야 한다.</p> <p>⑥第2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송부할 때에는 지체없</p>	<p>請求書를 받은 裁決廳은 지체없이 被請求人인 行政廳에 審判請求書를 송부하여야 한다.</p> <p>③……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告知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p> <p>……</p> <p>……</p> <p>……</p> <p>……</p> <p>④第1項 내지 第3項의 ………</p> <p>……</p> <p>……</p> <p>……</p> <p>……</p> <p>……</p> <p>……</p> <p>……</p> <p>⑤……</p> <p>……</p> <p>……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判請求書를 받은 날부터 ………</p> <p>⑥…… 第5項의 ………</p> <p>……</p> <p>⑦第3項 또는 第6項의 ………</p> <p>……</p>	

현 행	개정 입 법 예 고 안	개정이유
<p>이 그 사실을 請求人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p> <p>⑦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審判 請求期間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廳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機關에 審判請求書가 제출된 때에는 審判請求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p> <p>第18條(審判請求期間) ①審判 請求는 處分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日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國外에서의 審判 請求에 있어서는 그 期間을 90日로 한다.</p> <p>②請求人이 天災·地變·戰爭 事變 그 밖에 不可抗力으로 인하여 第1項에 정한 期間내에 審判請求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消滅한 날로부터 14日이내에 審判請求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國外에서의 審判請求에 있어서는 그 期間을 30日로 한다.</p> <p>③審判請求는 處分이 있는 날로부터 180日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正當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第1項 및 第2項의 期間은 不變期間으로 한다.</p> <p>⑤行政廳이 審判請求期間을</p>	<p>.....</p> <p>.....</p> <p>⑧.....</p> <p>.....</p> <p>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裁決廳 또는 行政廳과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機關에</p> <p>.....</p> <p>.....</p> <p>第18條(審判請求期間) ①審判 請求期間은 處分이 있는 날부터 180日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正當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 심판청구기간을 처분일로부터 180일까지로 일원화 함.</p>

현행	개정입법예고안	개정이유
<p>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보다 긴 期間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期間내에 審判請求가 있으면 그 審判請求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p> <p>⑥行政廳이 審判請求期間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第3項의 기간내에 審判請求를 할 수 있다.</p> <p>⑦第1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無效 등 確認審判請求와 不作爲에 대한 義務履行審判請求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第19條(審判請求의 方式) ① (생략)</p> <p>②處分에 대한 審判請求의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기재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4. <u>處分이 있는 것을 안 날</u></p> <p>5. ~ 6. (생략)</p> <p>③ ~ ⑤ (생략)</p> <p>第21條(執行停止) ①(생략)</p> <p>② ~ ④ (생략)</p> <p>⑤裁決廳이 執行停止 또는 執行停止의 취소에 관한 決定을 함에는 委員會의 審理·議決을 거쳐야 하고, 그 결과를 當事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삭제></p> <p>②第1項의</p> <p>.....</p> <p>.....</p> <p>.....</p> <p>第19條(審判請求의 方式)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처분이 있는 날</u></p> <p>5. ~ 6.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第21條(執行停止) ①(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p> <p>.....</p> <p>.....</p> <p>.....</p> <p>.....</p>	<p>○ 제18조의 개정 에 따른 정비</p>

현행	개정입법예고안	개정이유
<p>〈신설〉</p> <p>第22條(委員會 回附 등) ①裁決廳은 第1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判請求書가 송부되면 지체없이 그 事件을 委員會에 回附하여야 한다.</p> <p>②(생략)</p> <p>第24條(答辯書의 제출) ①被請求人이 第1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判請求書를 裁決廳에 송부할 때에는 答辯書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第26條(審理의 方式) ①(생략)</p> <p>②行政審判의 審理는 書面審理를 原則으로 한다. 다만, 當事者의 申請이 있거나 委員會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口述審理를 할 수 있다.</p> <p>③(생략)</p>	<p>⑥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審理·議決에 갈음하여 職權으로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追認을 받아야 한다.</p> <p>第22條(委員會 回附 등) ①…… …… 第17條第5項의 …… …… …… …… ②(현행과 같음)</p> <p>第24條(答辯書의 제출) ①…… …… 第17條第5項의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p> <p>第26條(審理의 方式) ①(현행과 같음)</p> <p>②行政審判의 審理는 口述審理 또는 書面審理로 한다. 다만, 當事者가 口述審理를 申請한 때에는 가급적 口述審理를 하여야 한다.</p> <p>③(현행과 같음)</p>	<p>○ 긴급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권으로 집행 정지의 심리·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p> <p>○ 행정심판의 심리방식을 종전의 서면심리원칙에서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가급적 구술심리를 하도록 하여 심리의 민주성을 제고 함.</p>

현행	개정입법예고안	개정이유
<p>第28條(證據調查) ①(생략)</p> <p>②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裁決廳의 職員 또는 다른 行政機關에 촉탁하여 第1項의 證據調查를 하게 할 수 있다.</p> <p>③(생략)</p> <p><신설></p>	<p>第28條(證據調查) ①(현행과 같음)</p> <p>②..... 裁決廳의 職員(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의 경우에는 法制處所屬職員)</p> <p>③(현행과 같음)</p> <p>④관계 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調查나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協助하여야 한다.</p>	
<p>第34條(裁決期間) ①裁決은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被請求人인 行政廳이 審判請求書를 받은 날로부터 60日이내에 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第34條(裁決期間) ①..... 裁決廳 또는 被請求人인 行政廳이 審判請求書를 받은 날부터</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第39條(再審判請求의 금지) 審判請求에 대한 裁決에 대해서는 다시 審判請求를 제기할 수 없다.</p>	<p>第39條(再審判請求의 금지) 審判請求에 대한 裁決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裁決 및 同一事件에 대하여 다시 審判請求를 제기할 수 없다.</p>	
<p>第42條(告知) ①行政廳이 處分을 書面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相對方에게 處分에 관하여 行政審判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裁決廳, 經由節次 및 請求期間을 알려야 한다.</p> <p>②(생략)</p>	<p>第42條(告知) ①..... 裁決廳 및 請求期間</p> <p>②(현행과 같음)</p>	

현 행	개정 입 법 예 고 안	개정 이유
<p>〈신 설〉</p>	<p>第42條의2(義務履行審判認容 裁決의 間接強制 등) ①行政廳 이 第37條第2項의 規定에 의 한 처분을 상당한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때에는 請求人은 被 請求人인 行政廳이 속하는 國家 또는 公共團體를 상대로 法院에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請求의 訴는 被請求人인 行政廳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第1審法院을 관할로 한다.</p>	
<p>〈신 설〉</p>	<p>第44條(權限의 委任) 이 法에 의한 委員會의 權限중 경미한 절차적인 事項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委員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附 則</p> <p>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p> <p>第2條(經過措置) ①이 法은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 施行 전에 행하여진 처분에 관한 行政審判에 대하여도 適用한다. 다만, 이 法施行당시 제기된 審判請求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p>	<p>○절차적으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의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함.</p>

현행	개정입법예고안	개정이유
	<p>②中央行政機關의 長인 裁決廳 소속하의 委員會는 第6條第1項 및 第2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施行당시 제기된 審判請求의 審理·議決을 할 수 있다.</p> <p>③이 法 施行당시 이미 종전의 規定에 의한 審判請求期間이 경과된 경우는 이 法에 의하여 처분에 대한 審判請求를 제기할 수 없다.</p> <p>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서울 特別市行政特例에 관한 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p> <p>第4條第4項을 削除한다.</p>	

中央行政機關 行政審判委員會 構成 및 運營現況*

구분 기관명	위 원 회 구 성					'93 처리전수
	위 원 장	공무원	변호사	교 수	전직공무원	
경제기획원	차 관	3	1	1	1	1
총 무 처	"	3	1	1	1	3
과학기술처	"	3	1	1	1	1
환 경 처	"	3	1	1	1	6
공 보 처	기획실장	3	1	1	1	4
국가보훈처	차 장	3	1	1	1	166
내 무 부	기획실장	3	1	1	-	10
재 무 부	차 관	3	1	1	1	3
법 무 부	기획실장	3	1	1	1	14
국 방 부	차 관	4	2	-	-	22
건 설 부	"	2	2	1	1	86
교 육 부	"	3	1	1	1	18
문화체육부	"	3	1	1	1	-
농림수산부	"	3	1	1	1	15
상공자원부	"	3	1	1	1	12
보건사회부	"	3	2	1	-	21
노 동 부	기획실장	3	1	1	1	85
교 통 부	차 관	3	1	1	1	96
체 신 부	"	3	2	-	1	3
조 달 청	차 장	3	1	-	2	1
경 찰 청	기획관리	3	2	1	-	615
병 무 청	차 장	3	2	-	1	5
산 립 청	"	3	1	-	2	34
수 산 청	차 장	3	1	-	2	16
공업진흥청	"	3	1	1	1	1
철 도 청	"	3	3	-	-	4
해운항만청	"	3	1	1	1	9

市·道 行政審判委員會 構成 및 運營現況*

구 분	위 원 회 구 성					'93 처리건수
	위 원 장	공무원	변호사	교 수	전직공무원	
서 울	기획실장	2	4	-	-	1,438
부 산	부 시 장	2	2	2	-	260
대 구	부 시 장	3	1	1	1	101
인 천	부 시 장	3	1	1	1	140
광 주	부 시 장	3	1	1	1	67
대 전	부 시 장	3	2	1	-	188
경 기	부 지 사	3	1	1	1	573
강 원	부 지 사	2	1	1	2	97
충 북	부 지 사	3	1	1	1	160
충 남	부 지 사	2	2	1	1	38
전 북	부 지 사	2	2	1	1	142
전 남	부 지 사	1	2	2	1	118
경 북	부 지 사	3	1	1	1	142
경 남	부 지 사	3	1	1	1	152
제 주	부 지 사	3	1	1	1	20

行政審判制度 運營現況*

1. 年度別 行政審判請求事件 接受現況

(단위 : 건수,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구 분	'86	'87	'88	'89	'90	'91	'92	'93
계	1,035	1,194 (15.4)	1,172 (-1.9)	1,500 (28.0)	1,976 (31.7)	3,491 (76.7)	3,694 (5.8)	6,846 (85.3)
중앙 행정기관	599	816	728	664	900	1,960	1,587	1,709
시·도	434	372	437	829	1,062	1,520	2,093	5,123
시·도 교육청	2	6	7	7	14	11	14	14

2. 年度別 行政審判請求 處理現況

(단위 : 건수)

연도	계	심 리 · 의 결				취 하	이 송	인용율 (%)
		소 계	인 용	기 각	각 하			
계	19,295	17,813	3,137	11,153	3,523	1,323	159	17.6
'86	1,057	952	183	614	155	89	16	19.2
'87	1,113	1,026	173	685	168	78	9	16.8
'88	1,266	1,165	286	698	181	95	6	24.5
'89	1,390	1,236	165	837	234	139	15	13.3
'90	1,955	1,736	323	1,008	405	202	17	18.6
'91	3,155	2,953	358	1,756	839	173	29	12.1
'92	3,639	3,405	535	2,137	733	217	17	15.7
'93	5,720	5,340	1,114	3,418	808	330	50	20.8

3. 年平均 行政審判請求 處理 件數別 現況

구 분	계	5건 이하	6~10	11~20	21~50	51~100	100건초과
계	57	24	4	8	11	6	4
중앙행정기관	27	9	4	7	3	3	1
시·도	15	-	-	1	8	3	3
시·도교육청	15	15	-	-	-	-	-

① 51건 ~ 100건

국가보훈처(61), 건설부(55), 교통부(71), 전북(56), 전남(61), 경남(84)

② 100건 초과

경찰청(161), 서울시(505), 경기(168), 부산시(110)

4. 處理期間別 現況('93)

(단위 : 건수, 괄호 안은 비율)

계	60일 이내	90일 이내	90일 초과
5,340	2,383	1,801	1,156
(100.0%)	(44.6)	(33.7)	(21.7)

※ 최근 5년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사건부담 현황**

연 도	5년 평균	90 년	91 년	92 년	93 년	94 년
건 수	604.8건	476건	1,286건	479건	316건	467건

cf.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처리사건 : 월평균 150건(93년 1,902건, 94년 1,847건)

*표는 행정쇄신위원회, 『행정쇄신백서』(제2집, 1994.5~1995.4), 354~8쪽에서 발췌함.

**표는 행정쇄신위원회의 '행정심판제도의 개선안'에 대한 법무부 의견회신 중에서 발췌함.

第 2 編

最近立法意見 動向 및 最新法令 紹介

I. 最近立法意見 動向

○ 분류기준표

분 야	대한민국헌행법령집해당항목
憲 政	제1권1헌법, 2국회, 제2권3선거·정당
統一·外交·國防	제14권13군사(1), 제15권13군사(2), 14병무, 15국가보훈, 제47권44외무, 45조약(1), 제48권45조약(2), 제49권45조약(3)
內務·地方行政	제3권4행정일반, 제4권5국가공무원, 제10권10지방제도(1), 제11권10지방제도(2), 제12권11경찰, 제13권12민방위·소방
社會·文化·教育	제16권16교육·학술(1), 제17권17교육·학술(2), 제18권17문화·공보, 제38권38사회복지, 제40권40노동(1), 제41권40노동(2)
產 業·經 濟	제20권19재정·경제일반(1), 제21권19재정·경제일반(2), 제22권20내국세(1), 제23권20내국세(2), 제24권21관세, 22담배·인삼, 제25권23통화·국채·금융, 제30권28상업·무역·공업, 제31권29공업규격·계량, 30공업소유권, 제32권31에너지이용·광업, 제33권32전기·가스
農 林·水 産	제26권24농업(1), 제27권24농업(2), 제28권25축산, 26산림, 제29권27수산
建 設	제34권33국토개발·도시, 제35권34주택·건축·도로, 제36권35수자원·토지·건설업
科學技術·交通·遞信	제19권18과학·기술, 제42권41육운·항공·관광(1), 제43권41육운·항공·관광(2), 제44권42해운(1), 제45권42해운(2), 제46권43체신
環 境·保 健	제37권36공중위생·의사, 제38권37약사, 제39권39환경
法 院·法 務	제5권6법원, 제6권7법무, 제7권8민사법(1), 제8권민사법(2), 제9권9형사법

1. 最近立法意見 目錄

(1995.2.11. ~ 1995.4.20)

- ◎ 憲政 80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의견
 - 국회법 개정의견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헌법 개정의견

- ◎ 統一·外交·國防 82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의견
 - 배타적경제수역관리법(가칭) 제정의견
 - 영해법 개정의견
 - 재외국민의지위에관한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 內務·地方行政 84
 - 국가공무원법 개정의견
 - 독극물관리체계구축관련 입법의견
 - 소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의견
 - 용역경비업법 개정의견
 - 인위재난관리법(가칭) 제정의견
 - 지방자치법 개정의견
 - 〈행정구역개편관련 입법의견〉
 - 〈파산선고제관련 입법의견〉

- ◎ 社會·文化·教育 89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개정의견
 - 교육개혁관련 입법의견

- 근로자파견법(가칭) 제정의견
- 민간복지관련 입법의견
- 사회보장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서울대학교법(가칭) 제정의견
- 영화진흥법(가칭) 제정의견
- 외국인근로자고용및관리에관한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産業 · 經濟 95

- 공업배치및공장설립법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의견
- 국유재산법 개정의견
- 금융감독체계관련 입법의견
-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의견
- 기업세계화지원법(가칭) 제정의견
- 대금업법(가칭) 제정의견
- 도 · 소매업진흥법시행령 개정의견
-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의견
-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의견
- 보험업법 개정의견
-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의견
- 소비자보호법 개정의견
-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개정안
- 예금자보호제도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외국환관리법 개정의견
- 유통단지개발촉진법(가칭) 제정의견
- 의장법 개정의견
- 토지 · 금융규제완화관련 입법의견
- 폐광지역개발촉진법(가칭) 제정의견
- 한국은행법 개정의견

◎ 農林·水産 108

- 농·수·축·임업협동조합법시행령 개정안
- 산림법 개정의견

◎ 建設 109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의견
-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의견
- 건축사법시행령 개정의견
- 도시계획법 개정의견
-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의견
- 자연공원법 개정의견
-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개정의견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개정안관련 입법의견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의견

◎ 科學技術·交通·遞信 113

-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의견
- 연안역관리법(가칭) 제정의견
- 자동차관리법 개정의견
- 자동차운수사업법관련 입법의견
-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의견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의견
- 정보화촉진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의견

◎ 環境·保健 117

- 노인건강관리법(가칭) 제정의견
- 먹는물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의견
- 물관리관련 입법의견
- 보건의료기술진흥법(가칭) 제정의견

- 상수원보호지역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의료법 개정의견
- 장기공여및이식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가칭) 제정의견
- 환경규제관련 입법의견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개정의견

◎ 法院 · 法務 121

- 민법 개정의견
- 법령안입법예고절차 개선의견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및 시행령관련 입법의견
- 사법개혁관련 입법의견
- 사설경호업법(가칭) 제정의견
- 세무사 등 자격제도의 축소 · 폐지계획관련 입법의견
- 양형관련 입법의견
- 유실물법시행령개정안관련 입법의견
- 형사소송법 개정의견

2. 最近立法意見 要旨

(1995.2.11. ~ 1995.4.20)

◎ 憲政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의견
 - ①후보자 신분보장조항에 열거되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후보자 신분보장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고, ②회사나 단체 모든 구성원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회사도 처벌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나 임원급 범법행위 때만 양벌규정을 적용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③선거자원봉사자 모집인원 및 절차, 운영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자원봉사자 모집을 빙자한 탈법선거운동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관련조항 신설이 시급함. ④제230조의 처벌조항도 처벌대상을 금품운반행위에 국한, 범조항밖의 취득·보관 등 행위는 사실상 처벌이 어렵고, 금품운반행위는 입증자체가 어려우므로 관련조항의 개정이 요망됨(검찰).
 - 정당의 공천을 배제할 경우 자유의사에 따라 입후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후보의 난립으로 인한 선거의 과열도 우려됨(남궁근 경상대 행정학과 교수).
 -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허용할 경우 지방분권화가 기본인 지방자치체가 정당을 통해서 오히려 중앙집권화 되어 그 본질이 퇴색하게 되므로 정당공천배제는 공천을 둘러싼 잡음도 덜 수 있는 이점이 있음(김동훈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 각 선거별로 자원봉사자의 수를 제한하고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며, 유권자 매수목적의 금품운반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취득 및 보관행위까지로 확대함. 현재 2회로 되어 있는 후보자선전물 발송횟수를 1회로 줄이고 기초의원 후보자 기호결정 방법도 추천방식에서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결정토록 하며 투표시간을 오후 6시에서 7시까지 1시간 연장하도록 함(당정).
 -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수를 선거종류에 따라 제한하고 자원봉사자를 구분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발행하는 한편 명부를 작성해 관리하며, 모집기간을 단축
· 한정하고, 교육방법을 엄격히 하도록 함(선거관리위원회).

: 세계 95.3.30., 1면; 세계 95.3.13., 8면; 동아 95.4.3., 2면; 경향 95.4.
16., 4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2호(79~80면) · 제94-6호(79~80면) 참조

○ 국회법 개정의견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국회상임위 조정이 불가피하므로 소관부처의 이름
이 바뀐 경우에는 상임위명칭을 조정하고 몇 개 부처가 통폐합된 경우에는 관
련상임위를 하나로 합치는 「국회법」개정작업이 필요함(한국일보 해설).

: 한국 95.2.19., 5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66면) · 제8호(64면) · 제9호(85~86면) · 제11호
(66면) · 제94-1호(48면) · 제94-2호(76~77면) · 제94-3호(86~87면) 참조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①보조금제도가 정당발전과 정치안정을 위한 것이기는 하나 작년 제정된 정치
개혁법의 엄격한 규제로 돈안쓰는 공정한 선거와 깨끗한 정치를 지향하고 있
는바, 막대한 보조금지급은 이같은 정신에 역행되고, ②국회의원 5명이상이면
30억원이상을 받게되는 법규정을 악용, 군소정당이 속출할 수 있고, ③국고보
조금사용에 대한 감독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조금 규모를 크게 낮추고
선관위 감독규정을 엄격하게 하며, 배분에 있어 신당의 경우 일정한 원내의석
이 있을 때 최소한의 창당비용만 보조하는 방식으로 배분비율 역시 규제할 필
요가 있음(한국일보 해설).

- 각종 인 · 허가권을 가진 자치단체장 출신이 음성적인 선거자금을 써서 당선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선거비용 조달을 위해 후원회를 결성할 수 있도
록 공개적이고 투명한 선거자금 조달방법을 터주는 것이 현행 「정치자금에관
한법률」의 취지에 부합함.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인 점을 고
려하여 이러한 후원회 결성은 선거기간에 한정해야 할 것임(김덕룡 민자당 사
무총장).

-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서는 국고보조를 기본으로 한 법정한도액 이상

을 써서는 안됨(박지원 민주당 대변인).

: 한국 95.2.13., 3면; 한겨레 95.3.24., 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4호(23면) · 제6호(68면) · 제8호(66~67면) · 제9호(86면) · 제11호(69~70면) · 제12호(69~70면) · 제13호(46~47면) · 제94-1호(48~49면) · 제94-4호(76면) · 제94-5호(87~88) 참조

○ 헌법 개정의견

- 현행 5년 단임의 대통령중심제가 국가발전을 위해 결함을 갖는 제도라고 판단될 때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 4년 중임의 정·부통령을 두는 원형에 가까운 대통령 중심제로의 「헌법」개정을 해야 하며, 이는 현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새 대통령부터 적용함(현승일 국민대 총장).

: 중앙 95.3.6.,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1호(50면) 참조

◎ 統一 · 外交 · 國防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의견

- 북한주민접촉 승인신청서에 접촉목적은 구체적으로 명기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함(통일원).

- 독일과 중국, 대만의 관계법규처럼 안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남북교류를 촉진함(한국일보 해설).

: 한국 95.4.16., 1·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7호(58~59면) 참조

○ 배타적경제수역관리법(가칭) 제정의견

- 「유엔해양법협약」의 국회비준을 추진, 해양자원 관할권을 확대하고 남동해 연안의 2백해리 경제수역 선포를 적극 추진하여 2002년까지 태평양 동남방해저에 15만km³의 투자광구에 대한 단계적 정밀탐사를 실시하는 등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을 개발함(세계화추진위원회).

: 국민 95.3.23., 2면

○ 영해법 개정의견

- 중국·러시아·일본 등의 군함이 아무 제약을 받지 않고 우리 영해를 항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국가안보 및 영해주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기상조이므로 국제법과는 별도로 우리 「영해법」에 사전신고의무를 명기해 외국군함의 영해통과시 사전신고를 받도록 해야 함(국방부·경찰청).
- 외국선박의 영해통과를 규정하는 국제법이 없던 77년에 마련된 우리 「영해법」은 외국선박의 대한해협통과를 보장하기 위해 영해를 3해리로 축소했으나, 작년 11월 영해내 외국선박 및 항공기의 통과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돼 대한해협 영해 확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외국선박이나 항공기가 아무 피해를 끼치지 않고 통과할 경우 사전 신고 없이도 통과를 허용하는 무해통항권(유엔해양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임(외무부).
- 해양법협약이 비준된다면 헌법 제6조에 따라 해양법협약은 우리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므로 법적인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서두르지 말고 관련 국내법을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며 해양법협약 비준문제에 착실하고도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야 함(이상면 서울대 교수).

: 한국 95.3.3., 1면; 조선 95.3.4., 2면; 중앙 95.3.6., 4면

○ 재외국민의지위에관한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5백만 해외교포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개방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2중국적을 허용하면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해외교포들의 인적, 물적 자원을 국익신장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박정수 민자당 세계화추진 위원장).
- 우리나라는 본국거주 대비 해외교민이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다국가 민족으로 국민의 개념을 광의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동포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개발과 권익보호 등을 위해 교민청의 신설이 검토되어야 함(박범진 민자당 대변인).
- 해외교포에게 2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은 상대국과 의무와 권리의 마찰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2중국적 허용요구의 주된 이유를 국내부동산, 외화반출 등 재산권행사와 체재문제 등의 관련사안에 대한 교포들의 권리가 확보되는 것으로 하여 관련법을 개정해야 함(외무부).

- 이중국적을 전면허용할 수는 없으나 외국국적자의 국내체류 허용 기간을 지난해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한데 이어 요청이 있을 경우 기간을 더 늘리기로 하는 등 재외국민이 불편하게 느끼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외국국적 취득 시 3년이내에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된 범조항을 고쳐 기간을 5년이내로 완화하고 국내재산의 해외 반출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임(재정경제원).

: 경향 95.3.26., 2면; 서울 95.3.26., 1면; 서울 95.3.27., 1면

◎ 內務 · 地方行政

○ 국가공무원법 개정의견

- 「헌법」제43조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은 뒤 「국회법」제29조와 「국가공무원법」 제3조 및 대통령령 등 하위법의 예외규정을 통해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겸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는데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독립이 본질인 대통령제는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요소인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이석연 변호사).

: 한겨레 95.2.19., 18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3호(88면) · 제94-5호(93~94면) · 제95-1호(83면) 참조

○ 독극물관리체계구축관련 입법의견

- 사실 유독물질 모두가 살상용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전면적으로 사용을 규제해 사용자에게 불편을 줄 수도 없는 형편이므로 우선은 사용자 신원확인 규정을 강화하고 업소의 관리실태 점검에 신경을 더 쓰도록 함(김정호 환경부 사무관).

: 한겨레 95.3.26., 16면

○ 소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의견

- 연면적 1천5백㎡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소방서의 동의 없이도

건축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1만m²미만의 건축물에 대해 소방공사의 시공감리를 면제하고 1천5백m²미만에 대해서는 시공신고를 면제하면서, 2급 방화관리자 자격을 소방관서에서 고용원으로 채용돼 1년이상 화재진압 보조업무를 한 소방서 고용원과 군부대에서 소방대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도 주고, 위험 시설물인 지하탱크의 누수현상을 막기 위해 그동안 실시해온 충수압 검사를 폐지하고 대신 한국소방점검공사의 비파괴 검사를 거치도록 함. 소방설비공사업 면허를 5년마다 갱신하지 않으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던 조항을 고쳐 일단 면허를 받은 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면허 갱신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내무부).

: 국민 95.4.15., 17면; 경향 95.4.16., 2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41면) · 제7호(59~60면) 참조

○ 용역경비업법 개정의견

- 은행근무 청원경찰과 용역경비원간에는 임금의 격차가 있는 데, 전자는 「청원경찰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한 것이고 용역경비원의 보수는 용역경비업자와 경비원간의 계약에 의해 체결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용역경비업법」을 개정해야 함.

: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 인위재난관리법(가칭) 제정의견

- 도시시설의 계획단계에서부터 방재개념을 도입하고 재해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위난 발생 때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건설하여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인명구조가 즉시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정비함(동아일보 사설).
- 재난관리시스템은 자연재난은 건설교통부와 내무부가, 화재, 교통사고, 붕괴, 폭발, 방사능사고 등 인위재난은 경찰, 소방 등 소관 부처별로 관리책임과 권한이 분산되어 있고,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사태는 군과 민방위가 구난책임을 맡는 등 크게 3원화 되어 있고, 93년 국무총리훈령 제280호로 정해진 수습 주무부처도 제각각 이어서 긴급 상황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음(조선일보 기획·연재).

- 각종 응급 구조구난업무를 총괄할 응급구조구난본부를 설치·운영하여 내무장관을 본부장, 관계부처 차관이 부분부장이 되도록 하고, 응급구조구난본부는 응급구조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현장지휘체계를 구축하며, 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민방위대를 직접 지휘하고,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대형사고의 현장수습을 맡고, 대형사고시 국방부, 적십자사, 의료기관, 한전 등 유관기관에 인력 및 장비지원을 요청하며, 종합적인 사고수습 및 복구 등은 소관부처에서 맡도록 함(내무부).
 - 긴급재난때 각 기관의 헬기 신속출동을 의무화하고, 재난시 출동헬기의 공동통신주파수 이용, 기관간 협조요청시 선출동, 후보고 체제확립, 각 기관의 보유헬기 지방분산배치 등의 신속 헬기구난체계를 구축함(총리실 관계기관 실무자회의).
- : 동아 95.3.24., 3면; 조선 95.2.27., 37면; 중앙 95.3.18., 2면

○ 지방자치법 개정의견

- 「지방자치법」은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경제권, 자치행정권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고 있어서 법령상의 사무중 지방사무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13%에 불과하며, 이것도 대부분 집행적 성격의 부수적인 사무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것으로 사무의 폭과 권한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등 자치권이 확보가 제대로 되지 못하였으므로 완벽한 지방자치를 하기 위한 법의 완비가 더욱 절실함(김병준 국민대 교수).

〈행정구역개편관련 입법의견〉

- ①지방행정조직체계(계층구조)의 중층화로 행정력의 낭비와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②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과의 괴리현상을 초래하여, ③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조상의 문제, ④기초자치단체로서의 군의 규모가 너무 넓은 편이고, ⑤우리나라 자치단체의 규모가 인구나 면적에서 외국에 비해 큰 점, ⑥인구, 면적, 관할구역, 예산규모 및 재정자립도 등에서 동급 자치단체간의 격차가 심함에 따라서 행정계층구조를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해 행정계층과 자치계층을 일치시킴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지역개발의 합리적 추진을 도모해야 할 것임(행정개혁위원회 『행정개혁에 관한 건의』).

- 자치문제와 관련, 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하는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구가 독자적인 행정권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구자치를 완전히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준자치단체화해서 예산편성하고, 조례제정권은 약화시키고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권한만 갖게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행정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이로서 지방화추진위라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에도 실질적 실효성을 얻을 수 있는 제재장치들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해야 함(조창현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장).
- 행정계층구조를 2계층제로 할 경우 행정구역의 광역화측면에서는 바람직할지 몰라도 시·군의 통합으로 광활해 지는 문제에 있어서는 주민자치를 보장하는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고건 명지대총장).
- 미국의 ACIK(정부간 관계위원회)같이 지방자치단체끼리의 협의회를 만들어 자율적인 평가와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오연천 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
-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주민생활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지역의 선거전 통합 또는 행정경계조정이 필요하며,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므로 선거전 반드시 완료돼야 함. 장기적으로는 국가계획 또는 지역의 산업기반상 동일 행정단위로의 통합도 검토되며, 대상은 안양·군포·의왕, 천안시·군, 여수시·여천시·여천군, 구리·남양주·이리·익산 등임(민자당).
- 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개혁입법당시 「지방자치법」에 도농복합형태의시와 주민투표제도를 신설해 정부가 폭넓게 행정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정부조치로 언제든지 개편이 가능하므로 지난해의 33개 시·군 통폐합 사례에 따라 선거후 정부가 조정을 검토해도 무방함(민주당).

〈파산선고제관련 입법의견〉

-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면서 민선 단체장, 의원들이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각종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정부실이 우려되며 이에 따라 자력으로 회생이 어려운 자치단체에 대해 미국 등에서 시행중인 파산선고제를 도입, 시행할 수 있도록 함(김용태 내무부장관).
- 중앙부처가 재정운영평가를 통해 부실 자치단체에 대해 파산여부를 심의, 내무부장관이 파산선고 결정을 내리면 국가가 자치단체를 직접 경영하거나 파산

관리인으로 하여금 단체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고, 파산심의회는 정부와 국회 대표, 법조인, 학계인사 등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파산선고위원회(가칭)가 맡음. 민선단체장의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지방정무직으로 비서실장, 정책개발보좌관, 공보관 등 보좌진을 둘 수 있도록 하되 광역은 6명, 기초는 3명 이내 범위에서 운용키로 하고, 정원이 많을수록 교부세를 많이 배정하던 현행 인건비지원제도를 개선키 위해 자치단체별로 총정원제(기준정원제)를 도입, 총정원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지원키로 함(내무부).

- 지방자치단체가 방만한 운영 등의 이유로 재정상태가 극히 악화돼 더이상 자치단체 자체의 능력으로 수습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국가가 대신 운영을 맡아 재정이 호전될 때까지 위탁관리하는 파산선고제를 도입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진단을 통해 재정운영이 모범적인 곳에 대해서는 매칭펀드(MATCHING FUND)제도를 도입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해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을 자극, 지원함(내무부).
- 파산선고제 도입은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을 쥐고 있는 중앙정부가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정부를 계속 통제하려는 것임(박지원 민주당대변인).
- 파산선고제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무언가 족쇄를 채우겠다는 반민주적인 발상임(김종필 자민련총재).
- 자치단체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생각은 않고 재정자립도가 부실한 현실을 구실로 파산선고제라는 극약 처방부터 생각하는 것은 지자체 실시애 소극적인 자세임(한겨레신문 사설).
- 파산선고제는 외국에도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제도로서, 자치단체가 세금수입을 잘못 예상한 결과 재정이 회생불능상태에 빠졌을 때 일반기업의 법정관리에 해당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구제하자는 것임(이승윤 민자당 정책위의장).
- 국가가 자치단체의 재정파탄 상태를 방치하면 책임유기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고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해 여야가 원만히 합의해서 법개정을 추진해야 함(이민섭 민자당의원).
- 중앙정부에 파산선고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방행정을 정권에 예속시키려는 음모가 숨어있는 독소조항으로, 각급 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중앙정부가 이를 빌미로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는 단체장을 매장시키기

위한 장치임(민주당).

- 중앙정부의 재정진단권을 빌미로 민선단체장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임 (정균환 민주당의원).
-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에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할 수 있고 지방채 발행에 승인권을 가지고 있지만 민선 단체장이 반발하면 그만이므로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무리하게 빚을 내 방만하게 지방재정을 운용하다 파산지경에 이르는 충분히 예견되는 사태에 대한 일종의 최후의 안전조치임(서울신문 해설).

: 한국 95.2.25., 3면 : 국민 95.2.16., 4면; 조선 95.2.16., 5면; 조선 95.2.17., 6면; 서울 95.2.20., 5면; 세계 93.3.31., 1면; 한국 95.4.1., 3면; 한겨레 95.4.1., 3면; 서울 95.4.1., 5면; 한국 95.3.31., 3면; 서울 95.4.1., 5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2호(43~44면) · 제5호(49면) · 제10호(79~80면) · 제13호(57~58면) · 제94-2호(82~83면) · 제94-6호(85면) 참조

◎ 社會 · 文化 · 教育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개정의견

- 7월부터 근로여성에게 두달간의 유급 출산휴가후 무급으로 10개월내의 육아휴직을 주는 기업에 대해 여성근로자 1명당 월 10만~15만원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고, 전체 근로자의 6% 이상을 만 55세이상 고령자로 채용하는 기업에는 고령근로자가 한달에 15일만 일해도 지원금을 지급하며, 초과 고령근로자 1인당 연간 36만원의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지급함(노동부).

: 조선 95.3.17., 3면

○ 교육개혁관련 입법의견

- 국민학교 산수가 중 · 고교처럼 수학으로 명칭이 바뀌고, 고교 국사는 과목이 없어지는 대신 사회과목에 통합되며, 중학교 교과목인 실업과 가정도 기술 · 산업 및 가정으로 명칭을 개정, 고도산업사회에 대비하고, 현재 학년당 32주 이상으로 돼있는 대학의 의무수업 일수를 30주이상으로 축소조정하고 1백 40학점이상인 졸업학점도 대학학칙에 맡기는 한편 학기수도 종래 2학기에서

2~5학기의 다학기제로 대학이 자율선택할 수 있게 함(교육부).

- 외국의 주요국가들의 수업일수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현실과, 봄·가을 축제와 잦은 공휴일로 실질수업일수가 연 28주도 되지 않는 현실에서, 현행 학년당 32주 이상에서 30주 이상으로 축소하는 「교육법」개정안은 바로잡아져야 함(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교수).
- 농어촌 학생의 기준을 학부모의 직업개념이 아니라 지역개념으로 분류한 것은 악용될 경우 대도시에 가까운 읍·면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거나 위장전입을 초래할 수 있음(경향신문 사설).
- 읍·면지역학교 가운데 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 졸업자에 대해서는 일반고와의 교육여건 차이, 특기자 특례입학, 비교내신제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특례입학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교육부).

: 경향 95.2.17., 22면; 동아 95.2.23., 5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2호(84면)·제94-5호(96~98면)·제95-1호(85면) 참조

○ 근로자파견법(가칭) 제정의견

- 노동력 전문공급업체를 통해 산업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근로자파견제도를 도입하되 현행 「직업안정법시행령」에 노동조합만 근로자 공급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의 인력·비용 절감 노력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중간착취가 빚어지지 않도록 근로자파견사업자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는 등 근로자 고용안정을 해치지 않고 권익을 보호하며, 일용직 뿐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전문인력 파견제도도 적극 허용할 계획임. 이와 함께 기업이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라 노동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시간제 근무제도를 대폭 정비하는 한편 노동부가 시간제 근무에 대한 알선 중개기능을 맡아 이를 활성화시키기로 함(통상산업부·노동부 등 관계부처 국장회의).
- 중간착취의 소지를 비롯하여 근로조건의 차등화 심화, 고용안정 저해, 합리적인 노사관계 제약 등 근로자 공급사업의 합법화가 파견근로에 따른 폐단을 확대시킬 가능성마저 높은 실정에서 파견근로의 제도화는 노조활동을 제약하고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정부가 마련한 법안에는 ①근로자 파견 적용대상의 업무범위 설정이 고정적이지 않고, ②파견근로에 대한 제한

기간이 엄격하지 못하며, ③중간착취의 소지를 남겨 놓는 등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규정도 매우 허술한 문제점이 있음(한겨레신문 사설).

: 한국 95.3.16., 3면; 한겨레 95.3.16., 9면; 한겨레 95.3.18., 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75~76면) · 제8호(78면) · 제10호(85면) · 제11호(81~83면) · 제12호(78~79면) 참조

○ 민간복지관련 입법의견

- 자원봉사자들에게 경력인정 · 공직임용 · 취업 · 진학 등에서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원봉사법(가칭)」에서 선거관리 자원봉사자 역시 사회적 혜택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나 특정후보 지원은 빼야 함(김성수 한국 YWCA 정책국장).

- 여 · 야 법안이 모든 국민의 평생 자원봉사 활동을 관리하는 구조로 이는 세계에 유래가 없는 법으로 포괄적인 혜택제공을 위해서는 선언법 형식이 바람직함. 따라서 「자원봉사법(가칭)」은 선언법(모법)으로, 동법의 구체적 적용, 예를 들어 선거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하는 것과 같이 관련법 규정을 넣는 형식이 좋음(이창호 중앙일보 전문위원).

- 「민간운동지원법(가칭)」에 따른 재정지원은 하되, 새마을운동 · 바르게살기협의회 등을 지원하는 특별법은 여당법안대로 2년 유예조치를 줄 것이 아니라 즉시 폐지함(강문규 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유종성 경실련 정책실장).

- 민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정기구는 적을수록 좋으므로 '민간단체진흥위원회'와 '공동모금회' 2개만 설립할 것을 제안함(조홍식 서울대학교수).

- 공동모금이 민간자율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정부승인규정 들은 모두 신고사항으로 하되, 공동모금회에 대한 정부보조가 자칫 동 기구를 관변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미 · 일과 같이 정부보조를 하지 말아야 함(성민선 가톨릭대학교수).

: 중앙 95.2.12., 14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2호(89면) · 제94-5호(100면) 참조

○ 사회보장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영세민, 노약자, 장애인 등 3개 취약층에 대해 한해 2백10일까지만 인정하고 있는 의료보험의 적용기간을 무한정 허용하고, 영세민과 무주택근로자의 주거

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1천50억원과 주택은행 및 국민은행의 민영전세자금 6천억원을 지원해 주며, 복지시설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되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줄 방침임(당정).

: 서울 95.3.27.,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0호(80면) · 제94-3호(96면) · 제94-5호(101면) 참조

○ 서울대학교법(가칭) 제정의견

- 국립대가 학문연구와 인재양성에서 특수한 역할을 수행하여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 스스로가 예산집행 · 운용에 자율성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서울대의 특수한 지위를 인정해 주는 「서울대학교법(가칭)제정을 추진하기로 함」(이수성 서울대총장).

: 경향 95.3.3., 22면

○ 영화진흥법(가칭) 제정의견

- 자율적인 영화산업발전에는 재원확보가 시급하므로 ▲극장입장료에 포함된 문예진흥기금을 전액 영화진흥금고재원으로 출연하거나 ▲영화 · 비디오 판매시 일정비율의 부가금을 부과해 영화진흥금고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다목적 극장개념을 정립해 영화전용관을 도입하고, 한국영화의 대외경쟁력확보와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현행 외국제작자와의 합작영화제작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며, 한국영화 의무상영제도를 신축운영해 성수기에 한국영화를 상영하거나 청소년영화 등 가족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혜택을 주도록 함(민병록 동국대 연극영화과 교수).

- 한국영화 의무상영 · 제작제와 독립프로덕션의 연간 제작편수 등에서 외형상의 개선노력이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규제의 성격을 지닌 부분에 대한 과감한 시정이 없는 한 새 「영화진흥법(가칭)」은 과거와 같은 부작용을 노출할 것임(정광웅 영화제작협동조합이사장).

- 새 법은 교육 등 민간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을 보완, 지원하되 최소한의 간섭만 해야 함(조희문 경인일보 논설위원).

- 현재의 「영화법」은 극장에 대한 개념이 명확치 않아 혼선을 빚고 있는데, 기존의 극장을 방치한 채 영화전용관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은 현실을 무시한 시도이며, 영화의 유통과 배급 등 영화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극장의 발전 없이는 한국영화육성을 기대할 수 없음(강대서 전국극장연합회 회장).
- 영상분야의 대변화 특히 전자영상분야의 우위가 확연해지는 추세에서 방송국도 장편영화를 의무제작토록 유도하는 한편 영화진흥공사나 영상자료원 등 영화관련 기구의 기능을 대폭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강한섭 서울예전 영화과 교수).
: 서울 95.2.15., 10면
-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3호(53~54면) · 제94-1호(60면) 참조

○ 외국인근로자고용및관리에관한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불법취업 사례를 막을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의 도입이 필요함(민자당).
: 서울 95.4.17., 3면
-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5-1호(87~88면) 참조

○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음반·비디오 산업의 육성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의 적극적 지원시책 수립 ▲각종 규제의 축소·폐지 ▲첨단전자영상물의 개념을 포함한 비디오물 개념의 재정립 등을 주요 골자로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을 대폭 정비하고, 현재의 외국 음반과 비디오물의 수입허가제를 추천제로 완화하고 복제허가제는 폐지하며 반입허가제는 공연윤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검토중임(문화체육부).
- 법 개정의 취지가 창작을 최대한 지원하는데 있는 만큼 음반 사전심의제를 사후심의제로 바꿔 표절방지 등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음반과 비디오는 기획·제작·판매의 성격이 크게 다르므로 「음반법(가칭)」과 「비디오법(가칭)」으로 구분하고, 수준 높은 향수능력을 갖춘 수요층의 확보를 위해 청소년들의 교과과정에 대중문화를 포함시키도록 함(정갑영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책임연구원).

- 레코드나 테이프·CD 등으로 제작된 작품에 대해 사후심의에서 수정토록 할 경우 막대한 제작비등 국가적인 낭비가 따르므로 사전심의제를 존속하도록 함 (박경식 공연윤리위원회 심의위원).
- 현 제작업 등록의 시설기준은 시대에 맞지 않는 형식적 요건이므로 시대적 조류에 맞고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함(우남규 한양비디오프로덕션 대표).
- 과거 비정상적인 정치상황 아래의 각종 검열제나 사전심의제는 폐지하고 음반 부문을 비디오부문과 분리하는 독립 입법을 해야 함(정태춘 가수).
- ▲음성적인 시장참여를 하고 있는 대기업들을 양성화하는 한편, ▲수입업자 등록제도를 신설, 외국메이저의 국내직배사도 이에 포함시켜 제도권안에 들 것과는 함께 ▲수입 비디오물을 둘러싼 대기업간의 판권료 과다경쟁을 막기 위해 업자들로 구성된 민간 자율기구를 구성해야 함(진석주 한국영상음반판매대여업협회 회장).
- 「공연법」 등의 제재조치가 지나치게 강경해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이 제한 받고 영업정지 등의 조치이후 행정력부족으로 지도·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그동안 무단으로 객석을 증설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른 공연물을 공연하는 등의 관계법 위반 공연장에 대한 제재조치가 허가취소나 최고 3개월 영업정지에서 과징금 부과(최고 1천만원)로도 끝낼 수 있도록 완화하고, 음반물 비디오 및 음반을 제작하거나 판매·배포·대여한 업소에 대한 제재조치도 허가취소 및 최고 6개월 영업정지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의 과징금 부과로 같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문화체육부·공보처·서울시).
- 국내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은 인쇄매체만을 잡지로 인정하고 있어 컴퓨터 프로그램이 담긴 디스켓이나 CD롬 타이틀을 규제와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을 적용, 공연윤리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은 부당하며, 공륜 심의대상은 명백하게 극적 내용이 담긴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함(중앙일보 뉴스).
- 종이책만을 책으로 알고 CD 형태면 무조건 음반 및 비디오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이 문제로 전자출판물에 관해 매체의 형태보다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이기성 전자출판연구회장·계원예술대 전자출판과 교수).

: 국민 95.2.22., 19면; 중앙 95.3.31., 2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6호(93면) 참조

◎ 産業 · 經濟

○ 公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의견

- 구로공단이나 남동공단 등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단과 공장지역내에서는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첨단제품 생산공장에 한해 신·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도권외 지역에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비업무용으로 판정됐던 공장인접부지중 공장건축면적의 20%까지를 업무용으로 인정하기로 하며, 한강 수질보전을 위해 설정한 자연보전권역내에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업종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함(통상산업부).
- 통산부 안은 수도권의 인구·산업 집중을 막기 위한 「수도권정비법」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혜택이 대기업에 돌아가게 됨(중앙일보 해설).

: 한국 95.4.19., 9면; 중앙 95.4.19., 27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50면) · 제3호(57~58면) · 제94-2호(94~95면) · 제94-3호(100면) 참조

○ 國유재산법 개정의견

- 전국적으로 2천8백72km³(약 9억평)에 이르는 국유잡종지에 대한 관리권이 늦어도 오는 6월초까지 조달청으로 일원화되고, 그동안 조달청이 일괄구매해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주던 사무용품 등의 모든 비품과 건당 5천만원 이하의 시설재구매, 사전자격심사제(PQ)를 거쳐 입찰에 부치는 1백억원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공사입찰을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게 됨(재정경제원·조달청).

: 세계일보 95.3.8., 6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0호(95~96면) 참조

○ 금융감독체계관련 입법의견

-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이 필요할 경우엔 언제든지 일선 금융기관들에 대해 발동할 수 있었던 포괄명령권이 없어져 앞으로는 범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만 금융감독원이 일선 금융기관들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할 수 있게 됨. 은행들은 ▲올해부터 유상증자에 대한 당국의 인가제가 폐지된 데 이어 무상증자에 대한 인가제도 없어지고 ▲주식담보대출금지제도(특정 기업의 지분을 20%를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잡는 것)도 폐지돼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대출할 수 있게 되고, 증권관리위원회가 행사해온 각종 증권회사에 대한 규제(대주주 변경동의·증자 명령·상호변경인가 등)와 증권거래소·증권예탁원·증권금융에 대한 규제(업무규정승인제 등)도 폐지되며, 보험회사들은 특히 그동안 인가제이나 사실상 금지돼왔던 타업무겸업제한이 풀려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부수업무(생보사가 건강진단센터를 차리거나 손보사가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것 등)를 할 수 있게 됨(재정경제원).
- 일선 영업점에 대한 현행 장부검사에서 벗어나 본사의 자산운용과 대출정책·예금자보호 장치·내부통제 장치 등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집중 감시, 문제점이 드러나는 기관을 특별 검사하는 조기경보제를 도입하여 부실을 사전 예방하고, 이를 위해 전국 각 금융기관의 본점과 지점들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과 직결되는 전산망을 구축, 대차대조표 등 일일 보고서를 전송하도록 하고 허위 보고가 드러날 경우 무겁게 징계할 방침임(재정경제원).
: 중앙 95.2.22., 2면; 서울 95.3.15., 16면

○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의견

- 전체 98개의 각종 기금중 존치실익이 없는 기금 등 26개의 기금을 내년 1월부터 폐지하고, 올해 안에 새로운 기금의 추가 설치도 원칙적으로 금지함.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도 △달성목표와 사업성과를 연계평가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 △사업비 지원방식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하며 △예산지원과 중복을 피하고 △WTO출범에 따라 산업이나 기업별로 특정 지원하지 않는 등의 원칙을 세워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함(재정경제원).
: 세계 95.4.5., 7면
-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2호(85~86면) 참조

○ 기업세계화지원법(가칭) 제정의견

-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과 국내시장의 전면적인 개방 등으로 국내기업들의 국제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데도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기업의 현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중시, 예외적인 이중국적 취득을 인정해 기업들이 외국국적을 가진 해외동포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법률전문가나 박사학위소지자 등 우수한 해외동포를 활용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과 현지화를 지원하고 국내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에 대응함(재정경제원·법무부·통상산업부).
 - 기업의 세계화를 위해 중소기업 해외진출기금을 설치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해외에 인력을 파견하기 위해 지출하는 교육훈련비에 대해 조세감면혜택을 주고 외국의 전문인력을 원활히 고용할 수 있도록 국적제도를 완화하여 이중국적 취득을 허용하되 기업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의 해결, 관계법령상 기업의 세계화 추진에 장애가 되는 요인제거에 초점을 두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할 것이나 「해외건설촉진법」처럼 개별기업의 활동을 간섭하는 조항을 배제해야 함(최경선 대한상공회의소 이사).
 - ①기술전수를 위해 외국인투자유치에 적극 나서며, ②국내에 조성중인 2개 외국인 전용공단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는 이익발생연도부터 5년간 조세를 감면하고, ③상업차관을 허용하며 수입다변화에서도 예외를 인정하고, ④기존 구조조정정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조직정책으로 전환하며, ⑤기술개발지원에 중점을 두어 국내기업 보호위주의 정책에서 경쟁촉진정책으로 전환하고, 이런 차원에서 공기업민영화도 추진함(박운서 통상산업부차관, 『50대 그룹 임금대책간담회(경총주최)』).
- : 세계 95.2.16., 9면; 한국 95.2.23., 1면; 중앙 95.4.6., 2면

○ 대금업법(가칭) 제정의견

- 사금융업자에게 등록만으로 간편하게 대금업을 허용하되, 대출자본은 대금업자의 자기자금과 개인차입금으로 제한하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차입은 불허하며, 대금업자는 예금을 받지 못하지만 금전의 대출과 어음증개 등의 영업을 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인 연 25%보다 높은 금리로 별도의 금리상한을 두기로 함(금융연구원).

- 수조원의 지하자금을 방치한 채 금융실명제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대금업제도를 도입해 지하자금이 양성화되어야 금융실명제가 완성되는 것임(재경원 당국자).
- 대금업제도의 도입은 금융실명제를 보완하고 불완전한 서민금융시장을 정비하는 제도적인 개혁임(금융학자).
- 현재 지하 대금업자들의 금융서비스는 신용·담보대출 뿐아니라 가계수표할인, 당좌수표할인, 카드할인, 자동차담보대출, 전세담보대출, 일수·월변, 어음업무 등을 취급하고, 금융 적색거래자에게 가계수표 및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등 신용세탁을 하거나 CD, 채권, 상품권 매입을 통한 돈세탁도 하고 있어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므로 소액·서민 금융위주로 대금업을 양성화하면 터무니없는 고금리로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를 막고, 금융질서의 건전성과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이에 수많은 대금업자를 효과적으로 감독하되 업계의 자율통제와 정부감독 등 2중의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고, 「대금업법(가칭)」의 금리에 대해서는 일본의 경우처럼 도입 초기에 금리제한을 두지 않다가 단계적으로 한도를 낮추는 방안과 40~50%선에서 제한하는 방안 등 2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재정경제원).

: 조선 95.2.19., 7면; 국민 95.3.18., 6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6호(96면) 참조

○ 도·소매업진흥법시행령 개정의견

- ①대규모 소매점, 도매센터 등을 증설할 경우 1백51평 이상에 한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이하는 신고로 할 수 있도록 하며, ②시장관리자 지정요건을 완화해 입점 상인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시장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석유판매업 허가를 받은 후의 사업개시 시기를 현재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토록 하며, ③소매상이 연쇄점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중 건축물관리대장 및 신원증명서는 제외하도록 하고 재개발사업구역내에서 공공청사를 건립하는 경우 비용부담을 사업승인 조건으로 하지 않도록 함. 특히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심사기준을 개선,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서류를 연간 1회 제출로 대폭 줄였으며 장애인 고용계획서 제출 기한을 3월말로 조정하고, ④특정폐기물 신고업무를 지방환경청에

서 시·도로 위임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대행자의 정수제를 폐지, 검사대행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함(기업활동 규제심의위원회).

- ①관청으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지 않아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장 등 상업시설의 면적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장과 대형점의 경우는 현행 1천m² 미만에서 2천m² 미만으로, 대규모 소매점(백화점, 쇼핑센터)은 3천m² 미만에서 4천m² 미만으로 하고, ②기존 상업시설들도 5백m²까지는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매장을 넓힐 수 있게 하고, 대규모소매점과 도매센터가 매장면적을 3백m² 이상 증설할 때 받아야 했던 도소매업진흥심의제도 폐지하고, ③지금까지 대규모소매점만이 쓸 수 있었던 쇼핑, 쇼핑타운 등의 명칭도 누구나 쓸 수 있게 되며 매장면적 5백m² 이하의 소규모 소매업자가 백화점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며, ④판매사 시험응시자격 기준을 폐지하고, 시험에 합격한 후 대한상공회의소에 등록한 사람에 한해 판매사자격을 인정하던 등록제도 폐지토록 하고, ⑤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규모 소매점 등이 운행하고 있는 셔틀버스의 대수 및 운행구역을 제한, 일정 범위안에서만 허용키로 함(통상산업부).

: 국민 95.2.16., 6면; 세계 95.3.25., 7면

○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의견

- 현행 시행령은 정가도서제 적용대상으로 「저작권법」에 따른 모든 저작물을 포괄적으로 지정했을 뿐 별도로 제한규정을 두지 않는데,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은 재판가격유지가 필요한 도서 및 기타 저작물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정가제 대상에서 풀어줄 도서로 ▲전집류·고전소설·참고서·사전류 ▲출간된지 6개월 또는 1년이 지난 책들을 지정하였음(공정거래위원회).
- ①일부를 먼저 풀어주면 결국 도서정가제 자체가 무너지게 되며, ②도서정가제가 와해되면 가뜩이나 영세한 출판사·서점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며 법령개정 시점이 출판유통부문의 시장개방 일정과 맞물려 더욱 악영향을 미칠 것임. 도서·출판 부문의 선진국들인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이 모두 문화상품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도서정가제를 굳게 지키는 마당에 우리만 정가제를 약화시키는 것은 산업경쟁력 측면에서도 잘못된 정책임(대한출판문화협회·전국서점조합연합회·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 서울 95.2.23., 22면

○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의견

- 공장용지, 기업부설 연구소용지, 주택업체의 주택 신축용지, 아파트형 공장용지 등을 산 뒤 1~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토지로 간주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3년기한으로 연장하고 도로, 항만, 공항, 유통단지 등 민자유치사업용 부지도 추가하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사용제한이 풀릴 때까지 비업무용 판정을 유예받도록 하고,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89년12월 이전의 무허가 건축물도 공장으로 등록돼 있거나 재산세 과세대상에 올라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로 인정하여 기준 면적을 계산할 때 공장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함(재정경제원).
- 기업들이 기부금을 내면 자기자본의 2%와 소득금액의 7%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부금 손금인정단체를 해외동포모국방문후원회, 한국범죄방지재단,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정부로부터 인·허가받은 청소년단체, 에너지관리공단, 발명진흥기금, 환경운동연합, 한국에이즈연맹 및 대한에이즈협회, 근로복지진흥기금,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한국신장협회 등으로 확대함(재정경제원).

: 조선 95.3.9., 13면; 경향 95.3.18., 9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1호(66면) 참조

○ 보험업법 개정의견

- 사망이나 뺑소니 사고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10대 중대 범규 위반 사고자 등에 대하여 피해액 전부를 보상해 주는 무한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높은 금액의 유한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을 현행 최고 60%에서 점차 낮춰가며, 교통사고 처리 비용의 일정 금액을 가입자가 부담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자기부담제도를 보완하기로 함. 보험사들의 의료비 지출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주기 위해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의료수가 고시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함(재정경제원).

: 중앙 95.4.13., 25면

○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의견

- 부동산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경우에 양도의 시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바, 현행의 「소득세법」을 보면 양도의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서의 잔금지급일을 양도의 시기로 보되, 계약서의 잔금 지급일이 동기접수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기접수일을 양도의 시기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6월로 개정되었으므로 양도의 시기가 실제보다 늦어짐으로 인한 막심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행법상 1월을 초과하는 경우를 6월을 초과하는 경우로 개정하여야 하며, 만약 이것이 불가피하다면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월로 환원해야 함.
- 1994년도 말에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문개정되었으나, 「소득세법」제 99조(기준시가의 산정)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12994호, 1990. 5. 1. 개정) 부칙 제3항에 규정된, 개별공시지가를 환산하는 산식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동법의 시행일(1996. 1. 1.)이전에 보완해야 함.

: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3호(63면) · 제6호(84면) · 제8호(94면) · 제12호(87~88면) · 제94-2호(98면) 참조

○ 소비자보호법 개정의견

- 민간 소비자단체에 각종 조사결과에 대한 포괄적인 공표권과 함께 금융분쟁 등의 조정을 위한 합의권고권이 주어지고 정부가 사업자에게 소비자를 위해 물품을 수거하여 파기하도록 명령하거나 판매 또는 제공을 금지하고 관련시설의 개수명령을 내리는 등 소비자 안전 행정이 강화됨. 소비자단체도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이나 검사 및 거래조건, 거래방법을 조사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으나 공표되는 내용 가운데 물품의 품질이나 성능 및 성분 등에 관한 시험·검사로, 전문적인 설비를 필요로 할 때는 소비자보호원이나 공업진흥청·대학교 등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관의 검증을 거쳐야 함(재정경제원).

: 서울 95.3.13., 17면

-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3호(60~61면) · 제4호(32~33면) · 제94-1호(68면)

· 제94-5호(110면) 참조

○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개정안

-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따라 농어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농어민에 대한 신용보증요율은 0.2~0.3%로 크게 인하하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이 부실화된 경우 1천만원 이하 소액보증에 대해서는 농협의 판단에 따라 대손으로 처리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함(재정경제원).

: 경향 95.3.19., 9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2호(99면) 참조

○ 예금자보호제도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금융자유화와 시장개방시대에 경쟁이 심해지면 은행 등 금융기관이 도산하는 사태의 방지책으로 은행예수금중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해 두었다가 은행이 도산할 경우 고객에게 예금의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인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오는 98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하고, 기금을 관리할 예금보험공사를 설립, 기금에 일정액을 출연하고 보험공사가 기능을 원활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은행의 기금적립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할 방침임. 보험요율은 예수금의 0.01% 수준으로 하고 은행사고때 기금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예금한도는 1인당 2천만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임(재정경제원).
- 은행이 파산할 경우 계좌당 보험보장한도는 저축자의 부의 수준, 위험회피정도, 대체적 투자수단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1천5백만~2천만원이 적당하고, 예금보험에는 모든 은행이 강제가입토록 하고, 보험대상예금에는 요구불·저축성예금, 신탁계정, 비은행금융기관의 유사상품을 포함하되 투자성격이 강한 양도성예금증서(CD)나 금융채는 보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금보험기구는 일정수준의 감독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기구가 부실화 은행의 처리와 관련된 의사결정권한을 갖도록 하고, 은행이 부실화될 경우 주주에게 재산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주주들의 의사가 은행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함. 보험기금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각 은행의 보험료로 조달하고 파산한 은행의 손실액이 기금액수를 초과하

면 정부가 보전하도록 함(한국금융연구원 『은행의 예금보험제도 도입방안』).
: 동아 95.2.18., 4면; 조선 95.3.28., 8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4호(89면) 참조

○ 외국환관리법 개정의견

- 외국환은행 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상지급 절차를 신고제로 간소화하고, 해외건설 등 용역거래 허가는 각 관련법에 맡기기로 하며,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재산형 위주로 전환하고, 무인가 외국환 업무에 대한 제재를 현행 10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으로, 무허가 환전상은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서 1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으로 각각 개정할 방침임.

또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증권 취득 ▲거주자의 해외증권 발행과 국내 외화증권 발행 ▲거주자의 국내 증권 발행 ▲비거주자의 해외원화증권 발행 ▲부동산거래 ▲국내외 본·지점간 자금거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등은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기로 하며, 예금, 신탁, 금전대차, 채무보증, 채권 등 매매거래와 금융선물거래 등은 허가대상으로 정하고, 재경원 장관이 지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만 허가 또는 신고가 면제되는 것으로 함. 금융기관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외환거래를 전문적으로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외국환중개회사(브로커)도 등장하게 되며, 외환자유화의 보완조치로 세계잉여금을 외국환평형기금 재원으로 쓸 수 있게 했으며 불법 외화유출을 막기 위해 외국환은행이 외환의 지급·영수 등 특정거래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토록 함(재정경제원).

: 조선, 95.3.2, 9면; 한국 95.3.2., 10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1호(69면) 참조

○ 유통단지개발촉진법(가칭) 제정의견

- 토지형질변경이나 건축물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땅이 나중에 유통단지 부지에 포함돼 단지 조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지자체장이 사업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는 행위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문민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편의주의로 이미 인·허가를 받아 놓은 사업을 아예 못하도록 취소하면 기득권 보호에 문제가 있을 뿐더러 정부 행정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법제처).

- 「유통단지개발촉진법(가칭)」을 만드는 취지가 유통단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조성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인데 행위 제한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국민경제 전체의 손해이므로 유통단지가 들어서 조만간 수용될 땅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고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이 합리적임(건설교통부).

: 중앙 95.3.13., 25면

- 숙박·운동시설 등 종합적인 지원시설의 유통단지내 폭 넓은 수용(현실 여건상 여의치 않다면 세계무역센터 등과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1급이상 관광호텔 건축이 가능토록 수정이 요망됨)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민자유치를 위하여 유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세제지원(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이 최소한 공업단지 수준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방세법」상의 조치가 시급함.

: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3호(73면) · 제94-1호(69~70면) · 제94-2호(99면) · 제94-5호(111~112면) 참조

○ 의장법 개정의견

- 의장을 출원한 뒤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의장권을 인정하지 않아 출원중인 의장을 다른 사람이 모방해도 규제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의장출원공개제를 도입하여 타인의 의장을 무단으로 모방하면 출원자가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특허청).

: 경향 95.3.4., 8면

○ 토지·금융규제완화관련 입법의견

- 공장설립에 필요한 토지공급확대와 땅값안정을 위해 토지이용규제의 과감한 철폐와 토지용도지역 조정을 추진하며, 은행, 보험, 증권 등 각종 금융기관에 대한 중간감독기관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많아 부정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규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큰 사전규제를 가능한 한 폐지하고 사후규제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함. 법령의 제정, 개정시 신설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사전 심사를 보다 철저히 하고 규제

완화가 행정창구에서 제대로 반영되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점검하여 실효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세계화추진위원회).

: 동아 95.4.17., 1면

○ 폐광지역개발촉진법(가칭) 제정의견

-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에 따른 석탄감산에 반발하여 지역주민들이 대대적인 생존권보장 쟁기대회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고한·사북, 태백, 도계 등 탄광 지역을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해 「폐광지역개발촉진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하여 △탄광진흥을 위한 집중 투자 강구 △삼척·동원탄좌 연 생산량을 80만t으로 줄이고 감산지원금 1백60억원을 고한·사북지역 공장유치 등의 사업비로 지원할 것 △감산시 인원감축이 없도록 할 것 등의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임(박재운 통상산업부장관).

: 한겨레 95.3.3., 2면

○ 한국은행법 개정의견

- ①재경원장관의 금통위의장 겸직 폐지로 금통위 회의소집권 의안제외권 등을 없애는 등 금통위에 대한 정부의 관여를 축소하고 한국은행에 대한 정관변경 승인권과 업무감사권 등을 없애 정부의 견제를 줄이도록 하며, ②금통위의장이 한은총재를 겸직토록 해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효율적으로 연계시키며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경제원장관의 금통위 회의소집권과 의안제외권은 폐지하기로 하고, 한은총재의 임기는 현재의 4년에서 금통위원의 임기인 3년으로 줄이고, ③금통위원의 정원은 현행대로 9명으로 하되 재경원차관을 당연직으로하고 재경원, 농림수산부,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장관이 각 1인씩, 금융기관에서 3인씩을 추천토록 하고, ④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통위의 위상을 강화하는 대신 은행·증권·보험감독원으로 분리돼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조직을 금융감독원으로 통합, 일원화하기로 함(홍재형 재정경제원 장관).
- 금융감독원 신설에 따라 증권감독원의 상위기구였던 증권관리위원회 등이 없어지고, 은행의 최저자본금 증액명령권이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에서 금융

감독원장에게로 옮겨지고 재정경제원 장관의 승인사항이던 보험대리점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과 보험보증기금 운용권도 금융감독원으로 이양되거나 부분적으로 자율화되며, 증권관리위원회의 상장승인 제도와 재정경제원의 상장명령 또는 상장폐지 명령권을 없애 증권거래소가 자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함(재정경제원).

- 금융위원 구성에 있어 전체 9인중 정부추천위원이 6인으로 돼 있지만 이는 정부인사를 추천하려는 것이 아니고 통화신용정책이 경제정책과 연계(Police Mix)하여 운영돼야 하는 공공성을 고려해서 경제 각부문의 의견과 이익이 조화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고자 하는 것이 근본 취지임(김영섭 재경원금융실장).
- 금통위를 구성하는 9인의 위원중 당연직인 재경원 차관 및 정부추천위원 5인은 재경원의 직접적인 영향력 하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금융기관 추천 3인도 재경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는 어렵게 되어 있고, 금통위의 정책결정시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과 관련되는 사안을 재경원과 사전협의토록 명시한 것은 재경원이 금통위의 정책결정에 간여할 수 있는 또 다른 제도적 장치를 두게 되는 것임(김영대 한국은행이사).
- 통화신용정책을 관장하는 한국은행에서 은행감독기능을 떼어내는 것은 중앙은행이 은행감독기능을 맡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임(최두환·박은태 민주당의원).
- 그동안 관치금융의 시너로 불리던 금통위의 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위 의장을 겸직케하되 한은총재는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케 해야함(박명환 민자당의원).
- 정부추천 금통위원의 숫자를 축소하는 대신 민간추천 위원수를 늘리고 금통위 의장의 제청권자도 재경원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바뀌야 하며 한국은행의 예산 승인권은 현행대로 금통위가 관장하게 해야 함(임춘원 신민당의원, 최돈웅 민자당의원).
- ①은감원이 한은에서 떨어져 나갈 경우 통화신용 정책과 은행감독의 효율성이 다같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업무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른 은행·증권·보험 감독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데 반대하며, 지금과 같은 분업화·전문화를 유지해야 하고, ②한은을 금통위의 하부조직으로 만들고 금통위 의장이 한은총재

- 를 겸임하도록 하는 것은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한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가장 위험한 조항으로 미국을 제외한 세계 모든 국가가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기구를 우리나라처럼 중앙은행의 내부조직으로 두고 있으며 금통위가 한은의 내부기관인 이상 한은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맡는 것은 당연한 조직순리이며, ③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의무를 명문화하는 것은 한은의 자율적 정책수립을 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음(김명호 한국은행총재).
- 금융기관의 감독 업무는 행정권에 속하는 것으로 은행의 설립에 대한 인가권한이 정부에 있으므로 각 은행들이 인가 당시의 기준에 맞게 영업을 하는지의 여부를 감독할 권한도 당연히 정부에 있음(재정경제원).
 - 현재의 통화관리 방식이나 금융 구조에 크게 손을 대지 않은 채 몇몇 기구의 신설·폐지 또는 조정 등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다분히 피상적인 개편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김병주 서강대 교수).
 -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관련 입법기관, 신설될 금융감독원은 사법기관, 한은은 행정기관의 역할을 나눠 맡는 삼권분립의 체제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이해하되, 은행감독원을 잃게 되는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을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일부 업무 중복이 있다 하더라도 은행권에 대한 정책수행과 관련해 최소한의 서류 제출 요구권이나 업무검사권을 보장해줘야 함. 한은은 차제에 통화총량관리에 의존해 온 기존 통화신용정책의 근간을 시장기능을 살려 금리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해 나아가야 함(정운찬 서울대교수).
 -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장이 한국은행 총재를 맡도록 해 통화신용정책의 자율성·독립성을 강화한 것은 바람직함. 은행·보험·증권감독원을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하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나 금통위가 전혀 감독기능을 갖지 못할 경우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을지 우려됨(손완식 중앙투금상무).
 - 은행감독권이 없는 한은독립은 허구에 불과하며 은행·증권·보험 등 이질적이며 상치될 수도 있는 금융업무를 재경원이 단일직으로 수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임(김원길·박은태·최두환·제정구 민주당의원).
- : 경향 95.2.21., 1면; 세계 95.2.21., 1면; 한겨레 95.2.22., 9면; 세계 95.2.24., 5면; 동아 95.3.17., 4면; 조선 95.3.18., 8면; 서울 95.3.28., 16면;

중앙 95.2.21., 29면; 조선 95.3.18., 8면; 세계 95.3.17., 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101면) · 제94-5호(117면) · 제94-6호(102면) · 제95-1호(93면) 참조

◎ 農林 · 水産

○ 농 · 수 · 축 · 임업협동조합법시행령 개정안

- 농민들이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 및 출하하고 기술 및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경쟁력을 키우도록 농협과는 별도의 법인체인 전문조합연합회를 만들 수 있게 함. 연합회를 만들 수 있는 업종은 채소와 과수 및 화훼 등 3개 분야이며, 품목은 고추 · 마늘 · 양파 · 고랭지 채소 · 사과 · 배 · 복숭아 · 포도 · 감 · 감귤 · 참다래 · 매실 · 인삼 · 버섯 등 14개업(농림수산부).
 - 농 · 수 · 축 · 임협 각 단위조합들의 경우 여유자금을 모두 의무적으로 중앙회에만 예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여유자금중 일부를 은행 신탁과 장기신용은행, 산업은행에 예치하거나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회사채나 기업어음, 수익증권매입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전문농업협동조합 설립인가기준의 경우 현재는 설립동의자 3백명이상, 경제사업규모 15억원이상, 출자금 5천만원이상, 상근직원 7명이상 등의 4가지 기준을 두고 있으나 앞으로는 설립동의자 3백명 이상에 출자금 1억원이상이면 설립인가가 가능토록 완화하며, 화훼조합은 설립동의자가 2백명이상이면 조합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함(농림수산부).
- : 서울 95.3.13., 17면; 동아 95.3.18., 13면; 세계 95.3.18., 7면

○ 산림법 개정의견

- 조림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산 주인들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대집행명령 및 위탁관리제도를 개선 · 보완해 이를 활용하는 산주들에게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중앙일보 기획 · 연재).
 - 산불로 인한 산림훼손이 크게 늘고 있는 것과 관련, 현재의 「형법」에는 일반실화범에 대한 처벌조항만 있을 뿐 산불실화범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산불실화범을 일반실화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함(산림청).
- : 중앙 95.4.5., 26면

◎ 建設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의견

- 관련법령에 의거 한국기술사회에서 화약류 안전관리 업무를 주관해 왔으나 그간 화약류발파공사 등의 고도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하여는 어려움이 많았던 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개정안에 화약류관리(발파)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게 하여 전문기술인력에 의한 부분 책임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함.

: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2호(94면) 참조

○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의견

- 도시인근지역에서는 대부분 「도시계획법」이 아닌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만 받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제약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한강변을 중심으로 주변경관이나 자연환경에 어울리지 않게 무차별적으로 건축물이 신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만 받고 있는 지역일지라도 관할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연건축면적이 1백㎡미만의 주택은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관련 유사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위원회의 임의규제를 억제하는 등 건축심의규제제도도 규제완화 기조에 맞춰 정비하기로 하고, 현재 32개용도, 98개 소분류로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는 용도 분류 등을 대폭정비해 단순화하기로 함(건설교통부).

: 세계 95.3.22., 7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105~106면) 참조

○ 건축사법시행령 개정의견

- 현재 1, 2차로 나뉘어져 모두 6개 과목으로 돼 있는 건축사시험을 예비시험과 자격시험으로 구분해 예비시험은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계획으로, 자격시험은 건축법규와 건축설계로 각각 조정하고, 설계실무능력을 갖춘 우수한 건

축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건축설계과목의 배점을 1백점에서 2백점으로 높이고 「건축사법」 개정으로 구분이 없어진 단독건축사사무소와 종합건축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를 폐지하기로 함(건설교통부).

: 세계 95.3.23., 8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52면) · 제11호(93면) 참조

○ 도시계획법 개정의견

- 지금까지 시행령 등으로 그린벨트내의 각종 건축허가 등을 규정해 왔는데 지자체가 본격 시행될 경우 현 규정으로는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권과 국무회의의결 절차 등을 「도시계획법」에 명문화하기로 함(건설교통부).

: 한국 95.3.10.,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51~52면) · 제94-5호(121면) 참조

○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의견

- 전 · 월세값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현재 5가구이상 임대로 돼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2가구이상으로 완화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집을 짓거나 사서 5년간 임대한 후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며, 재산세와 등록세, 취득세 등도 50% 감면받게 됨(건설교통부).

- 임대업자의 등록요건을 완화하면 양도세제의 체계가 무너지고 주택의 과다 보유를 유발해 투기를 부채질할 우려가 있어 이를 유보하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을 연내 개정, 임대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요건을 강화할 계획임. 임대업자의 요건을 완화하면 가진 사람 들이 저마다 집을 2채 이상 사들여 면세 혜택을 받으려 할 가능성이 높아 세수 손실과 부동산투기 등의 부작용을 빚을 가능성이 크며, 택지난을 빚는 서울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효과가 별로 없음(이근경 재정경제원 세제 2심의관).

: 조선 95.3.8., 8면; 조선 95.3.9., 12면; 서울 95.3.9., 17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5호(121면) 참조

○ 자연공원법 개정의견

-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등 자연공원은 지정된 뒤 10년마다 공원 구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공원으로 남겨둘 필요가 없는 경우 면적을 줄이고, 공원 안의 자연환경지구에서도 지목 변경과 건축물 이·개축 및 농축산 부대 시설 설치를 할 수 있게 하며, 집단시설 지구 안의 기존 건축물도 개축·재축·수선할 수 있게 개발행위 규제를 완화하고 이제까지 10년마다로 제한해왔던 것과는 달리 도립·군립공원과 내무부령이 정하는 소규모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공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이는 국립공원 안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결코 무분별한 개발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은 아님(내무부).
- 국립공원 등의 토지구제 완화는 공원지역의 시설화, 수질오염, 하천 및 계곡 경관 파괴, 유흥장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불합리한 경계선 때문에 국립공원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면 동시에 생태계보호 차원에서 구역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는 것이 합리적임(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 현재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1개 평균 면적이 1백89km²로 미국의 9천9백89km², 일본의 7백33km²에 비해 매우 영세한 규모여서 면적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하고, 선진국처럼 정부가 국립공원 안의 사유지를 사들여 보존하는 방안을 세우고, 집단시설지구에 들어선 숙박·음식점·판매시설 등도 공원구역 바깥으로 이전해 자연을 복원시키는 방향으로 「자연공원법」을 강화해야 함(환경운동연합).
- 지금까지의 개발지향적인 공원관리방식으로는 삼림 및 자연생태계를 더 이상 보전할 수 없으므로 「자연공원법」을 개발위주에서 보존 중심으로 바꾸고, 스키장·골프장 등 대규모 훼손유발시설의 건설을 근원적으로 억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대폭 강화하며,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도록 함(국립공원관리공단).
- 국립공원은 사회적 차등과 계층간의 차이를 떠나 국민 각자가 서로 평등한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자각을 가능하게 하는 상징으로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개방되어야 하므로, 개인의 사유재산권이나 이기심으로부터 서로 자유롭도록 개발이 아닌 보존 우위의 관점에서 관리되어야 하고, 환경전문 부서인 환경부에 공원관리업무 전체를 이관하도록 해야 함(이석태 변호사,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

모임 부회장).

- 국립공원 관리는 전액 국가예산 부담으로 하고, 국립공원내 용도지구를 재조정해 자연보존지구를 확대지정하고, 생태계 변화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시설 설치기준 등을 법으로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하며, 국립공원관리공단직원이 단속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하고, 공원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예산투자를 도로개설·시설물 설치에서 자연보호 및 복원, 탐방객 안내소, 교육 시설 부문으로 전환해야 함(김남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 한겨레 95.3.22., 1면·3면; 서울 95.3.30., 22면; 한겨레 95.4.4., 5면

○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개정의견

- 그린벨트내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때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한 현행규정을 폐지하고, 20호 미만의 마을에서도 생활환경개선 계획을 세워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전체면적중 13.8%를 차지하는 상대보전지역에 그동안 금지해온 골프장 등 체육시설과 주차장, 슈퍼마켓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15%를 차지하는 절대보전지역에도 공원과 군사시설 등 공익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완화함. 호텔이나 골프장 등 관광위락시설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사업비의 2% 범위안에서 도가 발행하는 채권을 사도록 함(건설교통부).

: 경향 95.4.19.,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2호(52~53) 참조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개정안관련 입법의견

- 전세값의 연간 인상한도를 현행 5%에서 두배로 올릴 경우 주인의 인상욕구를 크게 자극하여 전세값이 폭등세로 발전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소 임대기한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계약당시에 아예 2년치 인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값의 연간인상한도를 현재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겠다는 법무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개정안(시안)이 확정되면 한번에 20%씩 올려받는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우려되며, 집주인들이 연간 5%인 보증금의 인상한도를 피하기 위해 세입자들에게 편법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아 보증금인상한도를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함(행정쇄신위원회).
- 전세값 인상 허용폭을 확대하려는 것은 제도의 현실화를 위한 것으로 보이나

법정 허용폭 이상으로 전세값을 올리는 사례가 현실적으로 적지 않더라도 서민들의 전세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연간 5% 억제선은 계속 유지되어야 함(건설교통부).

: 한국 95.3.28., 8면; 한겨레 95.3.28., 9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5호(121~122면) 참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의견

- 땅을 사줬으나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분양이 여의치 않아 가뜩이나 어려운데 여기다 부담금까지 물리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서 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를 땅을 구입한 날로부터 4년이내 분양을 마치지 못한 경우로 고치거나 또는 시장·군수가 경기 침체나 부득이한 사유로 택지처분이 곤란하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기간을 2년간 연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임(건설교통부).

: 중앙 95.3.1., 25면; 세계 95.3.30., 9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5호(55면) · 제6호(90~91면) · 제8호(111면) · 제94-3호(115면) 참조

◎ 科學技術 · 交通 · 遞信

○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의견

- 음주운전사고가 매년 급증추세를 보임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면허정지·취소뿐 아니라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운행을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며, 현재 0.1% 이상인 혈중알콜농도 면허취소처분기준치를 더 낮추는 등 현행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임(경찰청).
- 교통사고를 당한 당사자들의 경찰서 출석 및 증명서류 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경찰의 업무를 덜기 위해 80만원 이상의 대물 교통사고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제108조를 폐지하기로 함(행정쇄신위원회).
- 최근 정신병력자들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을 연 5회이상 한 운전자들에 대해 정신이상 가능성 여부를 가리는 인성검사를 받도록 하며, 인성검사에서 정신이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난 운전자는 지정병원의 정밀진단을 받도록 해 정신병자나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 알콜중독자로 밝혀질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기로 함(경찰청).
 - 단순 교통사고를 낸 사람까지 경찰서에 출두해 진술하게 하는 규정은 비현실적이며, 현재 경찰의 인력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물적사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경찰신고제를 폐지, 보험사와 사고 당사자들이 과실비율을 따져 자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재정경제원).
 - 물적사고에 형사처벌을 면제할 경우 교통사고를 조장할 우려가 있음(행정쇄신위원회).
 - : 세계 95.2.21., 26면; 세계 95.4.15., 2면; 서울 95.4.6., 23면
-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3호(86면) · 제94-1호(77면) · 제94-5호(122면) · 제94-6호(109~110면) · 제95-1호(96면) 참조

○ 연안역관리법(가칭) 제정의견

- 전국 63개 연안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해 과학적인 해양오염대책을 마련하고 해양경찰청, 해운항만청으로 분산된 해양오염방제기능을 해경으로 일원화함(세계화추진위원회).
 - : 국민 95.3.23., 2면

○ 자동차관리법 개정의견

- 승용차 안전도검사에 대한 현행 사전인증제를 크게 강화, 최종 성능확인검사를 통과해 시판중인 차량에 대해서도 결함이 반복 발견되는 경우 차량제작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함(건설교통부).
- 정기검사시 검사장소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된 사람 중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사람을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 검사업무를 수행토록 함(당정).
- 자동차 크기에 관계없이 취득가액의 5%인 등록세를 경차의 경우 2%로 낮추고, 승용 · 승합 · 화물 · 특수 · 이륜자동차로 분류돼 있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차종 분류에 경차를 별도로 포함시켜 일본처럼 경차의 책임 · 종합보험료를 소형차에 비해 40%가량 경감되도록 하며, 관용업무용 차량은 반드시 경승용차를 구입토록 하고 운전면허시험용 차량으로 경차를 인정하고,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할 때 경차는 증명대상에서 제외함(행정쇄신위원회·통상산업부).

: 경향 95.3.13., 22면; 중앙 95.4.1., 22면; 경향 95.4.4., 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0호(97면) 참조

○ 자동차운수사업법관련 입법의견

- ①자동차대여업에서 운전기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운송업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추진을 중단해야 하고, ②「자동차운수사업법」등에서 「도로교통법」 등에서의 같이 중량초과 적재행위나 밤샘주차행위 등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중복규정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적 차원에서 위헌의 소지마저 있음.

: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5호(56면)·제9호(107면)·제8호(113~114면)·제13호(89면) 참조

○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의견

-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법정기관으로 승격시켜 민간이 제공하는 전화정보(700서비스), PC통신을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통신관련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기 전 심의하도록 하고,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음란·불량정보는 시정명령과 공개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공개정지명령을 거부할 경우는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2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함. 이에 따라 심의대상에는 반국가적인 내용, 인권침해 내용, 범죄행위나 인명경시 풍조, 음란물, 계층간 위화감 조성 내용, 미신 또는 비과학을 조장하거나 신앙의 자유에 반하는 내용, 저작권 침해사항 등이 포함됨(정보통신부).

: 조선 95.2.15., 9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1호(77면) 참조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의견

- 현재 공업진흥청이 맡고 있는 전기용품의 형식승인 업무를 공인된 연구기관 등 민간에 넘기고 최장 60일이 걸리는 승인절차도 30일이내로 대폭 간소화하고,

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통신회선의 범위에 기간통신사업자 외에 한국전력, 철도청, 도로공사 등도 포함되도록 하며, 부가통신사업자는 반드시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회선을 임차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불필요하게 득과점을 인정해 주고 있는 조항이므로 이를 개정하기로 함(통상산업부).

: 세계 95.3.8., 7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54~55면) · 제3호(69~70면) · 제94-6호(110면) 참조

○ 정보화촉진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정보통신 및 영상관련 특수고교 · 전문대 · 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초 · 중 · 고교 필수교과 과정에 정보화교육을 포함시키는 한편 정보통신사업 육성을 위해 「정보화촉진기본법(가칭)」을 제정하여 공공부문의 정보화 및 지역정보화 확대,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에 대한 단계적인 규제철폐 및 민간참여 활성화, 98년까지 정보통신분야 석 · 박사 2천 1백명으로 늘리는 등 정보화교육 및 전문인력양성 등을 추진함(세계화추진위원회).

- 전산망조정위, 초고속정보화추진위 등 기존 정보화관련위원회를 통폐합,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위에서 총괄지휘토록 하고 전자서류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며, 향후 20년간 정부가 초고속망구축에 투자할 1조8천억원을 안정적 ·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정보화촉진기금의 확보가 필요하고, 정보화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과 추진체계, 초고속망구축지원, 정보화지원재원마련 등을 포함한 종합근거법을 제정해야함(세계화추진위원회).

: 세계 95.3.24., 2면; 경향 95.3.24., 2면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의견

- 컴퓨터프로그램의 유통이 크게 늘어나면서 각종 권리침해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따라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및 피해구제를 위해 내년중 컴퓨터프로그램보호원을 설립하여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을 PC통신 등에 무단 공개, 재산권에 침해를 입힌 사람을

처벌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컴퓨터바이러스를 고의로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사람에 대해 3천만원이하의 벌금과 3년이하의 징역을 병과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함(정보통신부).

- 기존 컴퓨터프로그램에 쓰인 아이디어를 기초로 개량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소위 리버스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 : 역공학)기법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을 허용하여 상호 호환성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창작하기 위한 연구목적에 한해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허용하기로 함(정보통신부).

- 기존 프로그램 저작권자에 의한 저작권 남용이 규제되는 방향으로 법규가 정비돼야 함(정상조 서울대 법대교수).

: 중앙 95.3.20., 25면; 한국 95.3.21., 2면; 중앙 95.4.19., 27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5호(56면) · 제6호(94~95면) · 제12호(102면) 참조

◎ 環境 · 保健

○ 노인건강관리법(가칭) 제정의견

- 노인건강진단, 가정의료제 도입, 노인질환 전문요양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노인건강관리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하고 선진국형 노인전문의료체계를 갖추어 나가기로 함(보건복지부).

- 노인건강문제에 있어서 노인단체를 통한 검진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치료와 연결되도록 하고, 특히 치매나 중풍 등의 특수 만성질환은 좀더 적극적으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인에 대한 종합의료체계를 갖추어야 함(김동배 연세대 교수).

: 한겨레 95.3.26., 1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7호(70면) · 제94-3호(120면) 참조

○ 먹는물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의견

- 먹는 샘물의 용기는 재충전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도록 함. 페트병도 재사용 및 재활용률을 높이면 유리병보다 오히려 환경친화적임(정채춘 연세대교수).

- 수질기준과 관련해 미생물과 방사능물질 및 미량 유해물질 등이 기준에 추가되어야 하고, 기준도 상한·하한·권장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남상호 건국대

교수).

- 생수의 유통기간 6개월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짧아 통상마찰을 빚을 우려가 있고 우리나라의 생수 품질이 나쁘다는 인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유통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1ℓ 이하 생수용기의 유리병 사용 의무화는 청량음료 등 다른 식품과는 다르게 소비자들의 편의를 외면하는 행위이므로 페트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환경부).

: 중앙 95.2.28., 21면; 동아 95.3.4., 29면

○ 물관리관련 입법의견

- 「하천법」, 「다목적댐법」, 「수질환경보존법」 등 복잡한 물관련 법령체계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으며,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급측면 및 수요측면, 수질측면의 관리가 종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시행되어야 하고, 가뭄과 돌발적인 수질오염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물사용 우선순위 및 물수급 조정, 폐수·하수배출량 규제 및 관리가 통합적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윤서성 환경부기획관리실장).
- 생활용수 등 각 용도별 물의 생산성을 검토, 같은 돈을 들인 물이면 모든 용도에서 동일한 생산성이 달성되도록 물의 이용량을 조절해야 함(이정전 서울대교수).

: 동아 95.3.23., 29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6호(113면) 참조

○ 보건의료기술진흥법(가칭) 제정의견

- WTO 체제의 출범으로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투자가 시급함에 따라 중복 오송에 3백만평 규모의 보건의료과학단지를 조성, 정부 관련기관과 연구소, 기업, 생명과학 관련대학 등이 유기적인 협동체제를 갖추게 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보건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수입개방화에 대비, 국가적인 지원책을 강화해 전 통식품과 우수신약을 개발, 국제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함(보건복지부장관).

: 서울 95.3.3., 5면

○ 상수원보호지역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상수원보호지역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가칭)」을 제정하여 상수원보호지역 지정으로 그동안 주민들이 부동산매매 등 재산권행사에 많은 불이익을 당해온 점을 감안해 고기잡이를 주민소득사업 차원에서 허용하고, 현지주민의 소득증대사업을 위해 정부보조금 지급도 명문화함(환경부).

: 경향 95.4.15., 21면

○ 의료법 개정의견

- 성감별 행위의 금지가 그 대상을 태아로만 규정하고 있어 성감별 행위 금지대상에 수정란을 추가하는 쪽으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이동모 보건복지부 의정국장).
- 법적으로 태아의 개념은 수정란은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예상되는 법률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시급함(김웅조 변호사).

: 조선 95.3.19., 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3호(73~74면) · 제4호(40면) · 제6호(100면) · 제7호(71면) · 제94-3호(123~124면) 참조

○ 장기공여및이식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장기매매로 인한 생명경시풍조 조장과 인간존엄성 상실이 우려되는바, 제정될 장기이식 관련 법안에 뇌사인정과 함께 장기매매의 금지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장차 구성될 '한국 장기나눔의 방'에 보고·등록되지 않은 뇌사자의 장기이식이나 생체이식은 철저히 금지해야 함(연세대 의대 보건정책및관리연구소).
- 「장기공여및이식에관한법률(가칭)」을 제정하여 심장이나 호흡기의 기능이 상실됐을 때는 물론 뇌의 기능이 회복할 수 없는 경지, 즉 뇌사에 이르렀을 때도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오진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뇌사판정위원회가 뇌사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뇌사를 인정함에 따라 사망 시점이 달라져 일어날 수 있는 민사상의 상속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규정을 두고, 장기 공여 의사의 타진 방법과 장기 기증을 결정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와 환자의 결정권, 사회적 합의에 따라 운용되는 장기 확보 및 배분 기구의 설립, 장기 이식

- 수혜자의 비용 부담 범위 및 부유층 뿐 아니라 저소득층에도 장기 이식의 혜택이 돌아가는 조항, 장기 매매의 금지와 처벌 조항 등을 두기로 함(보건복지부).
 - 장기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장기이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전담기구를 만들어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것을 검토중임(당정).
 - : 국민 95.3.31., 22면; 서울 95.3.4., 23면; 국민 95.3.27., 1면
-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5호(128면) 참조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가칭) 제정의견
 - 쓰레기 매립장 반입수수료 가운데 최고 10%가 인근 지역주민 지원사업기금으로 조성되고,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는 영향권의 범위를 매립장의 경우 터 경계선으로부터 2km, 소각장의 경우 5백m로 정했으며, 이 가운데 농수산물에 직접 피해가 미치거나 파리·쥐 등이 활동하는 직접영향권을 피해 지역주민을 이주시키기로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될 곳으로는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t 이상이거나 조성면적 50만m² 이상인 공단 등으로 함(환경부).

: 한겨레 95.3.28., 2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6호(114면) 참조

○ 환경규제관련 입법의견

- 환경규제를 세분화, 복잡화시킨 개개의 법률과 시행규칙의 개별적인 규제방식으로 중복과 혼돈이 우려되므로 전체시설의 공해 배출 결과치를 기준으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이를 전환해야 하고, 방지시설 허가제에는 관리인 의무고용, 자가측정 의무 등 과다하고 중복된 직접규제를 하고 있어 이의 재정비가 필요함(전국경제인연합회).

: 서울 95.2.22., 14면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개정의견

- 개발에 의한 자연공원 훼손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사업진행도중에 실시,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환경영향평가를 사업시작단계로 앞당겨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고,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경마장·승용차·경주장·모래채취사업 등을 새로 포함시키고 에너지개발에 의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대상 탄광사업장을 대폭 확대하기로 함(환경부).

: 경향 95.4.15.,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1호(102면) 참조

◎ 法院·法務

○ 민법 개정의견

- 부부재산제에 관한 법률은 혼인전에 부부간의 재산처리에 관해서 서로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런 계약을 하고 혼인하는 부부는 거의 없고 부부재산에 관한 법률처리는 남편과 부인의 재산을 명의에 따라 별개로 인정하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음. 부부별산제는 형식적으로는 부부평등법을 같지만 실질적으로 부인에게, 특히 전업주부인 경우 가사업무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아 불리한 경우가 많아서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세법은 그 분할몫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혼인중에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도 각자의 몫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취급되어 상속세가 부과됨. 혼인중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은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몫을 실질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부부재산제가 개정되어야 함(국회여성정책포럼 『세계화와 한국의 가족법』).
- 동성동본금혼규정은 「헌법」제10조 행복추구권과 제11조 평등권,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 유지에 관한 국가의 보장의무 등에 위배되는 명백한 위헌사항임(이화숙 경원대 법학과교수).
- 모계는 상관없이 부계만을 따져 촌수도 알 수 없는 사이인 동성동본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일로서, 동성동본과 근친혼은 금지하되 그 이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동성동본간의 혼인은 허용해야 함(김숙자 명지대 법학과교수).

: 중앙 95.2.21., 12면; 세계 95.3.12., 10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5-1호(100면) 참조

○ 법령안입법예고절차 개선의견

- 현행의 「법령입법예고에관한규정」에 의한 입법예고제도는 미흡하므로 정부부처에서 입법추진하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등에 대한 예외없는 입법예고 의무화, 예고방법에 있어서 입법초안 전문의 게재 의무화(그것이 어려우면 입법초안 교부의 의무화), 입법예고기간의 충분한 보장 등을 통하여 예고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실질적인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및 시행령관련 입법의견

-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명의신탁)하도록 부추긴 사람은 명의신탁자나 수탁자와 똑같은 처벌을 받게 하고, 실명으로 전환하는 부동산이 증여세 추징 대상일 경우 값이 5천만원 이하면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5천만원을 넘을 때는 한 푼도 공제받지 못하고 부동산값 전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됨. 3년이상 등기를 하지 않았다가 과징금을 낼 때 기존의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이미 낸 과태료가 있으면 그만큼은 과징금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 시장·군수나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한 것도 실제 매각한 것으로 간주돼 과징금이 면제됨(당정).
- ①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명의신탁자 허락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는 만큼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도 거래한 사람(악의의 제3자)까지 보호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는 선의의 제3자에게만 적용해야 함. ②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자체가 너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중복적이므로 과징금 액수와 형량을 낮추고, ③조세포탈 등의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이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조세포탈 등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④가벼운 경우라 하여 누락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면 선량한 납세자와의 균형을 잃게 되고 범경시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음(대한변협).
- ①부동산실명제 시행이후 실명으로 전환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존 명의신탁부동산은 1필지에 한하되 땅이 서로 붙어있으면 여러 필지라도 1건의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되고, ②명의신탁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 경우 과징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세금대신 부동산으로 몰납할 수 있고, ③실명화유예기간까지 부동산을 팔기가 어려워 성업공

사에 매각을 의뢰하더라도 의뢰한 부동산에 가동기나 저당권이 설정돼 매각이 어려우면 성업공사가 매각의뢰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④시장·군수·구청장이 명의신탁 사실을 적발하면 1개월내에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며, 과징금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하도록 하고, 과징금을 물납하기 위해서는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물납부동산의 위치·면적·가격 등을 기재한 물납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⑤시장·군수는 신청후 15일이내에 물납 허가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물납하려는 부동산값이 과징금보다 많으면 물납을 허용하지 않도록 함(재정경제원).

: 중앙 95.2.20., 27면; 세계 95.3.3., 21면; 동아 95.4.4., 3면

○ 사법개혁관련 입법의견

- 판·검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개업한 변호사의 경우 최종 근무지에서는 1~3년동안 변호사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임(대한변협).
- 개업지 제한이란 근본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나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의 소지를 갖고 있으므로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 신실한 법규정이 또다시 위헌결정될 경우 자칫 전관예우란 악습까지도 합리화·정당화할 우려마저 있음(중앙일보 사설).
- 법률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연간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1천명선까지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하며 현행 성공사례금 제도 등을 폐지, 수입료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야 함(배종대 고려대 법대교수).
- 국민 누구나 적절한 가격으로 기본적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변호사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변호사업무를 전문화시켜 새로운 수요에 대응해야 하며, 법치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변호사가 좁은 의미의 법조계만이 아니라 행정부, 기업, 각종 사회단체에 광범위하게 진출하고, 통일에 대비한 법질서의 통합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법조인이 미리 확보되어야 함(양건 한양대 법대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으로 자율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변호사수를 법률로 정하고, 형사사건의 변호사 성공사례비는 일체 금지하며 변협내에 설치되어 있는 변호사징계위원회에 판사·검사·학자·소비자단체대표도 참여시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폭넓은 경험과 법지식을 요구하는 상급심 재판관을

- 말을 수 있는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 인가제도를 도입하며 변호사 자질향상을 위해 변호사자격시험 합격후 2년간은 단독개업을 제한하고 법무법인 등에서 실무수습을 받도록 하며,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 법원의 재판결정도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과도한 소송비부담을 덜기 위해 소송보험제도를 도입함(한국법학교수회 『사법개혁에 관한 법학교수회의 공식입장』).
- 다양한 법률수요를 고려할 때 법률전문가가 가능한 한 대량으로 양성·공급될 수 있게 법학교육체제와 시험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문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대학을 법학전문대학으로 개편, 우리의 전통과 특수성에 맞는 교육체제를 마련해야 함(권오승 서울대 법대교수).
 - 다양한 전문변호사는 학부과정부터 법만 공부한 사람보다는 학부에서 다른 전공을 한뒤 법을 공부한 사람이 훨씬 바람직함(차용석 한양대 법대교수).
 - ①변호사 보수를 법률로 정하는 법정화나, 변협 및 민간단체의 안을 정부에서 인정하는 인가제를 도입하고, 성공보수를 인정함에 따라 피고인의 석방을 위해 비윤리·불법적 수단이 동원되므로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가사사건에는 성공보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민사사건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실패에 소송을 수행해주고 승소한 뒤에 수입료를 받게 함. ②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법무보험을 도입하여 변호사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수입계약서는 반드시 문서화하고, 현행 「소비자보호법」상의 변호사 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의 발생시는 소비자측인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며, ③변호사의 직역을 대폭 확대시키는 제도적 장치와 입법을 마련하여 정부 각 부처의 법무관은 모두 변호사 고용을 의무화하고, 기초 법조인 양성과정부터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교육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변호사시험이후에도 재교육 과정이 마련되어야 함. ④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자질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변호사 등록거부권을 변협에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함(조선일보 기획·연재).
 - 변호사의 과다수임료 등의 문제는 법조인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법률수요 및 경제규모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2천명정도로 대폭 늘려야 함(조병윤 명지대 법대교수).
 - 정상적인 법학교육을 성실하게 받은 사람은 누구나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시험과목이나 출제방식을 재조정하고 법학대학 졸업자에

게만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주도록 하되, 독학자에게는 예비시험에 합격했을 경우에만 응시자격을 부여함. 다양한 사회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사법시험 응시자격 및 응시횟수를 제한하여 법과대학 졸업후 3, 4차레만 사법시험 응시 기회를 주고, 35세 이상의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방법이 적절함(서원우 서울대 법대교수).

- 법조인들의 지적 토대를 확대하고, 세무·특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양성할 수 있는 미국식 로스쿨(전문사법대학원)제도가 가장 바람직함(양건한양대 법대교수).
- 전관예우를 없애려면 먼저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죄에 해당하는 형량을 미리 알 수 있고, 법관들의 양형재량을 제한할 수 있는 형량기준표가 마련돼야 하고, 보석의 허가여부를 재판부가 임의로 결정하는 관행도 개선하며, 전관예우를 부추기는 법조계주변의 브로커들을 척결해야 함(이석연 변호사).
- 판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일정기간동안 변호사로서 경력을 쌓은 사람중에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를 통해 이뤄지도록 하되, 충분한 경력과 인품이 있는 사람중에서 선발해야 함(김창국 전서울변호사회장).
- 사건마다 난이도가 다르고 소요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입할때 수입료를 산정한 근거 등을 명시하는 등 계약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선결과제임(박은정 이화여대 법대교수).

: 동아 95.3.15., 30면; 중앙 95.3.15., 3면; 동아 95.2.17., 5면; 서울 95.4.19., 5면; 조선 95.3.21., 44면; 동아 95.2.27., 4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2호(107~110면) · 제13호(100~103면) · 제94-1호(129~130면) · 제94-2호(113~115면) · 제94-3호(130면) · 제94-5호(130면) · 제95-1호(101면) 참조

○ 사설경호업법(가칭) 제정의견

-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앞두고 후보경호를 가장한 조직폭력배의 불법선거운동이 우려되므로 경호원 자격과 관련 일정기준 이상의 무술유단자를 우선 채용하되,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의 경우 형집행정지후 3~5년 이내에는 경호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경호원의 무기소지는 곤봉과 가스총으로 제한하고, 도검류나 총은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며, 법인의 설립과 감독은 경찰청이 맡도록

하고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규정은 현행 「용역경비업법」상 규정을 따르도록 함(경찰청).

: 중앙 95.4.4., 22면

○ 세무사 등 자격제도의 축소·폐지계획관련 입법의견

- 지난 해 행정쇄신위원회의 제도개선안 가운데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의 자격을 주는 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나 그것이 어려울 경우 적어도 이들도 세무사회에 입회등록 할 것을 의무화 하여 세무사로서의 평등성과 전문성을 기하는 동시에 정부의 감독체제 일원화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 바, 이러한 권고가 하루속히 법제화되어야 함.

: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 양형관련 입법의견

- 양형조사관제도를 도입하거나 양형기준표 등을 작성해 가이드라인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고, 우리나라는 법률자체에 형량의 재량폭이 크게 규정돼 있으므로 범죄를 세분화해 법정형량의 범위를 줄여 나가야 함(이영란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 컴퓨터를 이용한 양형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별도의 양형심리절차 규정, 법관련수시 양형토론 강화, 양형자료발간 등 양형 적정화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토대로 각 법원이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양형적정화 방안을 마련, 시행하도록 함(대법원).
- 범죄자들이 사법부의 법 적용에 있어 죄질에 비해 낮은 형량을 선고받고 있으므로 법관의 자유재량을 대폭 축소하고, 흉악범에 대해서는 법률상 감경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석방의 요건을 대폭강화하거나 이를 가급적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범죄에 대한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체계 안정차원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형법」에 흡수, 통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함(당정).
- 신체를 구금하는 자유형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구류제도는 폐지해야 할 것으로, 형벌의 중심을 자유형에서 벌금형으로 옮겨야 하고, 사회봉사명령 제도

를 성인범으로까지 확대하며, 전반적으로 높게 책정된 형벌수준을 낮춰야 함. 양형과 관련해서는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에서 집행유예와 가석방의 범위를 지금보다 훨씬 확대해야 함(조선일보 기획·연재).

- 사회봉사명령제는 벌금형보다는 확실하게 범법자에게 자신의 범법행위를 인식하게 해주면서도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도 사회에 대한 시혜자라는 느낌을 갖게 함으로써 정상인으로서의 복귀를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평생동안 짐이 되게 하는 일도 줄일 수 있음(중앙일보 사설).

: 동아 95.2.13., 5면; 세계 95.4.7., 1면; 중앙 95.4.13., 3면

○ 유실물법시행령개정안관련 입법의견

- 입법에 예고된 「유실물법시행령」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이미 각종 민원의 대상이 되어 폐지된, 구「고물영업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장물을 취급하지 않는 재활용협의회 회원의 원성을 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의 불편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 장물유통을 차단하고 범죄수사상 필요할 경우 일정한 도소매업소에 경찰관이 무상 출입, 장물인식표를 배포하고 장부의 기록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고물영업법」의 주요 조항은 거래장부 의무 기재요건 등이 현실에 맞지 않아 수많은 업주들을 범법자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경찰관들이 영장없이 업소에 출입하는데 따른 부작용이 많아 경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개혁차원에서 삭제하였다가 개정된 「유실물법시행령」에 다시 삽입된 것이므로 이 독소조항을 삭제할 방침임(정부).

- 장물 유통은 「형법」 등 다른 법률을 통해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음(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경정비연합·한국재활용협회·고미술협회)

: 중앙 95.4.5., 23면

○ 형사소송법 개정의견

- 사법제도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형사피의자가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심문을 받을 때 변호인이 입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피의자가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기전 변호인이 고문 등의 강압행위가 없었음

을 확인하는 부대서명란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음(법무부).

: 서울 95.3.19., 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2호(110면) · 제13호(105~106면) · 제94-1호
(85면) · 제92-2호(116~117면) · 제94-5호(131~132면) · 제94-6(120~
121면) 참조

II. 主要立法豫告法律案

1. 主要立法豫告法律案 目錄

(1995.2.11. ~ 1995.4.20)

◎ 內務·地方行政	130
○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 자연공원법개정안	
◎ 社會·文化·教育	131
○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 産業·經濟	132
○ 대한무역진흥공사법중개정법률	
○ 외국환관리법개정법률안	
◎ 環境·保健	134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안	

2. 主要立法豫告法律案 内容

(1995.2.11. ~ 1995.4.20)

◎ 内務 · 地方行政

○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예고일자 : 1995.3.27(내무부공고제1995-33호)

1. 제정취지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상·하수도, 교통, 환경 등의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도시와 농어촌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권이 동일한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기도의 송탄시·평택시 및 평택군을 통합하여 하나의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함.

나. 충청남도의 천안시와 천안군을 통합하여 하나의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함

다. 전라북도의 이리시와 익산군을 통합하여 하나의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함

라. 경상남도의 삼천포시와 사천군을 통합하여 하나의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함.

마. 경상남도의 김해시와 김해군을 통합하여 하나의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함

○ 자연공원법개정안

예고일자 : 1995.2.23(내무부공고제1995-17호)

1. 개정이유

-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의 효과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가면서

- 고질민원 대상이 되어온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원사업의 효율성 및 공원관리청의 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불합리하게 설정된 공원구역 경계 재조정 근거 마련

- (1) 10년마다 공원구역 타당성여부 검토, 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축소변경 허용

나. 용도지구별 허용행위기준 완화

- (1) 자연환경지구내 일부지목변경, 건축물 이축·개축 등 허용
- (2) 집단시설지구내 기존 적법건축물 개축·재축 및 수선 허용
- (3) 취락지구내 주거용 건물의 시설규모 및 거주요건 등 기준 규정

다. 공원사업 시행절차 간소화

- (1) 공원사업 시행시 공원계획 반영후 기본설계승인 공고(내무부), 공원사업시행 허가(공단)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 (2) 설계승인 및 시행허가시 검토내용이 사실상 동일하므로 설계승인 절차를 폐지

라. 공원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보강

- (1) 공원점·사용시 원상회복비용 예치제도 도입
- (2) 자연공원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대집행 근거 마련
- (3) 공원사업추진시 토지수용절차 간소화 - 토지수용법 준용근거 도입
- (4) 공원내 일정영업행위자를 청소원인자로 지정, 원인자 출연금 부과

마. 경미한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부과로 전환

- (1) 현행 구류·과료·벌금 등 행정형벌 위주의 벌칙조향을, 경미한 위반행위는 과태료부과로 완화

◎ 社會 · 文化 · 教育

○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5.2.14(보건복지부공고제1995-10호)

1. 개정이유

국민의 해외이주 및 OECD 가입 등에 따른 사회보장법규의 국제화 경향에 부

응하고 해외단기체류 국민의 사회보장비용 이중부담의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주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국민연금을 당연 적용 시키고 반환일시금 지급을 제한함.

◎ 産業 · 經濟

○ 대한무역진흥공사법중개정법률

예고일자 : 1995.4.4(통상산업부공고제1995-37호)

1. 개정취지

대한무역진흥공사는 1962년 설립이후 수출진흥을 위한 해외시장의 조사·개척 및 무역거래 알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최근 국내외 기업간의 투자·기술협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동 공사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고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개정내용

가. 법률명칭변경 : 「대한무역진흥공사법」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으로 변경

나. 공사명칭변경 : 『대한무역진흥공사』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변경

다. 설립목적변경 : 수출진흥을 위한 기관에서 무역진흥과 국내외 투자·산업기술협력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변경

라. 법인격이 비영리법인임을 명시

마. 사업영역추가

(1) 외국인의 국내투자 유치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지원

(2) 국내외 기업간의 산업기술교류 알선

(3) (1), (2)항의 사업과 관련한 정보의 수집·전파 및 부대사업

바. 사업영역삭제 : 소액 또는 소량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사에 대한 업무지원

사. 투자지원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은 재정경제원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감독권 행사

○ 외국환관리법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5.3.2(재정경제원공고제1995-14호)

1. 개정이유

- 우리경제의 국제화·세계화를 촉진하고 21세기 선진경제 진입에 대비한 국가경쟁력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외환제도 개혁계획을 확정 발표한 바 있음.
- 동 제도 개혁은 기업의 대외활동 촉진과 국민의 생활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어 외환제도를 사전규제에서 원칙자유체제로 전환하여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외환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 동 외환제도 개혁추진에 필요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1995년중 외환관리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경상거래의 자유화

- 현재 경상지급은 재무부장관의 허가제도이며 용역거래에 대해서는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제를 유지하고 있음.
- 허가제 성격의 인증제를 폐지하여 단순통계목적의 보고형태인 신고제를 도입하고, 용역거래등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폐지함.

나. 자본거래의 자유화

- 현재 모든 자본거래는 원칙적으로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자본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래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래로 구분함.
-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허가·신고절차없이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하고, 국내 금융·외환시장 교란 우려 등 점검이 필요한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 또는 허가를 받도록 하되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별도로 정함.
-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거치도록 하되,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는 거래 등은 허가 또는 신고를 면제함.

다. 외국환은행 등의 업무 자율화

- 외국환은행의 대외환거래 계약체결시 인가제를 폐지하고 영업소 설치 인

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자유화함.

- 환전상설치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일정기준이 충족하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라. 외환집중제 정지

- 외환집중제를 정지할 수 있도록 평상시 외환환매각·예치 등 의무를 폐지하고 국내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이 발생하는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외환은행 등에 매각하도록 함.

마. 외국환중개회사(Broker)도입

- 외국환의 매매·교환 등의 중개업무를 전담할 외국환중개회사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함.

바. 자유화에 따른 보완장치 정비

- 외환·자본자유화에 따른 외환시장 안전장치로서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 조성 및 운용방법을 다양화함.
- 긴급시 외국환거래의 정지 또는 자본거래의 허가 등 유사시 안전장치를 통합·정비함.
- 외환은행 등이 특정 외국환거래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국세청 통보제도 도입

- 외환·자본자유화에 따라 외환관리사법에 대해 체형을 낮추고 벌금형을 강화하며, 외환거래 위반시 행정제제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環境 · 保健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안

예고일자 : 1995.3.30(보건복지부공고제1995-20호)

1. 제정취지

- 『삶의 질』향상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의약품·의료기기·식품·의료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 관련되는 산업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으나 보건의료산업시장의 전면개방, 물질특허제의 도입 등으로 선진국의 국내시장 잠식 및 기술예속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 우려됨.

- 이 법은 보건의료기술진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하므로써 보건의료관련산업의 건실한 발전을 꾀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건강의 증진에 기여하게 하기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을 개발, 촉진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연구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분야별 연구개발활동을 지원·장려함.
- 나. 보건의료기술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등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보건의료기술정책 심의위원회를 둠.
-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보건의료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지원, 보건의료산업체에 대한 기술 및 경영지도, 보건의료산업체에 대한 기술 및 경영지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평가 및 연구협약, 보건의료정보의 관리 및 유통에 관한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함.
-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을 위하여 보건의료정보관리전문기관의 육성, 보건·의료·복지분야 전산화 촉진을 위한 업무의 표준에 관한 연구·개발 및 관리, 보건의료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 등의 업무를 추진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연구개발 지원 및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므로써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기술이라 함은 의약품, 의료용구, 식품, 의료 등 국민의 건강 및 생명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의약품이라 함은 약사법 제2조제4항 내지 제8항 및 제10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3. 의료용구라 함은 약사법 제2조제9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4. 식품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기술개발의 보호·육성) ①정부는 보건의료기술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의 개발·촉진을 위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3. 국·공립연구기관
4.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보건의료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기타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의 선정방법·과제협약의 체결방법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①보건의료기술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건의료기술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2. 중·장기 보건의료기술개발전략의 수립
3.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설정
4. 기술개발연구지원자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분야의 정보·통계관리 및 전산화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③위원회는 제2항 각호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 연구 및 관계자 의견청취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보건의료기술지원을 위한 법인의 지정)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보건의료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2. 보건의료산업체에 대한 기술 및 경영지도
3.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평가 및 연구협약 등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정보의 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건의료기술진흥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이 제1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6조(보건의료정보의 진흥)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보건의료정보관리전문연구기관의 육성
2. 보건·의료·복지분야 전산화 촉진을 위한 업무의 표준에 관한 연구·개발 및 관리
3. 보건의료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의료정보진흥을 위한 중요사항

②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연구기관은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의료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제공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7조(조세감면)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에 필요한 관련자재, 기기, 시약중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의 수입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협동연구의 촉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의 효율적인 개발·육성을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공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 의한 협동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산업재산권 등의 사용특례) ①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서 정부에 귀속한 산업재산권중 산업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자 또는 당해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그 산업재산권을 양여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의 수행자 또는 그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당해사업에 사용된 것으로서 정부에 귀속된 연구기관, 설립 및 시작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권한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에 연구기획, 연구과제의 선정, 협약, 평가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Ⅲ. 最新法令 目錄

(1995.2.11. ~ 1995.4.20)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법 률	4943 국회법중개정법률	1995. 3. 3
	4944 부동산실권리자의명의등기에관한법률	1995. 3.30
	4945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	1995. 3.20
	4946 검찰청법중개정법률	1995. 3.30
조 약	1268 대한민국과튀니지공화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	1995. 2.17
	1269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1995. 2.11
	1270 대한민국정부와멕시코합중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	1995. 2.11
	1271 대한민국과스페인왕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	1995. 2.15
	1273 오존층과피물질에관한몬트리올의정서에대한개정	1995. 3. 2
	1274 대한민국정부와불가리아공화국정부간의각자의영역간및그이원의항공업무에관한협정	1995. 3. 6
	1275 대한민국정부와체코공화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	1995. 3.10
	1276 대한민국정부와체코공화국정부간의투자의증진및상호보호에관한협정	1995. 3.21
	1277 대한민국정부와튀니지공화국정부간의각자의영역간및그이원의정기항공업무에관한협정	1995. 3.24
	1278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설립에관한협정(KEDO협정)	1995. 3.24
	1279 대한민국정부와베네수엘라공화국정부간의문화협정	1995. 4. 6
	1280 대한민국과러시아연방정부간의러시아연방사하공화국<야쿠티야>에서의경제협력에관한협정	1995. 4. 6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1281	대한민국정부와체코공화국정부간의과학및기술협 력에관한협정	1995. 4.11
1282	대한민국정부와니카라과정부간의사증면제에관한 교환각서	1995. 4.13
1283	대한민국정부와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정부간의세 관분야에서의협력및상호지원에관한협정	1995. 4.13
1284	대한민국정부와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정부간의대 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협정	1995. 4.21
대 통 령 령 14525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시행령	1995. 2.18
14526	법률구조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2.18
14527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 령	1995. 2.18
14528	농약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2.18
14529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2.18
14530	주차장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2.18
14531	정부의기획및심사분석에관한규정개정령	1995. 2.24
14532	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1995. 2.24
14533	행정쇄신위원회규정중개정령	1995. 2.24
14534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2.28
14535	검사정원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2.28
14536	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 규정중개정령	1995. 2.28
14537	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2.28
1453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95. 2.28
14539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	1995. 2.28
14540	서울대학교설치령중개정령	1995. 2.28
14541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95. 2.28
14542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95. 2.28
14543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중개정령	1995. 2.28
1454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3. 2

공 포 번 호	진 명	공포연월일
14545	관세법제10조의규정에의한블베어령에대한덤핑 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정폐지령	1995. 3. 4
14546	의료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3. 4
14547	관광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3. 6
14548	소년원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3.23
14549	정보통신부외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5. 3.23
14550	공보처외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5. 3.23
14551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중개정령	1995. 3.25
14552	교육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1995. 3.25
14553	교수자격인정령중개정령	1995. 3.25
14554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95. 3.25
14555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95. 3.30
14556	경제장관회의규정중개정령	1995. 3.30
14557	경제차관회의규정중개정령	1995. 3.30
14558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95. 3.30
14559	민사소송법제642조제7항의이율에관한규정	1995. 3.30
14560	군납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95. 3.30
14561	외자도입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4. 1
14562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령	1995. 4. 1
14563	경범죄처벌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4. 1
14564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4. 1
14565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4. 1
1456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95. 4. 1
14567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95. 4. 1
14568	지적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4. 6
14569	학교급식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4. 6
14570	고용보험법시행령	1995. 4. 6
14571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4. 6
14572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4. 6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14573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4. 8
14574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4.11
14575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5. 4.12
14576	통일원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5. 4.12
14577	총무처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5. 4.12
14578	과학기술처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5. 4.12
14579	공보처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5. 4.12
14580	법제처직제중개정령	1995. 4.12
14581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5. 4.12
14582	외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5. 4.12
14583	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5. 4.12
14584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5. 4.12
14585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5. 4.12
14586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5. 4.12
14587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5. 4.12
14588	농림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5. 4.12
14589	통산산업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5. 4.12
14590	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5. 4.12
14591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5. 4.12
14592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5. 4.12
14593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5. 4.12
14594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5. 4.12
14595	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5. 4.12
14596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5. 4.12
14597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5. 4.12
14598	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5. 4.12
14599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5. 4.12
14600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5. 4.12
14601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95. 4.12

공 포 번 호	진 명	공포연월일
14602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5. 4.12
14603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5. 4.12
14604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5. 4.12
14605	수산청과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5. 4.12
14606	공업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5. 4.12
14607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5. 4.12
14608	철도청과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5. 4.12
14609	해운항만청과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5. 4.12
14610	문화재관리국직제증개정령	1995. 4.12
14611	수로국직제증개정령	1995. 4.12
14612	행정조정실직제증개정령	1995. 4.12
14613	국무총리비서실직제증개정령	1995. 4.12
14614	정무장관실직제증개정령	1995. 4.12
14615	비상기획위원회규정증개정령	1995. 4.12
14616	공정거래위원회직제증개정령	1995. 4.12
146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직제증개정령	1995. 4.12
14618	대통령비서실직제증개정령	1995. 4.12
14619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증개정령	1995. 4.12
14620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증개정령	1995. 4.12
14621	합동참모본부직제개정령	1995. 4.12
14622	국방정보본부령증개정령	1995. 4.12
14623	육군본부직제개정령	1995. 4.12
14624	해군본부직제개정령	1995. 4.12
14625	공군본부직제개정령	1995. 4.12
14626	군특명검열단설치령폐지령	1995. 4.12
14627	가석방자관리규정증개정령	1995. 4.15
146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개정령	1995. 4.15
14629	시·군·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1995. 4.20
14630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1995. 4.20
1463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1995. 4.20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총 리 령	489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2.20
	490	정부주요정책의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폐지령	1995. 2.24
	491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3.30
	492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3.30
	493	농·임·어업용기자재에관한부가가치영세율적용 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3.30
	494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3.31
	495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제7조에 의한시장접근물량증량에관한규칙	1995. 3.31
	496	관세법제12조의3의규정에의한특별긴급관세부과 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5. 3.31
	497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제50조제1항단서의규정 에의한세무서하부조직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5. 3.31
	498	상속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4. 1
	499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4. 1
	500	공무원평정규칙개정령	1995. 4. 1
	501	외자도입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4. 1
	502	상호신용금고법시행규칙개정령	1995. 4. 7
외 무 부 령	177	재외공관주재관및주재무관의대의직명에관한규칙 중개정령	1995. 2.18
	178	재외공관주재관및주재무관의대의직명에관한규칙 중개정령	1995. 4.19
내 무 부 령	641	소방용기계·기구등의검정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5. 2.21
	642	경범죄처벌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3. 3
	643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중개정령	1995. 3.17
	644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3.25
	645	내무부고문변호사운용규칙중개정령	1995. 4. 8
법 무 부 령	398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5. 2.20
	399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 정령	1995. 2.20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400	법률구조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2.20
401	수형자등교육규칙개정령	1995. 3. 4
402	고등검찰청검사의지방검찰청소재지에서사무처리 에관한규칙	1995. 3. 2
국 방 부 령 455	군인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5. 2.23
456	군사시설보호법시행규칙개정령	1995. 3.13
교 육 부 령 659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2.18
농림수산부령 1172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규칙중개정 령	1995. 2.18
1173	영림서관리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규칙 개정령	1995. 2.24
813	사료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2.27
1174	농촌진흥청시험장의출장소설치에관한규칙중개정 령	1995. 4. 1
1176	농약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3. 7
1177	농수산통계사무소출장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 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5. 3.10
1178	국립농산물검사소지소출장소의명칭·위치및관할 구역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5. 3.10
1179	국립동물검역소지소출장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 역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5. 3.10
1180	국립식물검역소지소출장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 역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5. 3.10
1181	국립식물검역소격리재배관리소의명칭및위치에관 한규칙	1995. 3.10
118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 정령	1995. 3. 8
1183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3.14
1184	어업생산고조사규칙중개정령	1995. 3.14
1185	국립수산진흥원어촌지도소및수산종료배양장의명 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5. 4.12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1186	육성수면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5. 4.17
통상산업부령 10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4.10
건설교통부령 6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령	1995. 2.11
7	건설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2.14
8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5. 2.23
9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3. 2
10	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5. 3.11
11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3.14
12	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3.14
13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5. 3.28
정보통신부령 1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2.24
2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4. 1
3	국제우편환규칙개정령	1995. 4. 1
4	체신부현업관서의조직및사무분장규칙중개정령	1995. 4. 4
5	체신부현업관서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5. 4. 4
6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4.17
환경부령 6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3. 7
7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4. 1
8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4. 4
9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4. 6

국내입법의견조사 95-2 行政審判法의 改正方向

1995년 6월 10일 印刷

1995년 6월 15일 發行

發行人 白 南 辰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주) 한국컴퓨터산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03

전 화 : (722)2901~3, 0163~5

등록번호 : 1981. 8. 11 제1-190호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값 4,000 원

